# न्त्र अन्

2009 1 · 2 Vol. 80

조점 일제고사와 교사장계의 위법성 서법제대로 보기 마찬 쇠고기 과 헌법소원 기각, "이의 있습니다! 특별 연재 MB악 법 릴 레이만 회시론 오바마의 등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성명 살인적인 경찰의 강제진압이 부른 참사에 분노한다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우)137-07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tel (02) 522-7284 fax (02) 522-7285 homepage www.minbyun.org blog http://minbyun.org/blog/ e-mail info@minbyun.org

# 2009/01/02/VOL80



**발행일** 2009년 2월 13일

**발행인** 백승헌

**편집인** 황희석

편집위원회 공두현·김도형·김영준·김진·정은경·좌세준·채영호

발행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522-7284·팩스 02-522-7285·이메일 info@minbyun.org

값 5,000원

**디자인·편집·인쇄** 디자인랩(02-739-9957)

#### CONTENTS

**칼럼** 법이 할 수 없는 일 차병직 2

초점 일제고사와 교사징계

일제고사 실시의 위법성에 대하여 \_송병춘 6

일제고사 대체 체험학습 허용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 위법성 \_김영준 13

최혜원 교사를 만나다 \_김영준·공두현 20

사법 제대로 보기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의 2심 판결을 살펴본다 \_김영희 26

미국산 쇠고기 고시 헌법소원 '기각', "이의 있습니다!" \_좌세준 36

법률 바로세우기 금산법 & 언론관계법 \_ 민변 입법감시TFT 42

한나라당 추진 법률안에 대한 검토결과 \_ 민변 입법감시TFT 47

시론 오바마의 등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_최장집 52

법률창고 경찰권 불행사로 인한 국가배상청구 인용판결 74

특별연재 MB악법 릴레이만화 84

민변의 활동 11월 월례회 : 김상조 교수님 강연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_정리:공두현·김나은·남현웅 88

현장보고: MB악법 저지 철아농성 \_황희석 102 공부모임: 『민주화 20년, 지식인의 죽음』 \_좌세준 103

회원이야기 행사후기: 즐거웠던, 조금은 아쉬웠던 2008년 민변 송년회 이한본 110

행사후기: 민변 신년산행, 태백산을 가다 \_김선수 112 회원동정: 길 위에서 길을 묻는다 \_임종인 117

외년등성 · 걸 위에서 걸글 굳근나 \_ 임용인 | | / 회원이 낸 새 책 : 『국제범죄와 보편적 관할권』 \_ 박찬운 121

내가 본 민변 : 신념과 열정 그리고 민변의 꿈 \_서민정 122

성명 및 논평 살인적인 경찰의 강제진압이 부른 참사에 분노한다 외 15편 \_정리:공두현 124

정기구독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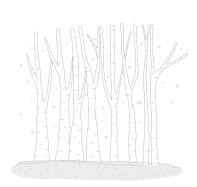
石芸明新府室

표지의 제자는

한승헌 변호사님께서 써주셨습니다.

초점과 사법제대로보기의 삽화는 김현경님께서 그려주셨습니다.

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법이 할 수 없는 일

글 **차병직** 회원

'법은 아무것도 모른다.'이 말의 의미는 자극적이면서도 미묘하다. 법의 권위나 힘을 깎아내리는 부정의 뉘앙스는 느껴지는데, "법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진술과는 또 다르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가장 위험한 존재일 테니까.

미국 버팔로에 있는 뉴욕주립대의 정신분석과 문화 연구 센터에서 펴낸 학술지 「무의식의 저널」이 우리말로 나왔다. 2003년에 제작된 첫호의 부제는 「법의 무지」였는데, 번역서의 제목은 『법은 아무 것도 모른다』이다. 아마도 지난날 피터 로델의 『저주받으리라 법률가들이여』 이후 법률가들의 눈길을 가장 많이 끄는 제호가아닐까 싶다.

그런데 왜 '아무것'을 '아무 것'으로 표기했는지 모르겠다. 지금은 부정대명사 '아무것'은 독립한 낱말로 굳어 있는데, 굳이 어원을 따져 관형사로서 '아무'와 불완전 명사로서 '것'을 분리한 출판사의 의도가 따로 있을까 생각하게 만든다. 법은 현대의 실용적 맞춤법조차 모를 정도로 무지하다는 풍자를 담고 있을까

용산 철거민 집회 강제 진압 사건은 새해의 시작과 함께 터진 참극이었다. 여섯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지만, 무엇보다도 사건의 성격과 전개 과정 때문에 심각할 수밖에 없었다. 어처구니없는 사고였기에, 사건이 일어난 직후 가장 먼저 나온 반응은 진상조사단의 구성이었다. 수사기관인 검찰이나 당사자의 하나인 경찰은 물론. 여당과 야당에 시민단체까지 진상 조사에 나섰다. 민변도 빠질 수가 없었다.

어떤 일이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태의 진상은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 보통의 믿음이다. 그의도는 단순한 호기심의 해소를 넘어 적절한 책임을 지운다는 데로 향하고 있다. 실제의 진실이야 어떻든, 대부분의 사건이 정치적으로 꽤 복잡한 과정을 거쳐 기어코 모종의 형식적 진상에 도달하고야 마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어떤 형태로든 진상이 밝혀진다 면, 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책임







의 분담은 무엇인가. 일차적으로는 법적 책임이다.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사람이 사망했다. 사망의 원인은 화재였다. 불은 시너 때문에 일어났고 번졌다. 시너는 철거민들이 준비해 두었다. 그렇다면 농성하던 사람들이 시너를 붓거나 화염병을 던졌느냐, 경찰의 물대포에 시너통과 화염병이 넘어졌느냐. 경찰은 사전에 인화성이 강한 시너가 잔뜩 쌓여 있다는 사실을 알았느냐, 알았다면 그에 대비한 구체적 진압 작전은 무엇이었느냐. 경찰이 용역 회사를 동원하였느냐.

마치 형법의 사례문제처럼 이런 사실을 낱낱이 나열하여 정확히 확인하는 작업이 진상 규명이라면, 그 결과로 기대할 수 있는 일이라곤 기껏해야 그에 맞는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기소할 사람은 기소하고, 용서할 사람은 용서하고, 숨겨주고 싶은 사람은 모른 체한다. 그리고 책임이 누구에게, 또 얼마나 있느냐를 따져 손해배상의 금액을 정하는 정도가 고작이다. 법적 책임을 넘어서는 문책의 요구는 자칫 마녀사냥이라는 비난에 봉착할지도 모른다. 일단 법적 책임만 묻고 나면, 그 다음의 소용돌이쯤이야 힘으로 버틸 바탕이 마련된 셈이니까 권력기관으로서도 한결 편하다. 법대로 처리했는데, 법적인 책임을 물었는데, 그보다 더 나아가는 일은 너무하지 않는가, 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기도 하다.

법적 책임을 묻고 처리하는 형사와 민사의 절차에는 비교적 정치적으로 인간적인 감정이 덜 묻어 있다. 그 것까지는 좋은데, 철거민의 고통과 분노, 정권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오만한 경찰력의 행사, 그 사이에 언 뜻 불길하게 비치는 우리의 미래 혹은 희망,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와 안타까움 같은 진정한 논쟁의 요인까지 법적 절차의 종료와 함께 사라져버린다.

그러니 법이 우리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있다고 하여도 그것은 별것이 아니다. 심하게 말하면, 없어도 그만인 정도다. 우리 현실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법적 책임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따지고 묻는 일이다. 정치적 책임은 세세한 진상을 따지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진실의 어렴풋한 얼개나 그림자만 보아도 물을 수 있는 것이 정치적 책임이다. 그래서 법적 책임은 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고, 법률가는 한없이 초라해지는 것이다.

언제가부터 우리는 모든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습관을 익혀 오고 있었다. 한때는 잊고 있었던 쟁송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칼럼 \_법이 할 수 없는 일

우리는 주체로서 우리가 만든 법에 대해서 모든 면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동시에 법은 스스로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해결해주지 않는다.

우리도 모르고 법도 모른다는 것이 바로 정신분석학적으로 검토한 '법의 무지'다.

그것을 조금 선정적으로 표현한 형식이 '법은 아무것도 모른다'이다.

진술의 핵심은 법과 주체의 무지가 공모함으로써 법의 권위가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리가 꽤 빛나는 효과를 발휘한 시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형식적 문을 넘어서서 그 실체적 모습에 근접하여 현대적 합리성을 도모할 때 법이라는 수단은 제법 먹혀들었다. 참여연대 같은 단체가 시민운동의 중심에 서게 된 것도 그런 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모든 비민주적 행태, 구시대의 악습, 부조리와 불투명에 대하여 '법대로'를 명령했다.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이란 구호 아래 어떠한 요구도 정당화됐다.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한 점이 있었다. 모든 쟁점을 소송화하는 사회운동의 방식은 전략적 수단으로서는 가능하지만, 진보적 희망을 근원에서부터 충족시켜줄 수 없다. 운동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갈등과 모순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개하는 정치적 행동이다. 그 운동의 목표가 기존 체제를 고스란히 유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올바르다고 판단하는 방향으로 사회의 변화를 의도하고 있을 때, 거기에 붙이는 이름이 진보다. 진보적 운동의 목표점에 우리를 데려다 놓을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은 법적 투쟁보다는 정치적 해결이다. 법적 투쟁은 넓은 의미의 정치적 해결 과정 중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도구에 불과하다

정치적 해결이 가능한 곳에 법적 결단이 끼어들 여지는 없다. 정치적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결렬되었을 때, 그 결과에 불만을 가진 쪽이 마지막 수단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법적 절차다. 그러다 보니 다수건 소수건.

> 진보건 보수건, 과격파건 온건파건 정치적 토론과 협상의 절차는 의례 적 싸움의 과정으로 여기고, 결론에 도달하는 순간 패한 쪽이 상대방 을 공격할 최후의 무기로 법과 소송을 내세운다.

과거에는 독일식 이론으로 사법적 판단의 범위를 제한하기도 하였다. 통치행위니 사법자제설이니 하는 따위가 그 예로 들 수 있는 것들인데, 사법권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행정 권력의 획책으로 비판 받았다. 하지만 독재권력을 불식하기 위한 과도적 전략으로서는 좋았지만, 지속적 진실과 가치를 담고 있는 주장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법적 영역의 확대는 정치적 영역의 축소를 수반한다. 사법권이 독재적



행정권력의 하수인이 된 상황이라면 사법권으로 행정 권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 면, 갈등의 당사자들이 자발적 정치 협상에 의해 문제 를 해결하는 방식이 최선이다. 이런 순환 구조를 생각 해 보자. 정치적 싸움에서 패한 분풀이로 법원이나 헌 법재판소에 하소연한다. 재판의 결과에 따라 패소자는 법원을 비난한다. 승패는 번갈아 일어나게 마련이고 판결에 대한 비판은 줄어들지 않으므로, 사법부 불신

은 점점 심화되다 그러면서도 믿지 못하는 법원에 끊임없이 소송을 제기한다

어찌 하다가 이런 사태에 도달하였는가. 우리는 진정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개인의 가치관과 연인을 향한 애정의 문제부터 미래의 사회 건설을 위한 정치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결정적 판단을 법관에게 맡길 셈인가. 알게 모르게 흘러온 이런 송사중심주의의 과정 속에서 법은 무시 못할 권력을 지니게 되었다. 판관은 지상에서 가능한 모든 논쟁의 궁극적 결정자가 되고 말았다.

우리는 잠시라도 현상의 밑바닥으로 침잠하여 사태의 본질을 더듬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주체로서 우리 가 만든 법에 대해서 모든 면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동시에 법은 스스로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해결해주지 않는다. 우리도 모르고 법도 모른다는 것이 바로 정신분석학적으로 검토한 '법의 무지'다. 그것을 조금 선정적으로 표현한 형식이 '법은 아무것도 모른다'이다. 진술의 핵심은 법과 주체의 무지가 공모함으로써 법의 권위가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 결정할 것이냐, 법관들이 결정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냐. 정치적 영역과 사법적 영역의 경계 긋기와 균형점 찾기의 줄다리기는 언제까지나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 지점에서 운동을 표방하는 법률가들이 새로운 고민에 빠져야 한다. 잠시 행동을 중단하는 한이 있더라도.

실릴수도 있었다 진압이 아닌 구조였다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일제고사 실시의 위법성에 대하여

\_글 **송병춘** 회원

# 93/173/15 13/112 A

SUN

TUI

 $\mathcal{M}$ 

THU

FRI

SAT

#### 1. 일제고사 실시의 경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008. 4. 28.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 및 학업성취도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2008. 10. 14. ~ 같은 달 15.까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 및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하고, 표집학교(초6: 약 4% - 26,500명, 중3: 약 5% - 34,500명, 고1: 약 5% - 34,000명)를 제외한 이른바 '비표집학교' 평가는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교육감 등 각 시·도 교육감은 예년과 달리, 위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 및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학교만이 아니라 모든 초·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이른바 「일제고사」로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지게 되었다.

#### 2. 일제고사 실시의 목적

교과부는 위 「'08년 기초학력 진단 및 학업성위평가 시행 계획」에서 "국가 수준의 평가를 통해 초·중·고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목표에 대한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 및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학력격차 해소, 교육과정 개선, 교수-학습 방법 개선 등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교과별·영역별 부진학생을 파악하여 지도함으로써 학습부진 학생을 최소화 한다"고 하였다.

한편, 서울시 교육청은 위 시행계획과 별도로 2008. 10. 「200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는데, 그 시행 목적으로 ①초·중·고등학교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학업성취도의 변화 추이 파악, ②교육과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목표에 비추어 학생이 목표를 어느 정도 도달하였는지 분석하고,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정착 정도를 파악하여 교육과정 개선 기초자료로 활용, ③문항 분석, 성취도와 배경변인과의 관련성 분석을 통해 교수·학습방법 개선 및 장학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산출, ④학생 개개인의 학업성취 수준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제공, ⑤교과별 부진 학생을 파악하고

지도함으로써 학습부진 학생 최소화, ⑥참신하고 타당한 평가도구를 개발, 활용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평가 방법 선도 등을 들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이 제시한 위와 같은 '일제고사'실시 목적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④학생 개개인의 학업성취 수준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제공, ⑤교과별 부진 학생을 파악하고 지도함으로써 학습부진 학생 최소화"이다. 사실 ①,②,③,⑥항은 일제고사가 아닌 표집학교 집단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만으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제고사를 실시하여 ④ 학생 개개인의 학업성취 수준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제공하는 것은, 모든 학생을 획일적인 평가방식으로 줄을 세우겠다는 것으로서 학습활동의 개별성, 교육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교육 당국은 대학입시에서도 지필고사를 통한 선발을 금지하고 있는데, 아무리 평가 문항이 세련되었다 하더라도 지필고사 방식의 학력평가는 단편적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평가 방식은 '한 줄 세우기식' 경쟁을 조장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주입식 교육을 조장하여 결국 창의적인 학습활동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다음으로 교육 당국은 ⑤ 교과별 부진 학생을 파악하고 지도함으로써 학습부진 학생을 최소화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명백한 기만행위다. 교육 당국은 학습부진 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떠한 실효성 있는 대책도, 재정적 지원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습부진 학생이 있다면,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역시 가정환경의 문제가 가장 크고, 특히 지역간 학력 격차는 사교육에 의해 부풀려져 나타난 현상이며, 학교부적응 역시 주로 사교육에 의한 학교교육의 왜곡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밖에 부적격 교사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학업성취도 등 학생의 성장・발전은 교사의 능력이나. 준비정도, 헌신성에 의해 결정적으로 영향 받는다고 할 것이다.

교육 당국은 미국 부시 행정부가 2002. 1. 제정한 NCLB(No Child Left Behind) Act에서 그 모델을 찾는 것 같은데, 위 NCLB법은 주 교육청으로 하여금 모든 공립학교의 진보를 매년 측정할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3학년부터 8학년까지 수학과 읽기에 있어서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고 10학년부터 12학년까지는 그 외의추가적인 테스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NCLB는 또한 각 학교로 하여금 연간 적정진보 수준(AYP.

우리 교육 당국은 NCLB법에서 규정한 학생 및 학교에 대한 지원책, 그를 위한 재정확보 등을 도외시한 채, 일제고사를 통하여 학생과 학교를 줄 세우기 할 뿐, 결과적으로 개별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사에게만 그 책임을 지우려 한다는 점에서 국가가 최소한의 책임마저 저버리고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Adequate Yearly Progress)에 관한 계획을 세우게 하고 2년 연속 AYP를 달성하지 못하는 학교에 대하여 주와 지방교육기관이 관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NCLB는 2014년까지 모든 학생들이 일정한 학업성취 수준에 도달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각학교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책무성을 발휘하지 못할 때에는 학생·학부모들로 하여금 다른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의 연간 성적통지표(annual report card)에는 개별 학생의 성취 수준과 목표 수준과의 비교, 시험에 참가하지 않은 학생의 비율, 지방 학교구와 개별 학교의 성취 수준에 관한 자료, 그리고 교사의 자격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된다. 만약 학교가 2년 연속 적정 성취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학부모는 자녀를 다른 학교로 전학시킬 수 있으며, 3년간 적정 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학교구는 학생들에게 주 정부가 승인한 기관으로부터 보충적인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 교육 당국은 NCLB법에서 규정한 학생 및 학교에 대한 지원책, 그를 위한 재정확보 등을 도외시한 채, 일제고사를 통하여 학생과 학교를 줄 세우기 할 뿐, 결과적으로 개별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사에 게만 그 책임을 지우려 한다는 점에서 국가가 최소한의 책임마저 저버리고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 3. 학생의 학습권 내지 교육선택권 침해

미국에서도 NCLB법에 의한 표준화된 학업성취도 측정이 많은 학교들로 하여금 눈앞의 성과를 위하여 교과목 수를 줄인다든가, 주입식 교육방법을 선택하도록 강요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개별학교 또는 개별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평가, 나아가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시행함으로써 오히려학교와 교사의 교육력, 책무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부모의 학력과 경제력이 앞서는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와 편부모 가정 또는 결손 가정의 학생들이 많은 빈곤지역의 학교를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하게 됨으로써 학력 격차를 부풀리고, 오히려 낙인(松印)효과를 통하여 격차를 확대·재생산한다는 것이다.

재학계약은 단순한 경제적 가치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과는 달리 교육적 배려를 필요로 하는 계약이

SUN MON TUE WED THU FRI SAT

며, 학습권 보장이 교사의 전문적 자율성에 의존함으로써 고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여서만 유지될 수 있는 계속적 채권계약이다. 즉 교사의 교육적 필요에 대한 전문적 판단과 그 과정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참 가가 중요한 것이다. 학교선택권이란 본래 학생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만약 교육과정이 특성화되지 않은 복수의 학교들 가운데서 선택만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서열화를 통하여 학교간의 격차를 확대시키고 입학경쟁을 격화시키는 결과만을 낳을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학부모·학생의 학교선택권 내지 교육선택권을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휘두르면서,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중·고등학교 입시 철폐 및 학교 평준화 정책을 일거에 와해시키고 학교간의 경쟁을 부추기고 있지만, 요점은 교육과정의 다양성으로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나아가 단위학교 내에서 학생의 요구와 능력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과 그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교육과정 내지 학급 선택권). 일제고사는 오히려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봉쇄한다는 점에서 학교간의 서열화를 초래함 뿐 학생의 교육선택권을 오히려 형해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 4. 교사의 자율적 전문성(=교육평가권) 침해

교육은 교육자가 가르치고, 피교육자가 학습하는 정신적 상호작용이다. 교육자는 자신이 습득한 지식, 기능 등을 자기가 구상한 방법과 체계에 따라서 가르쳐 나간다. 피교육자는 이를 학습하고, 교육자는 그 결과를 보고 계속 가르쳐 나간다. 이러한 반복이 교육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가르치는 자 쪽에서 보면, 교육 급부란 교육자가 자신이 구상한 방법과 체계에 따라 가르친다고 하는 전문적 · 지적 노무의 제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급부는 다른 '하는 급부' 와는 달리, 교육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고 피교육자가 이를 수령하는 그런 단순한 성질의 '하는 급부'가 아니며, 또한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사이의 관계가 학습을 강제하는 상하관계 또는 지배 · 종속 관계일 필요도 없다.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깨친다' 라는 속담이 있듯이, 피교육자는 교육자가 가르치는 것만을 학습하는 것도 아니며, 교육자는 학습활동의 지도 · 조언자로서 학습자가 스스로



수업은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취향에 따른 다양한 교수 · 학습 방법을 통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자와 피교육자 사이의 정신적 · 인격적 접촉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학습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혹자는 재학계약에 의해 형성되는 재학관계의 일방 당사자가학교설치자 또는 학교법인이라고 하며, 교사는 이행보조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어떤 회사가 소속사원을 교육기관에 파견했을 때, 그 파견사원은 회사의 수령기관 내지 이행보조자로 볼 수 있다고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교육급부를 일반 재산법상의 용역서비스처럼 단순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수업은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취향에 따른 다양한 교수ㆍ학습 방법을 통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자와 피교육자 사이의 정신적ㆍ인격적 접촉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교육평가는 그 결과가내신 성적으로 상급학교 진학의 자료로서 활용되므로 학과 성적과 행동발달에 대한 평가는 학생에게 대단히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항이며, 학교 측으로 보아서는 이후 학생지도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물론 교사의 시험 및 성적평가는 교사의 전문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교사의 교육적 재량이 존중되어 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사의 성적평가권은 학생의 학습권에 기초를 두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평가에 있어서 교육적 재량이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평가 또는 성적평가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교사는 교육적 재량에 기초한 성적평가권이 있으므로 성적평가의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교과담임 교사의 교육적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재량권의 남용 · 일탈이 있을 경우, 채무불이행으로서 사법적 구제의 대상이 된다. 예컨대 성적평가가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았다든가, 평가에 영향을 미친 전제 사실에 오인이 있었다든가, 또는 평가의 내용과 방법이 현저하게 교육적 배려를 결하였다든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한 기준에 의해 성적평가가 이루어졌다든가 하는 경우 교사의 교육적 재량을 일탈한 경우로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란, 우선 각 학생에게 있는 소질을 발견하여 이것을 더욱 신장시키는 것이며, 다음으로 학생들의 능력에 맞춰 그 나름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성적 부진을 학생의 노력이 부족한 탓으로만 돌리고, 획일적인 평가 기준에 의하여 교사의 기대수준에 미달할 때는 불합격으로 절대평가하는 것은 진정으로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성적평가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 학업성적 평가가 학생들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이고, 둘째 성적 평가의 공정성과 절차의 투명성이 확보되는가 하는 것이다. 성적평가가 학생들의 적성이나 흥미, 지적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교육과정과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로 말미암아 학생들을 서열화하는 데 그친다면, 이는 심각한 학습권 침해라 할 것이다. 또한 성적 평가결과가 교사의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태도에 따라 달라지거나, 평가결과의 개시나 학생의 이의신청 절차 등이 부여됨이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공정성이나 평가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최근 우리 학교에 도입되고 있는 수행평가(遂行評價 performance assessment)의 도입은 교수·학습 활동과 평가 활동을 긴밀하게 연계시키고 학생들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방법을 다양화·전문화·특성화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편적·사실적 지식의 습득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기존의 선택형(객관식) 시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서술형이나 논술형, 실기시험 등 다양한 평가방법을 개발·적용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수행평가를 확대 실시하자는 취지 속에는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담당 교사가 그 학생에 대하여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담당 교사에게 '가르치는 권한' 만이 아니라, '평가하는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수행평가가 교육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행·재정적인지원과 함께 교사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절차를 통해 학생·학부모들이 교사를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흔히 보통교육의 장에서는 '국민 공통교육 과정' 또는 '일정 수준의 확보'라는 명분이 교사의 교육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로서 제시되기도 하는데, 보통교육에 대해 전국 일률의 최저수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가능하다면 그것은 교사의 자주연수와 강제력 없는 지도 · 조언에 의해 교육계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권력적 통제 수단에 의하여 '일정 수준'을 확보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교사들의 진리교육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학습권을 침해하고 어린이 · 학생의 인간적 성장발달을 그르치게 될 것이다.

#### 초점

우리 교육 당국은 NCLB법에서 규정한 학생 및 학교에 대한 지원책 그를 위한 재정확보 등을 도외시한 채. 일제고시를 통하여 학생과 학교를 줄 세우기 할 뿐. 결과적으로 개별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사에게만 그 책임을 지우려 한다는 점에서 국가가 최소한의 책임마저 저버리고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 5. 결론

작금의 공교육의 위기는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입시제도와 사교육 팽창. 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의 부족 에도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학교의 자율성 결여와 구성원의 참가를 배제하는 학교의 비민주성 때 문이라고 생각된다. 학교에 대하여 책무성을 묻는다는 것은. 위로부터의 감독과 통제가 아니라. 학생·학부 모의 평가와 참여에 기초한 학교 · 교사집단의 자율적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권 및 교육권을 중심에 놓고. 재학관계를 행정법 관계 · 공법관계가 아닌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 · 사법관 계로 파악해야 한다. 즉. 학습권 · 교육권의 주체인 학생 · 학부모가 직접 학교와 교사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사법상의 제 권리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이명박 정부는 사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학교의 교육력과 책무성을 제고 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일제고사를 통하여 표준화된 평가를 강요하고,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강요하는 등 교 육 내용에 대한 개입과 통제를 더욱 확대·강화함으로써 학교 및 교사의 자율성을 오히려 위축시키고 있다고 할 것이다(시장만능주의가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가주의 내지 관료적 통제를 더 욱 강화한다는 점이 여기서도 확인된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에 유일한 적극적인 기능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졸업장을 수여하고 시험을 치러서 서열화하는 기능뿐이며. 실제 공부는 학원과 같은 사설교육기관에서 더 좋 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일제고사는 이러한 인식을 더욱 굳히는 결과를 초래함 것이다.

일제고사 실시의 위법성은 다지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1항에 위배되느냐의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헌법 제31조 제1항 '능력(생래적이고 일신전속적인)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제2항 '무상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원리'와 '교육의 본 질'내지 '敎育條理'에 위배되느냐의 여부로서 판단해야 한다. 🗰

# 일제고사 징계의 위법성

글 **김영준** 회원

#### 1. 일제고사실시와 징계처분의 경위

- (1)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008. 4. 경 같은 해 10. 14.부터 같은 달 15. 까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중 학력수준 판단을 위한 표집학교(초6 : 약 4% – 26,500명, 중3 : 약 5% – 34,500명, 고1 : 약 5% – 34,000명)를 대상으로「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 및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서. 표집학교를 제외한 이른바 '비표집학교' 평가는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시행한다고 하였다.
- (2) 그런데, 서울특별시 교육감 등 시도교육감은 위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 및 학업성취도 평가 를 표집학교 뿐 아니라 서울특별시 소재 모든 초 · 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 이른바 「일제고사」를 실시하 기로 하였고, 위 시험은 전국단위로 일제히 치르게 되었다.
- (3)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 송용운. 정상용. 윤여강. 김윤주. 박수영. 설은주. 최혜원은 실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급 담임 교사들로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위 평가가 법령이나 교육 워칙에 위반되고 부적절하다는 판단으로, 평가 실시에 대하여 학부모·학생의 의견을 묻고, 희망자에게는 체험학습 등 대 체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허락하였다.
- (4) 해당 지역 교육청의 교육장들은 위와 같은 교사들의 행위를 '일제고사 응시 유도' 또는 '거부'로 규정한 다음, 2008, 11.경 청구인들에 대하여 일제히 징계의결요구를 하였고, 시도교육감은 이를 받아들여 성실의 무, 복종의무 위반등을 이유로 2008. 12. 9.자로 파면 및 해임처분을 내렸다.

#### 2. 징계처분의 위법성 1 - 교육 방법 선택의 권한

이 사건 징계는 기본적으로 '국가' 또는 '교육감'이 결정한 이상. 모든 아동(학생)에게는 일제고사를 보아 야 할 의무가 있고. 교사에게는 일제고사를 보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에 서있다. 그러나 헌법이나 교 육법 어디에도 아동(학생) 본인, 학부모의 뜻에 반하는 교육을 '강제' 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법은 없다.



오히려 교육법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규정에서 보는 것처럼. 교육방법 결정을 포함하여 교육 에 관한 권리는 1차적으로 아동(학생=학습자)에게 있고 학습자가 미성년자일 때에는 그 부모에게 있는 것이 며, 그 부모로부터 교육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아 전문적 · 자주적으로 교육 활동을 수행해야 할 교육전문가 는 '교원(=교사)' 이다. 그리고 공립학교 설립ㆍ경영 주체에 불과한 시도 교육감은 교육을 위한 시설ㆍ설비ㆍ 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우용 · 관리하는 책무만을 부여받고 있는 관리주체일 따름이다.

헌법재판소도 2000, 4, 27,자 「과외금지 위헌사건(98헌가16, 98헌마429)」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 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국적과 관계없이 누리는 양도함 수 없는 불가침의 인권"이라고 한 다음.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관하여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 관·사회관·교육관에 따라 자녀의 교육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가지며, 부모의 교육권은 다른 교육의 주 체와의 관계에서 원칙적인 우위를 가지는데, 자녀교육권은 부모가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행할 것인가에 관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교육의 목표와 수단에 관한 결정권을 뜻한다"고 하고 있음과 아울러 "자녀에 대한 교육의 책임과 결과는 궁극적으로 그 부모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국가는 제2차적인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을 위한 기본조건을 형성하고 교육시설을 제공하는 기관일 뿐이므로 국가는 자녀의 전반적인 성장과정을 모두 규율하려고 해서는 아니되며, 재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교육자의 다양한 성향과 능력이 자유롭게 발현될 수 있는 학교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설시하면서,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교육권은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하며 학교교육의 범주 내에서는 국가의 교 육권하이 헌법적으로 독자적인 지위를 부여받음으로써 부모의 교육권과 함께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고 학교 밖의 교육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우위를 차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교사들 중 누구도 일제고사를 '거부' 하거나 거부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고 시험을 보지 않 겠다고 선택한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아동(학생=학습자)과 그 부모들이었으며, 이 사건 교사들이 한 일은 일제고 사 실시에 대하여 학부모 · 학생의 의견을 묻고. 희망자에게는 체험학습 등 대체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허 락한 것으로 학부모의 교육방법 선택권 훼손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이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가사 실정 법에서 교육감에게 일제 시험을 치르게 할 권하의 형식적 근거를 두었다 하더라도 단지 교육시설 유용ㆍ관리 자가 실시하라고 한 시험을 치르지 않게 했다고 하여 그것이 위법하다거나 징계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SUN

#### 3. 징계처분의 위법성 2 - 일제고사 실시의 위법성

이 사건 '일제고사'는 그 실시 자체가 법령과 단체협약 등에 위반되는 권한 밖 행위이다.

초중등교육법 제9조 (평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 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 (학생의 평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 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교육과정 운영을 '학교' 단위로 정하고 있고(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학업성취 도 측정은 '교육'의 내용을 이루므로, 학업성취도 측정 역시 당연히 학교 단위에서 행해지도록 되어 있으며 교육과정 운영 단위인 학교를 초과하여 학생의 학업성취도 측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은 '교육과 학기숨부 장관' 이며 그러한 권한 역시 '학업성취도 측정' 의 목적을 위해서만 실시할 수 있다.

그런데, 일제고사실시와 징계처분의 경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시험의 발단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실 시하기로 한 「2008년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 및 학업성취도 평가」이지만, 교육과학부장관은 예년과 마찬가 지로 전체 학생의 4~5%에 해당하는 표집학교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을 취하되 '비표집학교' 는 "시 도교육청 주관으로 시행"한다는 단서를 두었는데.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비롯한 시도교육감들이 위 「국가수 준 기초학력 진단 및 학업성취도 평가,를 기화로, 표집학교 뿐 아니라 서울특별시 소재 모든 초 · 중등학교 학 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 즉 「전집 방식 일제고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여, 결국 서울특별시 내 모든 학교 의 모든 학생들이 일제히 시험을 치르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학생 개개인의 학업성취 수준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제공"하거나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결국 학업성취도 측정을 통한 교육수준 분석과 정책마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학교와 학생들에게 성적을 매기고 서열을 매기 다음 그 결과를 각자에게 제공하는 시험으로 그 성격과 목적이 변질되었다.

즉 법령상 학업성취도 평가의 권한이 없는 시도 교육감이, 학업성취도 측정의 목적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시험을 치르게 한 것인바(작년까지는 표본 학교나 학급만이 실시하는 '표집' 방식으로 진행되다). 이와 같은 전국 단위의 서열화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다.

또한 200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교원노조는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하여 체결한 단체협약



이 시건 시험 당일 시험을 치르지 않은 아동(학생=학습자)과 학부모들은 체험학습을 신청하고 담임교사인 청구인들로부터 허락을 받았는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체험학습 등 대체교육 프로그램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현행 교육과정과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제38조 (학업성취도 평가 개선) ① 교육청은 학업성취도평가를 표집학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② 교육청은 평가결과의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학교 간 비교자료로 사용하지 않는다.

은 학업성취도 평가가 학교 간 비교자료로 이용되어 학교의 서열화를 초래하고 비교육적인 경쟁을 유발할 것을 우려하여서 표집학교에 대해서만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평가결과는 비공개로 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위반하여 학업성취도평가를 표집학교 외에도 예외 없이 실시하려 하였는바, 이는 명백히 위 단체 협약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 4. 징계처분의 위법성 3 - 체험학습 불허의 위법성

이 사건 시험 당일 시험을 치르지 않은 아동(학생=학습자)과 학부모들은 체험학습을 신청하고 담임교사인 청구인들로부터 허락을 받았는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체험학습 등 대체교육 프로그램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현행 교육과정과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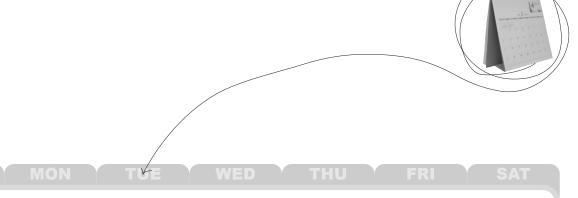
현행법은 아동(학생=학습자)의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활동과 방법을 인정하고, 교외에서의 체험학습에 관해서 폭넓은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학교 단위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체험학습의 수업 인정에 관한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있다고 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수업운영방법 등)

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아동(학생=학습자)의 상황이나 가족관계, 교육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담임 교사이기 때문에, 체험학습에 대한 허가는 담임 교사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었고, 학부모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거의 모든 경우 담임 교사가 허가해 주는 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 역시 이러한 체험학습을 통한 특별활동 활성화를 적극 장려하고 있고, 개인체험학습으로는 농촌 체험학습, 시골 친척 방문, 친척 애경사 참석, 문화 유적지 탐방, 현장 답사 및 조사활동 등 널리 인정해 왔으며, 내신 성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수행·지필 평가일에 실시되는 체험학습의 경우에도 100%



인정점을 부여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다.

SUN

위와 같이 체험학습을 앞두고 서울특별시교육감은 「2008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시행을 위한 중·고등학교 교감 및 담당부장 연수」라는 행사까지 마련하여 학년, 학급 단위 체험학습 신청은 학교장 불허하고, 개별 학생 단위 체험학습 신청도 '승인 불허' 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 시행령이 분명 체험학습 허가·승인의 권한이 학교장에게 있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일률적으로 체험학습을 불허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지침을 받은 각 학교의 장은, 종래 관례에 정면으로 반하여 위체험학습 불허 방침을 밝혔고, 이는 결국 체험학습 허부에 대한 권한이 없는 피청구인에 의하여 법령으로 인정된 체험학습의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불허 처분은 심히 부당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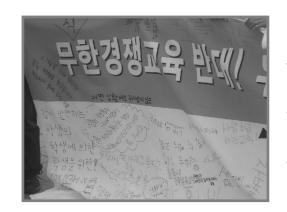
#### 5. 징계처분의 위법성 4 - 징계처분자체의 위법성

서울시교육감이 이 사건 교사들에게 징계사유로 주로 적용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와 제57조의 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교사들은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야 하는 1차적 교육주체로서, 앞서 본 것처럼 국가단 위 학업성취도평가가 일제고사로 실시되는 것에 대하여, 적법성과 정당성에 의문이 있고, 나아가 학생들이 어린 나이부터 성적지상주의와 경쟁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음을 인지하여, 각 가정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활동을 안배한 것일 뿐. 교육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의무에 위반한 사실이 없다.

#### (1) 복종의무위반

이 사건 징계처분 사유에 의하면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교사들의 '복종의무 위반' 으로 들고 있고 이는 결국 "전원이 일제고사를 치르게 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인데, 교사들은 위에서 본 것처럼 일제고 사 실시 자체가 위법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학부모에게 서신을 보내 응시여부를 선택하게 한 것이 전부일 뿐, 아동(학생=학습자)이나 학부모 의사에 반하여 스스로 일제고사를 '거부' 한 일이 없다. 즉 교사들은 학업성취도평가가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에 대하여 일제고사로 실시되는 것에 대하여 적법성



교육자로서의 양심에 따라
"무엇이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인가"를
고민한 교사의 행동을 비리 · 성추행 교사의 비위보다
더 무겁고 중하게 본 것이어서,
도무지 합리적인 징계양정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가 없다



과 정당성에 의문이 있어서 헌법상 보장된 부모의 자녀교육권에 기초하여 담임교사명의로 서신을 학부모에게 발송하여 학부모와 아동에게 동 평가의 응시여부를 선택하게 하고 그에 따라 대체학습 등을 하였던 것일 뿐, 정당한 업무 명령에 불복종한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소속 상관의 직무명령이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와 그 위법성이 중대 · 명백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에 이르지 않더라도 위법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수명공무원은 그에 대한 복종을 거부할 수 있으며 또한 거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복종하는 경우는 수명공무원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2358 판결, 1967, 2, 7, 선고 66누168 판결 — 중제9호 대법원 판결).

#### (2) 성실의무위반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이 사건 교사들이 학부모들에게 보낸 서신이 '평가를 왜곡하는 내용' 이라고 하고 있으나, 교사들은 오히려 일제고사와 관련된 정보들이 학부모들에게 왜곡되어 전달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진정한 선택의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것이다. 교육의 3주체는 교사, 학부모, 학생인점, 이 사건 학업성취도평가가 찬반양론이 분분한 상태에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실시되었고, 초중등교육법 등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인점 등을 고려할때, 성적경쟁과 학교서열화 등교육 본래의 취지에 벗어난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자발적인선택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교사로서의 의무라고 할 것이다

#### (3) 징계 재량권 남용 · 일탈

파면·해임은 공무원에게 가장 불이익한 제재조치이고 유일한 생계수단 자체를 잃게 하여 생존권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므로 비록 형식적으로는 파면·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하지 않으면 아니될 정도의 중대한 사유라고 인정되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전후 사정에 비추어 파면·해임보다 가벼운 제재조치에 의하여 그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가장 극단적인 파면·해임 조치를 취하였다면 이는 징계에 관한 재량권 또는 인사권을 남용하여 그 행사범위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일제고사 자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학교 단위 교육과정 운영과 폭넓은 대체 교육 프로그램을 인정하는 7차 교육과정의 성격에 비추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올해부터 일제고 사로 실시되는 것에 대하여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하여 강한 의문이 있고, 일제고사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응도 수용적 여론과 비판적 여론도 분명히 함께 존재했던 만큼, 일제고사실시를 강제하려고 하기 위하여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부여한 청구인들에게 파면과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이 적합하지도 않고, 법익의 최소 침해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교사들에 대하여 파면,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함으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일제고사로 실시한다는 공익은 일제고사실시 자체의 적법성과 정당성, 과정에 대한 의문에 비추어 협소한 반면, 이로 인해 침해되는 교사들의 교단에서의 영구추방이라는 사익의 침해정도는 심대하기 이를 데 없어서 공공의 이익과 법익의 침해사이에 적절한 균형성도 담보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법익의 균형성」결여).

그러므로 서울시특별시교육감의 교사들에 대한 파면, 해임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 (4) 다른 징계 사례와의 비교

이 사건 교사들에 대하여 내린 파면, 해임이라는 중징계의 정도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그 동안 다른 교육 공무워들에 내린 징계처분과도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것으로 부당하다.

2007년, 2008년 2년 동안 서울시교육청의 징계 사례만 보더라도, 모두 253건인데 그 중에서 152건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연가투쟁에 대한 것(불문경고 또는 견책)이고, 「파면」은 모두 6건에 불과하며 그 내용은 모두 금품수수ㆍ공금횡령 등 금품 관련 비위에 관한 것이다. 3년간 학부모들 돈으로 공짜 외국 여행을 다녀온 교사 22명에게도 경징계를 내리는가 하면,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사가 받은 3개월 정직 처분이었고, 2007년 국가 단위 진단평가에서 전면적으로 시험을 거부한 교사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이 감봉 1개월이었던 것과의 균형도 맞지 않는다.

이는 교육자로서의 양심에 따라 "무엇이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인가"를 고민한 교사의 행동을 비리 · 성추행 교사의 비위보다 더 무겁고 중하게 본 것이어서, 도무지 합리적인 징계양정의 범위에 속한 다고 볼 수가 없다.

초점 \_일제고사 징계의 위법성 1 C

# 최혜원 교사를 만나다

글 **김영준** 회원 · **공두현** 인턴

회신번호: 하늘이님 회신에일: 해결해를 수신시간: 2008.12.18 23:37 제목: 선생님♥ - 휴 내일꼭 오.... 선생님♥ - 휴 내일꼭 오실꺼죠? ^ ^ 11다림에요 내일은 출지않고 주 강출떳떳하게내셔 들제도사작해요 돌 필리 행정한 도둑쟁이야 정말 우리 를리 행정한 도둑쟁이야 정말 진심으 다 사각합니다 ^ ♥

SUN

JE `

NED

THU

RI

SAT

서울시교육청 앞에 있는 농성장에서 고구마를 굽는 난로 옆에 앉아서 무언가를 적어가며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최혜원 교사를 만났다. 최혜원 교사는 지난 12월 해직되어 농성을 진행중이다.

**김영준** 우선 일제고사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당하셨는데 일제고사의 경위와 문제점에 대해 얘기를 해주세요.

최혜원 일단은 거부라는 말부터 짚고 넘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징계하려는 사람들이 만든 틀이라고 봐요. 저희는 전면거부가 아니라 반대를 한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감독도 했고 채점도 했어요. 단지 저는 선택권을 주었던 거였다고 말하고 싶어요. 일제고사를 강행하는 논리는 부진한 지역, 부진한 학생을 판별하여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고, 교육정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일제고사가 시행된 이후에 성적이 떨어지면 오히려 지원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예전부터 표본조사를 통해서 교육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도 있었구요. 그리고 일제고사라는 게 다른 정책들과 맞물려서 더 파괴적이 돼요. 학교정보공개법이란 것과 맞물리는 거죠. 이미 지역별 격차가 발표가 됐고 이게 나아가면 학교간, 학급간의 경쟁이 되고, 상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물어뜯어 없애는 경쟁이 된다는 거죠.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도 심각해요. 교육과정 자체가 그 시험에서 평가하는 다섯 과목에 집중되도록 바뀌는 거죠. 평가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론적인 부분 말고 정말 제 마음을 울린 건 우리반 애들이었어요. 일제고사 얘기를 했을 때, '잠도 못자요' 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구요. '선생님 너무합니다. 학원을 다녀보세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이 정치입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런 말을 듣고 어떤 교사가 그걸 강요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선택권을 준거죠. 그건 교사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이었어요. 또, 저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서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수업들을 일제고사가 들어오면 그걸 다 포기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거죠.

공두현 어떤 수업들을 하셨는지가 궁금해지네요. 기억에 남는 수업들을 몇가지 말씀해주세요.

최혜원 먼저 포옹수업, 껴안기수업이 생각나요. 제가 아침에 아이들한테 포옹인사를 하는데 그 의미를 얘기

해보고 싶더라구요. 첫시간에는 지식채널에서 포옹이라는 영상을 봤어요. 포옹이라는 것이 심장박동을 안정시킨다는 이야기, 쌍둥이가 서로 포옹하는 사진을 봤어요. 그 다음에는 몸으로 느껴보는 거예요. 손가락 마주하기부터 배워요. 손가락을 마주하고 서로 기운을 느끼고 만져서 느낌을 기억을 해요. 마지막으로 여자애들, 남자애들끼리 지금부터 느낌을 말로 하지도 말고 서로 껴안고 심장소리를 느껴보라고 했어요. 어떤 아이는 평생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이라고 해요. 이번에 아이들이 써준 편지에 '심장을 맞대고 했던 추억' 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수업 얘기예요. 다른 데서 배워온 건데, 통일수업도 했었어요. 남쪽 북쪽을 갈라요. 서로에 대해 말도 못해요. 섬뜩했던 것이 통일 안하면 좋은 이유를 써 붙이고 그런 냉전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화해를 하기도 하고 결국 정상들을 뽑아서 회담을 하고 인터뷰 하고 악수를 하고 마침내 통일에 이른 거죠. 왕따수업도 했어요. 비폭력과 대화에 대한 공부를 하고 상처받았던 기억을 말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아이들이 왕따 당했던 얘기를 하면서 울어요. 서로 다 들어주고 안아주고 그랬어요. 그 수업 끝나고 나서도 그 수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서로 막 들어주고 울어주고 안아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여기서는 안전함을 느끼는 거잖아요. 참 예뻤어요.

최혜원 교사가 밤늦게까지 연구했던 수업내용들은 일제고사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다.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김영준 일제고사 사태가 이렇게 커질지 생각을 했나요.

**최혜원** 징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했어요. 유모차를 끌고 거리에 서도 아동학대를 적용하겠다고 하니까요. 정직 3개월 정도는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는데 해임을 당했던 것이었죠.

김영준 아고라에 글을 올려서 많은 반응들이 있었죠.

최혜원 아고라에 글을 올릴 때는요,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이런 걸 토해내고 싶다, 알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썼죠. 그전에 일제고사 과정에서도 글을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기 해직당한 사람이 있고, 이런 일이 있다, 기억해달라' 그런 심정으로 쓴거죠. 그리고 요즘엔 해직교사 최혜원이라고 이름이 붙어요. 전 해직교사이기 이전에 그냥 최혜원이예요. 그냥 교사고, 스물일곱살, 철딱서니 없는. 철들기 전에 짤



내가 어제까지 멀쩡하게 출근했던 그곳에 경찰들이 둘러싸고 어제까지 같이 웃던 직원분이 나를 막고 어떤 교사들은 팔짱끼고 지켜보고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죠.

린, 애들 생각하고 사랑하고 고민하고 열심히 살려고 발악을 했는데, 시대가 냉혹했기 때문에 짤린 그냥 최혜 원이라는 거. 전교조라고 하니까 뿔달린 빨갱이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평범한 인간, 양심적인 어른, 열심히 사는 교사였다 이런 거 말하고 싶어요.

김영준 그동안 학교와의 갈등도 많이 있었겠네요.

최혜원 그건 저뿐만 아니라 7개 학교가 마찬가지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조용히 있어야할 젊은 선생님인데 자기주장이 강하다고 많이 비판받았고, 교장실에도 많이 불려갔었어요. 그럴 때마다 아쉬웠던 건, 저보다 더 오랫동안 아이들을 만나셨을 텐데도 왜 아이들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실까하는 거였죠.

**김영준** 최근에 장수중학교 교장 등 교사에 대한 중징계가 있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최혜원** 국회 교과위에서 공정택 면담을 요청을 해서 저도 그 자리에 방청을 갔는데 이렇게 인정을 해요. 전교조라는 교원단체가 공교육을 무력화 시키는 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교사들을 본보기로 삼았다고. 자기가 원하는 경쟁교육이 망가질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떠들어라 그러면 짤린다' 그런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이제 저희가 그런 해직의 상징이 된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더 밀리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영준** 징계 같은 게 무섭지는 않으세요.

**최혜원** 무섭죠. 근데 무섭다고 움츠러들면 안되요. 무서울수록 거세게 일어나야죠. 근데 이러다가도 집에 혼자 들어가면 애들이 만들어준 동영상 보면서 '애들아~' 그러면서 울기도 하고 그러죠.

**김영준** 징계결정 이후에 출근투쟁 얘기를 잠깐 해주세요.

최혜원 내가 어제까지 멀쩡하게 출근했던 그곳에 경찰들이 둘러싸고 어제까지 같이 웃던 직원분이 나를 막고 어떤 교사들은 팔짱끼고 지켜보고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죠. 전 사실 출근투쟁이라는 말조차도 몰랐어요. 너무 당연하게 어제 갔던 학교니까 오늘도 간다. 내가 해직된 건 말도 안된다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였어요. 첫날에 애들이랑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고, 정말 발버둥치면서 울었어요. 근데 왜 또 갔냐면 눈물콧물다 짜고 텅빈 껍데기만 남은 기분으로 있으면 문자가 와요. '선생님 내일도 올거죠, 기다릴께요. 내일은 제가



울지않고 얘기할게요. 사랑해요' 이렇게 문자가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가겠어요 그 다음날.

**김영준** 그럼 최근의 일과도 말해주세요. 서울시교육청 앞에는 매일 이렇게 나오시는 건가요?

최혜원 매일은 아니구요. 안나오면 마음이 불편해서 많이 나오려고 해요. 어제는 철야를 해서 침낭덮고 잤는데 일어나보니 침낭 위에 눈이 소복하게 쌓여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바빴어요. 아침엔 기자전화소리에 깼고, 기자회견하고 집회하고 그렇게 지냈고, 요즘은 MBC에서 다큐멘터리 찍는 거 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겪고 나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도 보이는 거예요. 연대투쟁하는 거, 팔레스타인 문제나 용산문제에 연대하고 싶고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요. 발언도 많이 했구요

**김영준** 해직된 교사들과 학생들이 만나서 그동안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고양이 캠프에 갔다 왔다는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최혜원 즐거웠어요. 일단은 경찰들이나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막지 않는 곳에서 아이들과 만나고 싶다는 거였 구요, 정말 원없이 놀았어요. 기억에 남는 건, 서로 상처 치유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토닥토닥 해주면서 울지말라고 오히려 위로를 해주더라구요. 또 이번에 자랑스러운 일들을 서로 말하고 칭찬해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자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인권이랑 연결시키면서 의미를 찾기도 하고요. 저희 반 애들 같은 경우는 감금을 당했어요. 세계인권선언에 보면 아동의 권리 중에 감금당하지 않을 권리 있잖아요. '피켓을 찢으려고 했는데 지킨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킨 것이다'라는 식이었죠.

김영준 좋은 자리였네요.

최혜원 행복했어요 진짜

공두현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계기가 있다면요?

**최혜원** 제일 많이 묻는 것 중에 하난데, 저 대학 시절에 운동권 아니었어요. 제가 워낙에 욕심이 많고 열정도 많고 산만하고 그래요. 처음에는 일단 초등학교 6학년때 선생님이 해준 걸 그대로 해주고 싶었고요, 매일 밤 11시까지 수업연구를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엔 방향없는 열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아. 이대

조점 \_최해원 교사를 만나다 2

SUN



기억해달라'에요. 시간이 지나고 또 다른 일들이 생기면서 많이 잊혀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달라, 여전히 길바닥에서 투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기억이 무기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로 가면 잘 가르치는 교사는 될 수 있지만 감동을 주는 교사가 될 수 없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가르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가르치는지가 중요한 것 같다, 내가 성장하고 자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교육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에서 공부를 하는 분들을 만났어요. 그때 늘 교장선생님한테 혼나기만 했던 저한테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열심히 해' 라는 말을 들었던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디스쿨, 평화길라잡이 모임, 참새라는 교육책 연구모임도 하면서, 민주시민교육 공부하고 인권교육 공부하고, 교육연극도 배웠고, 전교조활동도 시작하고 그랬어요.

김영준 해직교사들에 대해서 각계의 도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혜원 저는 손순영 사진작가님이 사진을 찍어주시고, 인권교육센터나 인권운동사랑방의 경우에는 인권침 해사례에 대해서 기자회견도 하시고, 또 조계사 스님들이 인상 깊었어요. 목탁을 치면서 기자회견을 하시고.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죠. 조금 전에도 구기동에 사신다고만 밝히신 분이 아들과 함께 와서 배 한상 자를 주셨어요. '선생님들 힘내세요' 라고 봉투에 써서 돈도 넣어주시고, 관절염약도 주시고요. 택시기사들도 지나가다가 응원해주시기도 해요.

최혜원 선생님이 키우는 고양이가 잠에서 깨어나 잠투정을 하고 있다.

김영준 별명은 왜 도둑괭이예요?

최혜원 예전부터 쓰던 별명인데, 고양이를 워낙 좋아하고. 길고양이는 자유로운 영혼이잖아요. 자유롭게 어디 얽매이지 않고 강하게 질기게 살아가는 거.

**공두현** 고양이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죠.

최혜원 길바닥에서 주워온 애예요. 이름은 양순이구요. 교과서에 경제동물과 애완동물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건 사람이 편의상 나눈거다, 반려동물이라고 하자는 얘기와 길고양이들의 생명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해직이 된 이후에 갑자기 한 아이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고양이가 아파보인다고

TUE WED THU FRI SAT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가보니까 조그만 새끼고양이가 시꺼멓게 돼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날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주사 맞히고 잘 씻기고 했죠. 이제 만나지 3주째 됐어요.

**김영준** 동아일보에서 최혜원 선생님이 전교조 게시판 내에 있는 글을 왜곡해서 보도했다는 논란이 있었어요. 최혜원 전 이번 사건이 동아일보가 어떻게 왜곡된 보도를 하는지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라고 봐요. 제가 쓴 글을 자기 의도대로 마음대로 해석해서 제가 희생양이고, 몸통이 아닌 깃털이 다친 것이라는 식으로 써놨더라구요. 전혀 저에게 연락해서 취재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었고, 글만 잘라다가 그런 기사를 쓴거죠. 그건 제가 주체적으로 선택해서 한 일에 대한 모독이다, 저의 자긍심을 짓밟은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즉시 대응글을 올렸어요.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도 할 거고, 손해배상 소송도 준비하고 있어요.

김영준 복직되셔서 교단에 서시게 된다면 어떤 선생님이 되시고 싶으세요.

최혜원 '아 저선생님은 정말 나를 사랑해주셨다. 일년동안 이 선생님과 함께 정말 행복했다'는 그런 기억을 남겨주고 싶어요. 제가 저 6학년때 선생님 덕분에 그런 추억이 있거든요. 그런 기억을 떠올리면 가슴 따듯해 질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어요. 어쩌면 대단한 욕심이죠. 해직된 기간 동안 투쟁도 열심히 즐겁게 하고 자기계발 열심히 하면서 더 멋진 교사가 되고 싶어요. 정말 요즘에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고귀한 경험들을 하고 있어요. 거의 받마다 영화를 찍어요. 그러면서 내가 자라는 게 느껴지니까 즐겁죠

김영준 마지막으로 이 글을 보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최혜원 '기억해달라' 예요. 시간이 지나고 또 다른 일들이 생기면서 많이 잊혀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달라, 여전히 길바닥에서 투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기억이 무기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희생자가 아니라 당당하게 투쟁하고 있는 사람이고, 오히려 시대의 아픔의 상징이 된거니까 이런 잘못된 시대에 굴하지 않을 거고 같이 싸워서 이길 때까지 길바닥에서 씩씩하게 즐겁게 유쾌하게 투쟁하겠다는 다짐 전하고 싶어요. 뭔가 일어날 거예요. 또 많은 일들이 터질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나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할까를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격상 아마 맨 앞에서 달리고 있겠죠?

조점 \_최혜원 교사를 만나다 2 -

SUN

#### 사법제대로 보기

#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의 2심 판결을 살펴본다

제3자 배정에 있어 주주에 대한 임무위배와 회사의 손해를 중심으로

글 **김영희** 회원

#### 1. 서론

삼성특검이 기소한 삼성비자금의혹사건은 ①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사건, ② 삼성SDS 신주인수 권부사채 저가발행사건, ③ 차명주식 관련 조세포탈사건, ④ 증권거래법상 보고의무위반 등 4가지로 이뤄져 있다.

당초 "이건희 회장 등이 회사 돈으로 차명계좌를 통하여 수조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검찰 등에 로비를 하였다"는 의혹 제기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특검법 이름도 "삼성비자금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라 정하는 것으로 나아갔지만 정작 "비자금"이나 "로비"와 관련한 의혹은 전혀 규명도 못한 채 기소와 1, 2심 판결을 거치면서 뻔하게 드러난 잔가지에 불과한 차명주식계좌와 관련하여 조세포탈과 증권거래법위반으로 축소되고 말았다.

서울고등법원은 2008. 10, 10, 삼성비자금의혹사건에 관한 2심판결"(이하 '2심 판결' 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판결이 선고되기 전부터 이미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지만 결과 역시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특히 에버랜드 및 삼성SDS 사건에 관하여 2심 판결은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발행이나 삼성SDS의 신주 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목적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면서 이재용 남매에게 회사의 지배권을 이전하는데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었다. 국민들이 과연 "법원의 판결"이라는 이유로 수긍할 것인가. 우리나라 최대 재벌의 회장을 구속 시킬 수 없다는 내면의 생각을 법리를 동원하여 포장하고 실체를 은폐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삼성비자금의혹사건의 1, 2심 재판과정에서 가장 크게 쟁점이 되었던 에버랜드와 삼성SDS 사건에 있어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지에 대하여 2심 판 결이 채택한 법리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를 중심으로 2심 판결을 살펴기로 한다.



#### 2. 제3자 배정방식에 있어 회사에 손해 발생 여부

#### 가. 1심 판결

이 사건 1심 판결<sup>20</sup>(이하 1심 판결'이라 한다)은 주식회사가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그 전환가격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을 적정가격보다 저가로 정할 경우, 회사에게는 손해가 없고 기존주주들에게 지배력 약화와 주식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므로, 전환사채 등을 주주 배정방식으로 발행하면 기존주주들이 자기의 손해를 용인한 것이어서 주주의 손해나 회사의 손해를 논할 여지가 없게 되지만,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하면 기존주주들에게 비율적 지배력과 지분가치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로 인해 기존주주들의 이익이 회사이익으로 포섭될 경우에 한하여 기존주주들의 손해를 회사의 손해로 볼 수 있는데, 상법 제424조의2<sup>33</sup>에 의하여 저가발행으로 인해 기존주주들이 입는 손해를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회사에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손해는 회사의 손해로 포섭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나. 2심 판결

2심 판결은 ① 신주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신주 등' 이라 한다)의 발행으로 인한 거래는 회사와 출자자 사이에 자산의 이전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경영자가 신주 등을 발행함에 있어 그 발행가액, 전환가액, 행사가액(이하 '발행가액 등' 이라 한다)을 적정가격보다 저가로 정하는 바람에 출자금이 적정가격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우보다 적게 납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회사의 손익과 무관한 점, ② 회사법상의 자본충실의 원칙도 회사의 설립 또는 신주 등의 발행에 즈음하여 출자자에 의하여 인수된 주식의 주금액이 실제로 출자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불과한 점, ③ 증자 등을 할 것인지 여부, 그 액수(규모)를 얼마로 할 것인지는 이사회의 경영판단에 속하는 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과 같이 자금을 조달하는 목적이 아니라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면서 지배권 이전을 목적으로 신주 등을 발행하는

- 1) 서울고등법원 2008노1841호
-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366호
- 3) 상법 제424조의2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 ①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② 제403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제1항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이사의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발행이나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목적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면서 이재용 남매에게 회사의 지배권을 이전하는데 있었다."

경우에 있어서는 회사의 경영자에게 신주 등의 발행가액 등을 적정가격으로 정함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수량 의 주식만이 발행되도록 할 임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저가로 발행하는 경우 발행되는 주식의 수량과 같 은 수량의 주식을 적정가격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증자 등을 함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자금(증자대금 등)이 회 사에 유입되도록 할 임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그 발행가액 등을 적정가격보다 저가로 정하여 발행 한 경우 회사의 경영자가 적정가격으로 그와 같은 수량의 주식을 발행하였더라면 회사로 유입되었을 자금은 저가로 발행하여 유입된 자금보다 많았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회사에게 그 차액 상당의 손해 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주주 배정방식의 발행에 있어서는 저가로 발행하더라도 주주들에게나 회사에게 손해가 없지만, 제3 자 배젓방식의 발행에 있어서는 기존주주들의 부(富)가 신규주주들에게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주주와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주의 손해와 회사의 손해를 일치한다고 할 수 없 으므로(대법원 1983-12-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상법 제424조의2의 규정만을 근거로 기존주주 들의 손해를 회사의 손해로 포섭함 수는 없다고 하고, 오히려 회사의 이익이 주주들의 이익의 총화라는 견해

> 에 의하면 기존주주들의 손해와 신규주주들의 이익이 그 액수에 있어서 동일하므로 회사의 손해 는 없게 된다고 판시하였다.

#### 다. 잿점

주식회사가 신주 등을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 등을 적정가격보 다 저가로 발행하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가? 이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었다. 이 문제는 회사와 주주의 관계, 이사가 누구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이사의 임무 대 상)에 관한 논의를 전제로 한다. 이 점에 관하여 1심 판결은 기존주주들의 이익이 회사이익

으로 포섭될 경우에 한하여 기존주주들의 손해를 회사의 손해로 볼 수 있는데, 상법 아... 뉴코의서다고장? 제424조의2에 의하여 저가발행으로 인해 기존주주들이 입는 손해를 주주대표소송 을 통해 회사에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손해는 회사의 손해로 포섭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에 반해 2심 판결은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주주의 손해와 회사의 손해는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 고 제3자 배정방식의 발행에 있어서는 기존주주들에게 기존주식 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회사의 손해 로 포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3.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임무가 있는지 여부

#### 가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상법 제382조의 3) 영미법상 충싴의무는 회사에 대하여 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이사, 임원 및 지배주주에게 적용되는데, 회사 에 대한 충실의무만이 아니라 소수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도 포함한다. 이사, 임원, 지배주주는 회사 및 주주에 대하여 신탁적 법률관계에 있고. 신탁적 법률관계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계속적 포괄적으로 사 무를 처리할 지위에 있고 법률상 그 사람에게 강한 신임과 신뢰가 주어져 있는 법률관계이므로 이들은 수탁 자로서의 지위에 있으면서 회사, 주주에 대하여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충실의무는 지배주주와 이사가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수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배주주와 이사에게 부여하는 의무로서 주로 지배주주가 지배권을 강화함 목적으로 소수자인 주주 를 축출하거나 삿대적으로 열세로 만들 경우 혹은 회사의 이익분여에 있어 소수주주를 차별하는 경우 그 효 력을 부정하는 근거가 된다.

예컨대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무시하고 신주를 독점하여 인수함으로써 소수주주의 인수 권을 희석화시키거나.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선주식을 선별적으로 강제상환 하는 것 등은 이 의무에 위반하는 불공정한 행위이다.<sup>5)</sup> 따라서 에버랜드 및 삼성SDS 사건에 있어 피고인들이 지배주주. 이사. 임원의 지위에서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면서 지배권 이전을 목적으로 신주 등을 발행한 것은 에버랜 드. 삼성SDS 및 그 주주들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라 할 수 있다.

4) 임재연, 미국회사법 수정2판, 330면

5)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14판, 599면

사법제대로 보기 \_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의 2심 판결을 살펴본다

주식회사가 신주 등을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 등을 적정가격보다 저가로 발행하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가? 이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었다.

#### 나.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제3자 배정을 규율하는 상법의 규정

상법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가 각자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고(상법 제418조 제1항), 신주 등을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하기 위하여 정관에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418조 제2항, 제513조 제3항, 제516조의 2 제3항).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는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임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 다. 판례의 태도

판례는 이사가 주주 또는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할 임무가 있다고 보고, 주주 또는 채권자의 이익을 회사의 이익으로 포섭하였다. 대표이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내용이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임무에 배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배임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대법원 1989, 10,13, 선고 89도1012 판결).

#### 4. 임무위배의 내용

2심 판결은 에버랜드 사건 및 삼성SDS 사건에 있어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목적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면서 이재용 남매에게 회사의 지배권을 이전하는데 있었다고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그 자체로 임무위배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고 있다. 다만 2심 판결은 이 경우 "회사의 경영자에게 신주 등의 발행가액 등을 적정가격으로 정함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수량의주식만이 발행되도록할 임무가 있다"고 보았는데, 당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전환사채 등을 적정가격에 상당하는 수량의주식 이상으로 발행하였기 때문에 2심 판결에 따르더라도 임무위배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사가 지배주주의 지시에 따라 지배주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회사의 지배권을 이전하는 것은 임 무위배가 되지 않는가?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무시하고 신주를 독점하여 인수함으로써 소수주주의 인수권을 희석화시키거나,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선주식을 선별적으로 강제상환 하는 것 등은 이 의무에 위반하는 불공정한 행위이다

실권주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사회가 실권주(경우에 따라서는 이의 발생을 유도하여)를 특정인에게 배정함으로써 회사지배권에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sup>®</sup> 이사회가 특정인의 지주율의 확대나 매매차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실권주의 처리를 결의하는 것은 이사의 수임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고권리의 남용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생각이다.<sup>™</sup> 또 상법 제418조 제2항은 제3자 배정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상법 제513조 제3항, 제516조의2 제3항),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제한이 회사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목적과 수단의 비례성"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회사는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또 그 합리적인 이유를 개시하여야 한다고 한다.<sup>®</sup>

그런데 에버랜드 및 삼성SDS 사건에 있어 신주 등의 발행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면서 지배권 이전을 목적으로 신주 등을 발행하였다는 것은 2심 판결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므로, 이 신주 등의 발행이 상법에서 제한 적으로만 허용한 제3자 배정의 요건을 위반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또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제한에 있어 목적과 수단의 비례성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에버랜드 및 삼성SDS 사건에서 신주 등의 발행의 목적이 이미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면서 지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목적 자체가 불법적이므로 수단

과의 비례성은 논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들은 신주 등의 제3자 배정에 있어 이사들이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 5. 기<del>존주주</del>들이 허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또 신주 등의 발행에 대해 에버랜드나 삼성SDS의 기 존주주들의 사적 자치에 의하여 이사의 임무위배나 손해 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나아가 그런 임무위배나



- 6) 정찬형 상법강의(상) 제9판 939면
- 7) 최기원, 회사법 제10판 718면
- 8)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14판, 제699면

시법제대로 보기 \_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의 2심 판결을 살펴본다



손해를 당사자 사이의 자발적 협상, 사적 자치에 맡기는 것이 법적 정의에 부합하고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인 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경제거래에서 사적자치의 원칙을 넓게 적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① 독립적 의사결정(거래의 당사자들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는 독립적 지위의 확보) ②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협상(거래 상대방 및 거래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거래조건을 협상하는 데 수반되는 비용이 과도하게 크지 않아야 하는 조건), ③ 일탈행위에 대한 제재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부당한 거래 또는 거래조건의 불이행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및 피해구제 수단의 존재)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공통의 지배 하에 있는(under common control) 계열사 내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서 각 당사자의 독립적 의사결정을 주장하는 것은 그룹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자기모순이고, 회장과 그룹 비서실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른 신주 등의 발행이어서 적정한 주식가격을 평가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협상이 없었으며, 법인주주들이 대표소송 등을 통하여 책임을 추궁할 의지도 없었고 법인주주들(모회사)의 외부주주들이 이중대표소송을 통하여에버랜드(자회사)의 이사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역시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사적자치가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코즈 정리의 전제조건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9 따라서 기존주주들이 자신들의 손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 6. 회사의 손해

#### 가. 자본거래와 회사의 손해

2심 판결은 신주 등의 발행으로 인한 거래는 회사와 출자자 사이에 자산의 이전이 발생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경영자가 신주 등을 발행함에 있어 그 발행가액 등을 적정가격보다 저가로 정하여 출자금이 적정가격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우보다 적게 납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회사의 손익과 무관하다고 보았다. 이는 '자본거래는 회사의 손익과 무관하다'는 특정 견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데, <sup>10)</sup> 이는 회계적인 관점에서 파악한 것이고, 정확히 표현하자면 '자본거래는 영업활동상의 손익과 무관하다'라고 해야 한다는 반론이 있다.



자본거래도 회사의 자산 내지 증감을 초래하는 거래이며, 회사법상 회사의 손익은 회사의 손해와 이익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는 손익거래와 자본거래 양자에 의하여 모두 발생할 수 있고,

회사의 손익 개념을 회사법적으로 파악한다면 자본거래에도 회사의 손해 개념을 개재시킬 수 있다.

곧 '자본거래는 영업활동과 무관하기 때문에 회계학상 회사의 손익개념을 개재시킬 수 없지만, 회사의 자산 내지 재산가치의 증감을 초래한다고 말할 수 있고, 이는 회사의 손해와 결부되는 것'이라는 견해이다." 필자는 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 나 상법 제424조의2

상법 제424조의2 제1항은 신주발행시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상법 제516조, 제516조의2에 의하여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에도 준용되고 있다. 1심 판결은 상법 제424조의2를 근거로 저가발행으로 인해 기존주주들이 입는 손해를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회사에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손해는 회사의 손해로 포섭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1심의 이러한 판단은 지극히 타당하다. 다만 1심 판결은 이 경우 배임죄에 있어 회사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상법 제424조의2가 인수인이 회사에 납입할 의무가 있는 금액을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배임죄에 있어 손해액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인수인이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을 납입함으로써 회사의 자산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신주 발행 후의 주식의 가치는 발행 전의 가치로 회복되는데, 이 경우 기존주주는 물론 인수인도 자신의 주식의 가치가 증가되는 이득을 얻게 되고, 인수인의 주식가치 증가분은 배임죄에서의 손해액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범죄의 성립과 피해의 회복을 혼동한 결과라고 본다. 즉 상법 제424조의2가 공정한 발행가 액과의 차액 상당을 회사에 보전하게 한 것은 위 금액 상당을 손해로 본 것이고, 그 차액 상당이 보전되어 결과적으로 인수인도 일정한 이득을 보게 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이나 손해의 발생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본다. 차액 상당이 보전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 상당의 손해는 발생한 것이다.

9) 김상조, 사적자치 허용의 전제조건에 관한 법경제학적 해석(2008년)

- 10) 이철송, 자본거래와 임원의 형사책임, 인권과 정의 제359호
- 11) 조승현,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과 배임죄상의 손해에 대한 의견서(2008년)

32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사법제대로 보기 \_삼성 비자금 약혹 사건의 2심 판결을 살펴본다 3 상법 제424조의2 제1항은 신주발행시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기존주주의 이익의 총화로서 회사의 이익

1심 판결은 일반적인 회사 운영 상황에서의 회사의 이익은 주주다수결에 따른 주주이익의 총화를 의미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이 문제되는 상황에서는 소수주주의 이익보호가, 도산에 임박한 상황에서는 회사채권자의 이익보호가 요구된다고 한다. 1심 판결이 회사의 이익을 "주주이익의 총화"로 파악한 것은 경제적 실질의 관점에서 타당한 것이다. 또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와 독립된 의미에서 "회사의 이익 또는 손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질문하면서, 회사의 경우 주주의 이해관계와 그 "단체 자체"의 이해관계를 구분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독자적인 회사의 손해를 생각하는 것은 "법인격의 도그마"가 그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불필요하게 확장된 결과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sup>12)</sup>

앞서 살펴 본 이사의 기존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할 임무에 관한 상법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였을 때 기존 주주들의 이익의 총화는 회사의 이익으로 볼 수 있고, 이의 침해는 곧 회사에 대한 손해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는 주주간의 부의 이전에 불과한 경우에도 회사의 손해를 인정한 판례의 태도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 라. 공정가액과의 차액 상당의 손해 발생

2심 판결은 특검이 저가발행으로 인한 손해를 유입되어야 할 자금이 유입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주장하지만,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 자금을 제3자로부터 받으나 주주로부터 받으나 마찬가지이므로 주주 배정방식의 발행의 경우에도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이야 할 것인데, 이는 주주 배정방식의 발행의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 등을 액면가액 이상으로 정하기만 하면 무방하므로 저가발행을 하더라도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통설적 견해와 배치되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신주 등의 발행에 있어 제3자 배정방식의 경우에 이사가 발행가액을 공정하게 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도외시한 것이다.

발행가가 불공정할 경우 이사의 책임추궁(상법 제401조), 신주발행유지청구(상법 제424조), 신주발행무효의 소(상법 제429조)의 원인이 되고 인수인은 직접 출자책임을 지기도 한다. [3] 즉 주주 배정방식의 경우와 달리 제3자 배정방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등을 액면가액 이상으로 정하기만 하면 무방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발행가액"으로 발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정가액 이하의 발행으로 인하여 유입되어야 할 자금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와 독립된 의미에서

"회사의 이익 또는 손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질문하면서,

회사의 경우 주주의 이해관계와 그 "단체 자체"의 이해관계를 구분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독자적인 회사의 손해를 생각하는 것은 "법인격의 도그마"가

그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불필요하게 확장된 결과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유입되지 않은 것은 곧 회사에 대하여 손해가 되는 것이다.

#### 마. 소극적 손해에 관한 자의적인 판단에 대하여

2심 판결은 에버랜드가 소극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에버랜드의 경영자가 1,254,777주의 전환권이 인정된 전환사채를 그 당시 에버랜드 주식의 시가로 발행하여 이재용 남매나 제3자가 이를 인수하 였을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 등의 목적에 비추어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는 에버랜드가 삼성그룹의 소유구조에서 정점을 차지한다는 위상을 무시한 것이며, 더욱이 공소사실에서 에버랜드 주식의 최소한의 가치로 본 85,000원은 에버랜드의 실제 주식가치에 비하여 매우 낮은 가격인바, 위 금액 상당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더라면 제3자가 이를 인수하였을 개연성이 있는지를 보면 당연히 인수하였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당시 에버랜드의 장부상 순자산가치만 하더라도 223,659원 상당이고,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할증을 할 경우 에버랜드 주식의 실제가치는 이보다 훨씬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심 판결이 위와 같은 이유로 에버랜드의 소극적 손해를 부정한 것은 부당한 것이다

#### 7. 결론

이 사건의 실질은 지배주주의 사익추구행위인데, 이에 대하여 1, 2심 판결은 사후적 규율에 대한 역할을 포기한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학자들도 우리나라에서 문제되는 지배주주의 사적이익의 추구는 대부분 지배주주와 회사 간 거래의 형태로 나타나고, 이러한 문제는 지배주주 시스템에서의 전형적인 대리비용인데, 이를 두고 "소액주주와 지배주주간 부의 이전의 문제에 불과하고 따라서 회사의 손해는 없기 때문에 이사의 회사에 대한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배임죄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고 보는 것은 정책적인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sup>14)</sup> 단순히 정책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규정과 기존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보더라도 2심 판결은 부당하며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

12) 송옥렬, 주주의 부와 회사의 손해에 관한 판례의 재검토

13)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14판, 701면

14) 송옥렬. 주주의 부와 회사의 손해에 관한 판례의 재검토

#### 사법제대로 보기

# 미국산 쇠고기 고시 헌법소원 '기각', "이의 있습니다!"

글 **좌세준** 회원

작년 1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미국산 쇠고기 고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96,000명의 국민소송 청구인단이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글은 이번 헌재 결정과 관련하여 과연 헌재가 어떠한 논리로 기각 결정을 하였는지, 헌재의 기각 논리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물론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이 글을 통해 보다 쉽게 이번 헌재 결정의 내용과 문제점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1. 헌재 결정의 요지

(1) 헌법재판소가 위헌의 결정을 하려면 9인의 재판관 중 6인 이상이 '위헌' 이라는 의견을 밝혀야 합니다. 이번 헌재 결정에서 "미국산 쇠고기 고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가"에 대해, 5인의 재판관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라는 합헌 의견을, 3인의 재판관은 '고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 자체가 없다' 라는 각하 의견을 냈으며, 단 1인의 재판관만이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 (2) 5인의 재판관이 밝힌 '합헌'의 논리는 어떤 것일까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①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진다 하더라도, 현재는 "국가가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 하는 '과소보호 금지원칙'을 기준으로 삼아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것이다.
- ② 미국산 쇠고기 고시가 완벽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쇠고기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의 경우 국가가 그 보호의 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과소보호 금지원칙' 이라는 어려운 말이 등장합니다만, 현재의 기각 논리를 아주 거칠게 요약해보면 한마디로 "미국산 쇠고기 고시, 그만하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가 위와 같은 결정에 이르게 된 논리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2. 국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헌법 적 의무가 있는가?

(I) 국가는 국민의 생명·시체의 안전을 보호함 의무가 있는가? 물어보나마나 한 질문입니다. 국민의 생명



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국가라면 이미 그 국가는 존립 근거나 정당성이 없는 것이 될 테니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바로 이와 같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입니다. 이번 현재 결정문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헌법은 제36조에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헌법소원 청구인들이 미국산 쇠고기 고시가 위헌임을 주장한 가장 중요한 근거조항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2) 현재는 이번 결정에서, 바로 위와 같은 헌법 제10조와 제36조 규정을 언급하면서 "국가로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과 관련하여 소해면상뇌증의 원인물질인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축적된 것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을 보호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결정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광우병이라 불리는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Variant Creutzfeld—Jacob Disease, vCJD)은 특별한 예방이나 치료방법이 밝혀지지 않아 발병시 거의 100%에 가까운 치사율을 보이는 등 치명적인 질병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라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을 막기 위하여는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된 소에 축적된 변형 프리온 단백질의 섭취를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는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현재의 논리에 커다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재판관들은 미국산 쇠고기 고시가 과연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조치"였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 3. 이해할 수 없는 잣대 2개: '과소보호 금지원칙' 과 'OIE 국제기준'

(1) 이번 현재 결정문의 키워드는 '과소보호 금지원칙' 과 'OIE 국제기준' 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 산 쇠고기 고시가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2개의 잣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과소보호 금지원칙' 과 'OIE 국제기준' 입니다

(2) 과소보호 금지원칙: 보호조치가 '매우 불충분한 경우' 만 위헌 선언을 할 수 있다?
'과소보호 금지원칙' 은 무엇일까요 그 단어만 보아서는 쉽게 다가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의미를 살펴

1) 정식 명칭은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입니다만, 이하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고시'라고 합니다.

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사법제대로 보기 \_미국산 쇠고기 고시 헌법소원 '기각', "이의 있습니다!"

"국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나, 취한 조치가 매우 불충분한 경우만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할 수 있고, 국가가 최소한의 조치라도 취한 경우라면 위헌으로 선언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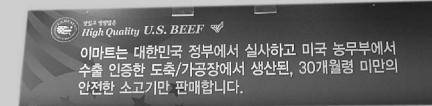
보기 위해 헌재가 '과소보호 금지원칙' 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 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국가가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불충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의 보호의무의 위반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나, 취한 조치가 매우 불충분한 경우만 현재가 위헌 결정을 할 수 있고, 국가가 최소한의 조치라도 취한 경우라면 위헌으로 선언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납득이 되시는지요. 현재가 이렇게 한 발짝 물러서서 위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논리의 배경에는 '권력분립의 원칙'이 깔려 있습니다만, "국가의 보호조치가 매우 불충분한 경우만 위헌 결정이 가능하다"는 논리는 어딘지 모르게 허전한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가장중요한 기본권 보호가 무제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현재가 '과소보호 금지원칙'을 법령의 위헌 판단 기준으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현재는 199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4인의 재판관은 '과소보호 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합헌) 의견을, 3인의 재판관은 '과소보호 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위헌) 의견을 낸 적이 있으며, 이번 현재 결정문에서도 바로 이 선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과소보호 금지원칙' 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일명 '낙태판결'에서 기본권 보호의무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적용했던 기준입니다. 독일 연방헌재는 "수태 후 12주 내에 하는 임신중절행위를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내용의 독일 개정 형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면서 '과소보호 금지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헌재의 결정은 태아의 생명권이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독일 연방 헌재는 "입법자의 재량은 신중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재판소가 입법자의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우리 헌재가 이번 결정에서 취한 논리와 비슷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결론에 가서는 "재판소는 입법자가 보호법익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수단 가운데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가를 심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한 다음, "생명을 수량에 의해 형량하는 것은 안된다"고 하면서 문제가 된 형법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



는 점입니다. '과소보호 금지원칙' 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생명권이라는 보호법익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심사 대상이 된 형법 조항을 위한 결정한 것입니다. 국가가 낙태에 대한 형벌권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야 함을 선언함으로써, 헌법 재판을 통해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통제를 가한 것입니다.

멀리 독일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 현재 결정에서도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기본권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보호의무를 엄격하게 인정한 사례가 발견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현 확인 사건에서 3인의 재판관이 내린 위현 결정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 3인의 헌법재판관은 '과소보호 금지원칙'을 기준으로 삼으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생명·신체라는 기본권적 법익이 헌법질서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비중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가해자에 대한 사적 복수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국가기관이 공소권을 독점하는 법제도 아래에서는 그 침해의 사전예방 및 그 침해행위에 대한 사후제재를 위하여 형벌이라는 최종적 수단을 이를 대체할 만한 다른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가운데서 포기할 수 없고 이때 비로소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신체에 대한 중대한 침해 즉,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나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 즉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조차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국가의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보호로서는 너무도 부족하여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합현 결정을 한 5인의 재판관들의 논리보다는 위와 같은 3인의 재판관들의 논리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5인의 재판관들은 '과소보호 금지원칙'의 원산지인 독일 연방현재가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기본권이 걸린 사건에서 내린 '위헌' 결정의 논리는 왜 수입하지 않은 것일까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기본권과 관련된 입법 재량은 극히 축소된다"는 헌법소원 청구인들의 주장에는 왜 눈을 감은 것일까요. 게다가 이 사건에서 위헌이 문제되고 있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률'이 아니라, 임명직 농림부장관의 '고시'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은 것일까요. 헌재가 농림부장관의 고시에 대하여 이토록 '과도한 신뢰'를 표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무입니다.

(3) OIE 국제기준: '최소한의 기준' 일 뿐!

다 세어 보지는 못했지만 이번 현재 결정문에서 'OIE 국제기준' 이라는 단어는 한 페이지에 3~4회 등장하

2)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케 한 경우, 사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 때문에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이 제대로 보호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한 신청이 된 사건입니다.(현재 90현대110, 136)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국민의 생명 ·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국가가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불충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의 보호의무의 위반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다.

기도 합니다. 헌재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OIE(국제수역사무국) 국제기준은 소해면상뇌증 발병위험과 관련한 특정 위험물질의 범위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결과에 기초한 것이다. 이 사건 고시가 OIE 국제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호조치를 취한 것이라면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OIE 기준' 이라는 것은 2004년 제정되어 2005년 공표된 기준으로 회원국들에 대한 '최소한의 권고 기준' 일 뿐, 현재가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일반적 '국제기준' 이 아니라는 정도는 상식에 가까운 것이 되었습니다. 실례로 2008년도에 제정된 'EU 국제기준'에 따라 EU 국가들은 'OIE 기준'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위생검역기준을 채택,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은 EU 국가 국민들의 그것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라는 말인지요. 현재는 이번 결정에서 '최소한의 기준'에 불과한 'OIE 기준'을 마치도 광우병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일반적인 국제기준인 것처럼 취급하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밖에도 현재는 이 사건 고시가 광우병에 대한 예방의학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sup>3)</sup> 즉, 국가가 광우병 유입을 막기 위한 사전예방적 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예방의학적으로 9의 안전성과 1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1의 위험성이 지니는 잠재적 위험성에 주목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요구됨이 원칙입니다.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은 확률적으로 따져서 "그만하면 괜찮다"라는 판단이 가능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 고시가 광우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면 한재는 "미국산 쇠고기 고시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불충분한 것이므로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함이 마땅한 것이지. 합헌이라는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4. 공개변론 절차는 어디로 갔는가?

(1) 이번 현재 결정은 청구서 제출 후 6개월만에 내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현재 결정은 당연히 예상되었던 공개변론 절차도 없이 내려진 것이어서 극히 이례적이며, 결과적으로는 지나치게 서두른 결정이었다는 의혹이 짙습니다.



(2) 현재는 그 동안 주요 사건들의 경우 공개변론을 열어 청구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진술을 듣고 결정을 내려 왔습니다. 서면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당사자들의 의견과 참고인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2008년 11월 13일 표준어규정 및 국어기본

법(공문서와 교과서에 표준어만을 사용하도록 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12월 11일에는 학교 근처에 납골당을 설치할 수 없다는 학교보건법 위헌제청 사건에서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 인지 이번 사건에서는 공개변론 한 번 없이 곧바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번 사건을 진행한 민변의 변호시들은 공개변론신청서까지 제출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현재는 표준어규정이나 학교기본법 사건에 비해 이 번 사건을 덜 중요한 사건으로 판단했던 것일까요. 현재는 결정문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위험 상황과 그에 대한 보호조치로서의 수입위생조건은 상당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에 속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및 무역환경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결정에 앞서, 마땅히 국제통상 관련 전문가, 소해면상뇌증(BSE) 전문가, 변형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었어야 마땅합니다. 아울러 고시 시행 이후 국내 검역기관의 검역실태를 조사하거나 검역기관 관계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재판관들은 결정문으로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정문을 통해서는 도저히 그 이유를 찾아낼 수 없습니다. 솔직히 이건 미스터리에 가깝습니다

#### 5. 마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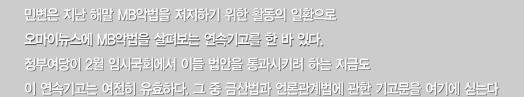
현재는 이번 결정에서 '과소보호 금지원칙' 과 'OIE 국제기준' 이라는 하필이면 가장 짧은 잣대 2개를 이용하여 고시의 위헌성을 판단하려 했다는 점에서 결정적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현재는 '권력분립' 이라는 장막 뒤에 숨어 헌법이 자신에게 부여한 '통제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헌재에 '통제적 권력'을 준 것은 바로 주권자인 국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마땅히 행사하여야 할 '통제적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을 때, 국민주권의 원리, 법치주의는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 3) 이하의 내용은 우희종 교수님(서울대 수의학과)의 의견서를 참고한 것입니다.
- 4)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고시상의 보호조치가 완벽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라고 하여, 이를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습니다.(결정문 20쪽)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금산법 & 언론관계법

\_정리 **민변 입법감시TFT** 



연속기고 1 – 금산법

#### 재벌왕국의 도래를 가능하게 할 금산융합 정책

현행 제도는 비금융주력자로 불리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 경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은행의 지분을 4% 이상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막기 위한 금산분리 정책은 나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정책이다. 금융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세계 100대 은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292개 산업자본 중 89.0%인 260개 산업자본은 그 지분율이 4% 미만이며, 산업자본이 실제 은행 경영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는 100대 은행 중 4개에 불과하다. 또한 극소수의 은행 역시 역사적인 이유로 일부 독일계 국가에서 그 소유를 허용하고 있을 뿐 그것이 현재 정부정책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다.

한나라당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를 확대하기 위해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의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이 법안들의 핵심 내용은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10%까지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과 PEF로 불리는 사모주식투자펀드를 산업자본이 아닌 금융주력자로 인정하여 은행지분 소유를 허용하는 것이다. 사모주식투자펀드의 경우 산업자본이 단독으로 30%, 산업자본이 전부 합하여 50%까지 펀드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펀드가 은행지분을 100% 소유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이 번 법개정 이후 추가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전히 없애버린 다음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여부를 금융위원회의 행정적 처분에 의해 판단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로 대체할 계획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산업자본이라 함은 결국 재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과 같은





시중은행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확보하는데 적어도 5조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런 규모의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금산융합정책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이 삼성은행, LG은행, 현대은행 등으로 바뀌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이다

금산융합정책 추진의 명분은 금융도 산업이고 금융산업을 발전시켜 국민들이 먹고사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 같은 세계적인 투자은행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은행업에 대한 추가적인 자 본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재벌자본을 동원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현실적으로 동원가능한 자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법을 바꾸어 산업자본의 은행소 유를 허용할 실익이 없다. 결국 정부의 금산융합정책은 최종적으로 재벌의 은행소유를 목표로 하여 추진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고 경영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

우선 재벌들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재벌은행은 현재와 같이 소유가 분산되어 있는 은행에 비해 더욱 공공 성보다는 수익성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다. 은행이 수익성을 극대화하려면 예금이자는 가급적 적게 지급해 야 하고 대출이자는 가급적 높게 받아야 한다.

또한 여러 가지 명목의 수수료도 최대한으로 받아내야 한다. 나아가 대출부실화로 인해 은행의 수익성을 해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 자영업자, 저소득자 등의 신용도가 낮은 채무자들에 대한 신용대출은 가급적 억제시켜야 한다.

한편 그 불투명한 경영행태를 감안할 때 재벌은행은 여러 가지 은밀한 방법을 동원하여 사익추구행위를 할 가능성도 높다. 재벌총수일가의 이익이나 계열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정상거래를 가장하여 편법적인 거래를 행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경쟁기업에 대한 대출을 회피하거나, 계열사에 대한 편법적인 대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은행이 수집하는 채무자나 채무기업의 정보를 재벌의 사적 목적을 위해 전용하는 등의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룹계열사들이 긴급한 경영위기에 빠지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금지원에 나서게 될 가능성도 높다. 이런 경우 지원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벌그룹이 망하면 해당 재벌은행도 함께 망하는 사태가 발생할수 있다. 그러면 재벌이 잘못해서 은행이 망하더라도 공적자금으로 은행을 살려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42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법률 바로세우기 \_금산법 & 언론관계법 43





규모가 커질 경우에는 경제 전체의 위기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공공성보다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과는 별도로 재벌의 은행지배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위와 같은 사례들은 아마 재벌은행이 아니라면 대체로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다.

설사 재벌이 은행을 잘 경영한다고 하더라도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이는 엄청난 문제를 야기한다. 삼성공화국 논란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은행 없는 재벌의 경제적 힘은 이미 그 자체로도 막강하다. 그런 재벌이 은행까지 장악할 경우 그 힘은 무시무시하게 커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재벌이 그 무시무시한 경제력을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선용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아마도 금권정치가 심화되면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국민들은 재벌왕국의 신민으로 전략하게 될지도 모른다.

미국 금융자본의 탐욕으로 인해 전세계적인 경제공황이 발생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그들보다 더욱 탐욕스러울 수도 있는 재벌에게 은행업을 맡길 경우 어떤 상황이 초래될 것인지 심사숙고해야만 한다. 금산융합정책은 나라경제를 거덜 내거나 파쇼적인 사회로 진행할 것을 예약하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다. 한나라당은 자신들마저 집어삼키게 될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어리석은 행위를 중지하고, 관련 법안을 즉시 철회해야만 할 것이다.

#### 연속기고 2 - 언론관계법

#### 한나라당에 재벌방송, 조중동 방송이 필요한 이유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정부 여당의 '언론장악 7대 악법'을 막고자 총파업에 들어갔다. 최근 여당인 한나라당이 야당과 시민사회 단체, 언론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발의한 지 20일 남짓한 방송법, 신문법 등 언론관련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려 하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날치기를 해서라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법 개정을 위하여 관련 학회나 협회 등으로부터 공개적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정부 여당의 '언론장악 7대 악법'을 막고자 총파업에 들어갔다.

최근 여당인 한나라당이 야당과 시민사회 단체, 언론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발의한 지 20일 남짓한 방송법, 신문법 등 언론 관련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려 하기 때문이다.

#### 신문법.

2006년 헌법재판소는 여론의 다양성 보장을 위하여 신문  $\cdot$  방송 겸영의 금지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하였다. 2006년 위 헌재 결정의 주요 근거가 된 여론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면에서 보면, 신문  $\cdot$  방송 간의 겸영 금지 조항은 여전히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결정을 변경할 만한 언론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신문·방송 간의 겸영 금지 조항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나라당의 신문법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 방송법,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 언론 관계법은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대기업의 방송 뉴스를 금지해 왔다. 삼성이나 현대 같은 재벌은 드라마, 영화, 오락, 스포츠 등 산업적 성격의 채널을 소유할 수는 있어도, KBS, MBC, SBS 같은 지상파방송은 물론이고 케이블방송, 위성방송에서의 뉴스채널과 뉴스를 방송할 수 있는 종합편성채널을 가질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이러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즉,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의 대기업, 조중동과 같은 대형 족벌신문도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지분을 20% 소유할 수 있게 했다. 또 YTN 같은 보도

채널, 뉴스보도를 할 수 있는 종합편성채널 지분을 49%까지 소 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나라당안 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족 벌신문들이 거대재벌과 손잡고 MBC, KBS2 를 인수할 수 있게 된다. 종합편성채널을 만 들거나 YTN과 같은 보도전문채널을 만 들어 뉴스방송을 할 수 있다. 아니, 그냥 쉽게 YTN 주식의 49%를 인수하는 게 더 빠르고 적은 비용이 들 것이다. 족벌신문



법률 바로세우기 \_금산법 & 언론관계법 4

#### 법률 바로세우기





이 지배하는 족벌방송, 특정자본이 지배하는 재벌방송이 태어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 이와 같이 신문법 ·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뉴스채 널이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도, 뉴스채널이 경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또, 영어가 아닌 우리 나라 말도 된 뉴스채널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도 거의 없다. 미디어산업의 발전은 그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우리나라 기업들(CJ그룹, 태광그룹 등)은 영화, 드라마, 오락, 스포츠, 다큐멘터리 등의 방송은 하고 있다. 산업적 측면의 방송은 현행법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야당, 언론노조, 언론학계 및 국민 대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문사와 재벌에 뉴스방송을 허용하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뉴스가 여론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재벌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보수신문사가 뉴스방송을 한다는 것은 이미 신문시장의 70%이상을 점하는 보수신문사의 논조를 방송으로 확대하려는 것일 뿐이다.

얼마 전 특정재벌에 비판적인 기사를 게재한 신문사의 해당 재벌 광고가 급감한 일을 보았다. 재벌이 광고를 통해서 언론사를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재벌이 소유하는 방송사가 해당 재벌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할 수 있을까? 보수 신문사가 운영하는 방송사가 보수 신문사, 보수 정당에 대한 보도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중앙일보가 삼성 비자금 사건과 X파일 사건을 보도하지 않은 것처럼, '아니다'일 것이다. 지상파 방송의 광고시장은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 방송시장에서의 경쟁이 격화되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한마디로 재벌방송, 족벌방송은 친재벌의 목소리, 친보수의 의사만을 내보낼 것이다. 외형만 민주주의의 모습일 뿐,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언론관련 법의 개정은 다른 법의 개정과는 다른 면이 있다. 즉, 언론이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것인 만큼, 언론관련 법의 제·개정에는 여론의 수렴 과정이 특히 중요하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도 없이 단시일 내 에 날치기를 통해서라도 법 개정을 하겠다는 것은,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것도,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려는 것도 아니다. 억지로 정부여당에 유리한 획일적인 언론환경으로의 재편을 위하여, 언론의 자유를, 민주주의 를 위협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언론사는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일을 제일의 사명으로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언론이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

# 한나라당 추진 법률안에 대한 검토결과

철회되어야 할 악법 31개 법률안

정리 **민변 입법감시**TFT

민변은 한나라당이 오는 2월 국회에서 강행하려는 85개 중점 범안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어도 아래와 같은 31개 범률안은 법적 문제가 심각하여 결코 처리되어서는 안될 범안으로 파악되었다. 민변은 해당 범률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시키려는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주요 범률안에 대하여는 재미있는 별칭을 붙여보았다.

#### ■ 언론 및 표현의 자유 말살 악법

- 1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개정안 (일명 "조중동 방송법")
- 2. 방송법 개정안 (일명 "재벌방송법")
-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 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5. 저작권법 개정안
- 6 정보통식맛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하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인터넷 재감법")

#### ■ 법적 호란 야기 악법

- 7. 교육세법폐지법률안
- 8. 농어촌특별세법폐지법률안
- 9 교통·에너지·화경세법폐지법률안
- 10. 주세법
- 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상 일명 "중도하차법" "혼란야기법")
- 12. 한미 FTA 비준동의안

#### ■ 경제민주화 역행 악법

13.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일명 "산업은행 우왕좌왕법", "산업은행 리먼브라더스화법", "산업은행 민영화법")







- 14. 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 (일명 "산업은행 민영화 쌍둥이법")
- 15. 은행법 일부개정안 (일명 "재벌은행법")
- 16.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안 (일명 "재벌사금고화법")
-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일명 "출자총액제 폐지법")
- 1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 사회양극화 조장 악법

- 19. 의료법 개정안 (일명 "의료서비스 양극화법")
- 20. 수도법 개정안 (일명 "물사영화법", "물영리화법", "물양극화법", "봉이김선달법", "물사유화법" 등)
- 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 22.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

#### ■ 국가통제 강화-인권 말살법

- 2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면개정법률안 (일명 "민간기부 통제법")
- 2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 (일명 "복면금지법")
- 25.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제정안 (일명 "집단소송제모독법" 또는 "집회말살법")
- 26.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일명 "휴대전화감청법" 또는 "휴대폰도청법")
- 27.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안 (일명 "정치사찰법", "안기부부활법", "무한권력국정원법", "무소불위 국정 원법")
- 28.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 (일명 "제2의 국가보안법". "테러빙자 반대파싹씈이법")
- 29.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일명 "교원노조무력화법")
- 30.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 (일명 "시민단체연좌제법")
- 31 북한인권법안 (일명 "대북삐라살포지원법")

#### ■ 위헌 소지가 큰 법안(11개)

• 이미 심각한 위헌시비가 일고 있는 법률안을 학계나 법조계의 전문적 의견조회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

국민의 의사와 참여가 실종된 책임 없는 정치를 반면교사 삼아 민주적 기본질서와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한 현행 헌법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대와 달리 헌법재판이 일반적으로 정착한 이 시대에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통제입법을 모방한 과거회귀 입법들은 시행되자마자 속속들이 헌법재판에 회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 노력도 없이 직권상정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들은 통과되더라도 헌법소원 등의 위헌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 집회 · 결사의 자유 침해 법률 : 집회(결사)의 자유는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현재 2000현바67,83병합)일 뿐만 아니라 대의제 · 임기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여 선기기간 이외의 시기에도 국민에 대한 책임정치가 구현되도록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이다. 때문에 헌법은 집회에 대한 사전허가제와 언론에 대한 사전검열을 철저히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①집회에서 가면을 쓰고 퍼포먼스를 하는 것까지 형사 처벌하는 법안(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②집회에 대하여 집단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집회에 대하여 형사는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 지우려는 법안(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은 집회의 자유를 노골적으로 봉쇄하는 법률안이다. ③또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구성원의 집회관련 범법행위를 문제삼아 해당 단체의 등록신청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결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 의사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침해 법률: ①인터넷 상의 단순 욕설만으로도 징역형까지 가능한 중한 형벌로 처벌하고 모욕죄를 비친고죄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전횡을 야기할 사이버모욕죄(정보통신망이용 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는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제약한다. ②통신비밀보호법은 휴대폰 감청을 사실상 자유롭게 허용함으로써 사생활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또한, ③국정원법과 ④테러 방지법은 집회 개최·성명발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정당·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한 정치사찰을 강화하고, 정보기관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는 군사독재시절 회귀 악법 들이다. 위 법안들은 과거 군사독재시절의 비민주적 인권유린 행위, 국민의 의사와 참여가 실종된 책임 없는 정치를 반면교사 삼아 민주적 기본질서와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한 현행 헌법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대와 달리 헌법재판이 일반적으로 정착한 이 시대에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통제입법을 모방한 과거회귀 입법들은 시행되자마자 속속들이 헌법재판에 회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알권리 등 침해 법률 : ①방송법, ②신문법 개정안은 재벌과 거대 보수신문사의 방송 장악을 가능케 함으로써 다양한 여론형성의 근본인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상 신문의 기능보장 규정(헌법 제

법률 바로세우기 \_한나라당 추진 법률안에 대한 검토결과 📗





21조제3항)에 반하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에 관한 헌법 규정(헌법 제119조)에 반한다. ③저작권법 개정안은 포털 사이트 등 일부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하여 전체 사이트를 차단시키는 것으로써 명백한 과잉조치이자 국민의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건강권 등 침해 법률: 수도법 개정안은 기본적 생존조건이자 필수재인 수돗물을 사업화하여 양극화시 킴으로써 건강에 관한 국민의 권리(헌법 제35조)를 침해하고 평등권에 반하는 법률안이다.

#### ■ 법적 혼란이 예상되어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는 법률안

-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의견수렴조차 없어 관련당사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으나,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관련당사자들이 이를 숙지할 경우 반발이 예상되어 법적 안정성에 큰 훼손이 우려되는 법률들도 상당수 있다. 여당의 85개 법안은 아무 논의 없이 졸속적으로 발의되어 몇 가지 쟁점이 되는 법안 외에는 관계 이해당사자와 법률가들조차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바,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 농어촌특별세법 폐지법률안: 한미FTA 등으로 농업문제의 개방이 가속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낙후된 농어촌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많은 재정이 농어촌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투여되어야 한다. '농어촌특별세법 폐지법률안'은 정부가 제시한 방향과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법안이어서 농어민들의 큰 반발이 예상되는데도 관련 상임위에서의 논의나 농어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없이 처리하려하고 있어 법이 통과되더라도 관련 이해관계자의 반발로 큰 혼란이 예상되다.
- 교육세법 폐지법률안: 경제위기로 대학생들의 대량 휴학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학부모, 학생, 교육 단체들이 정부가 먼저 등록금을 대납하고 학생이 졸업 후 일정소득이 생겼을 때 등록금을 갚아나가는 소득연계형 등록금후불제를 실시하자고 했을 때 정부는 3~4조원의 재원이 없어 이를 실시할 수 없다고 하고, 정부가 공약하고 있는 공교육정상화를 위해서도 학교시설, 교사 등 많은 부분에 교육재정의 투여 가 확대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러한 재원마련의 근간이 될 교육세를 폐지하겠다는 것도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세법폐지법률안' 이 통과하더라도 학부모, 학생, 교육단체들의 반발 과 일선 학교에서의 혼란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의 시장지율화, 공기업 민영화의 정책기조와는 정반대로 지난 2008년 9월의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에는 경제위기 극복책으로 정부의 정책방향이 재정투자 강화, 공기업은행 등에 공적자금의 투여 등 180도 바뀌게 되었다.

• 의료법 개정안 : 외국인들에 대한 고가 의료행위와 국내 건강보험가입자들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질의 의료서비스로 서비스가 이원화될 수 있어서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위험이 있는 등전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현행 헌법 및 의료법의 법익을 침해하고, 현행 건강보험 및 의료체계에 혼란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

#### ■ 정부여당 내에서도 조율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할 법률안

- 정부의 추진정책 방향과 법률의 내용이 정반대인 경우 등 정부 · 여당 내부에서 조차 조율되지 않아 법적 혼란을 야기할 법률들도 다수이다.
-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 :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의 시장자율화, 공기업 민영화의 정책기조와는 정반대로 지난 2008년 9월의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에는 경제위기 극복책으로 정부의정책방향이 재정투자 강화, 공기업은행 등에 공적자금의 투여 등 180도 바뀌게 되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준비되었던 법률안이 2008년 9월 이후 정부정책의 변화와 상관없이 그대로 처리 대상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산업은행의 경우 이명박 정부 출범당시에는 민영화 대상이었지만, 2008년 9월 이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해외로부터의 자금차입이 막힌 민간은행들의 신용경색이 심화되자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등의 자금출연으로 은행자본 확충편드 20조원을 조성하여 민간은행들의 자본금을 확충하는 사실상의 공적자금 출연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도, 이명박 정부 초기 산업은행을 민영화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과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이 그대로 발의되어 있다. 정부는 한편에서 산업은행에 공적자금을 더 확충하는 등 산업은행의 공기업성을 더 강화하는데, 한편에서는 금융위기 이전의 한국산업은행 민영화법을 그대로 통과시키려 하는 것이다.
-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폐지법률안 :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의 폐지도 마찬가지이다. 녹색성장을 외치는 정부가 일본식의 에너지효율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일본의 예를 비추어 보아도 많은 재정투여가 필요하다. 세계 최대의 에너지 비효율로 세계 4대 석유수입국의 오명을 쓰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환경세를 폐지한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다.

법률 바로세우기 \_한나라당 추진 법률안에 대한 검토결과

# 오바마의 등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_글 최장집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최장집 선생님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왜 오바마인가〉라는 제목의 민주주의교육연구센터 (http://cafe.naver.com/sesope) 주최 겨울 특별 강연을 두 차례(2009. 1. 9. 〈오바마의 등장은 왜, 어떻게 가능했나?〉, 1, 23. 〈오바마, 무엇이 그를 비상한 리더로 만들었나?〉) 진행한 바 있습니다.

#### 1. 미국 정치의 큰 변화

우리사회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은 "오바마의 등장이 뭐 그리 대단한가?"라는 반응을 보인다. 진보적인 성향을 갖는 이들 사이에서도, 그가 흑인일 뿐만 아니라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긴 하지만 선거이후 정부 구성에서 보수적 인사가 중용된 사례로 보거나 미국의 거대하고 구조화된 보수적 사회질서의 강고함을 이유로, 그의 등장은 현상이 유지되는 구조적 연속선상에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 정도로이해하는 경우를 자주 발견하게 된다. 혹은 오바마에 대한 적극적 평가로 인해 그간 진보파들이 견지해왔던 미국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약화될 가능성을 애써 피하려는 것은 아닌가 여겨지기도 한다. 친미든 반미든 사태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념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이 꼭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오바마의 등장을 저평가하려는 소극적인 태도나 관점은 미국의 역사와 사회, 그리고 그 사회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변화했는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오바마의 말을 빌리면, 그는 1960년대의 아들이며, 그때의 민권운동이 오늘의 오바마 대통령이 있게 했다. 그가 출생했을 당시 미국의 대다수 흑인들은 투표도 할 수 없었지만, 1950~60년대 민권운동의 결과 투표권법(1965)이 통과되고, 그로부터 40년여 년이 지난 뒤에는 흑인 대통령이 탄생하는 대사건이 발생했다. 오바마의 등장을 역사적이며 극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40년 동안 지속된 긴 보수역진의 종착점에서 그에 대한 확실한 반점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말까지의 민권운동은 미국사회를 전면적으로 뒤흔들었던 사회적 변혁의 시기였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끌었던 워싱 턴 행진(1963), 잇따른 시민권법(1964)과 투표권법(1965) 의 제정, 존슨정부의 빈곤에 대한 전쟁(1966) 등 은 이 시기를 상징하는 대사건들이었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의 흑백통합을 비롯해 공공시설의 사용과 고용 등에서 흑백차별이 최소한 법적으로 폐지되었으며, 급기야 흑인들이 투표권을 가지면서 정치적 시민권을 획득하여 미국사회에 정치적으로 통합되었다. 이 민권운동이 1960년대 월남전에 반대하는 반전운동과 합류하면서 냉전시기를 통해 형성된 기성질서가 소수인종과 젊은세대에 의해 크게 도전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1960년대 말을 기점으로 이러한 사회운동은 급속히 해체되었다. 모든 커다란 정치적 개혁이나 사회운동에 의한 변화들이 그 다음시기 그에 못지않은 커다란 반작용을 불러오는 것은 사회 변화의 상례이기도하다. 1969년 닉슨정부의 수립은 이후 장기간의 공화당 우위를 알리는 거대한 보수적역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학적으로 말한다면, 미국에서 3~40년을 주기로나타났던 정당과 유권자 지지연합 간의 연계가 크게 변화하는 '유권자 재정렬' (voter realignment)을 통해 새로운 정치지형이 만들어진 것이다. 당시 미국정치는 1930년대 초에 형성된 이른바 '뉴딜 정치동맹'으로 가능해진 민주당 우위의 시대가 끝나고 공화당우위의 새로운 유권자정렬이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다.

필자는 오바마의 등장을 정당 간 경쟁의 사이클을 중심으로 한 장기간의 정치변화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때, 미국의 사례와 한국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민주화의 변화와 그로부터 20년 뒤 한나라당 정부의 등장으로 표현되는 보수역진의 변화를 비교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러나 지면상의 제약으로 이 문제를 더 이상 논의하기는 어렵다. 어쨌든 지난 미국 대선에서 맥케인 후보가 패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공화당이 이념적 스펙트럼에서 중간층에 있는 유권자들에 호소하기보다는 가장 보수적인 지지자들을 동원하는 칼 로브식의 전략을 취한데 있다.

그것은 이른바 '문화 전쟁' (culture war)으로 알려진 공화당을 나타내는 적색 주 대 (對) 민주당을 나타내는 청색 주 간의 이데올로기전쟁을 더욱더 극단으로 밀고나가고 사회변화와 테러에 대한 두려움을 동원코자 했던 전략을 말한다. 레이건 정부 이후 이 문화전쟁에서의 우위는 분명 공화당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레이건의 "정부는 해결책 이 아니라 문제다"라는 유명한 말은 그의 '남부전략'의 중심요소인 감세정책을 뒷받 침하는 것으로, 과거 정부는 예산을 통해 납세자의 돈을 흑인들에게 이전해주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것은 표를 통해 정치적 세력화를 가능케 한 투표권법에 대한 강력한 보수적 대응책이었다. 그러나 레이건정부가 주도했던 금융시장 자율화를 중심 으로 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운영원리는 아들 부시정부에 들어와 더 이상 작동하지 않 는다는 것을 입증하면서 파탄을 맞게 되었다. 동시에 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정당화하는 반테러전쟁의 이데올로기적 선전과 담론, 명분들 또한 월남전과 반전운동을 통해 1960년대의 소용돌이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에게도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없었다. 그 결과 미국의 지난 대선은 1960년대 말이래 공화당우위시기를 지배했던 담론과 수사들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지난 미국선거는 얼마나 역사적인가? 2008년의 전체 선거과정을 되돌아볼 때, 그것은 거의 선거혁명처럼 보였다. 풀뿌리조직화에 기반을 두면서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 방법은 전국적으로 엄청난 수의 젊은 자원 봉사자들을 동원하고 이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냈다. 뿐만 아니라 막대한 비용의 선거자금으로 인해 큰 부자가 아니고서는 출마하기 어려운 제도하에서도 가장 돈이 없었던 오바마는 소액 정치자금을 모금하는데 성공하여 클린턴이나 맥케인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정치현금을 확보했다. 물론 그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자금력은 텔레비전을 중심으로 한 언론매체를 통해 경쟁자들이 그를 '사회주의자', '무슬림', '급진파'로 색칠하려는 선전공세를 방어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아이오와 코커스, 덴버 전당대회, 그리고 수많은 유세장과 정치집회가 보여준 대규모 청중동원은 자발적인 것이기도 했지만 민주당머신을 우회하는 젊은 자원봉사자들의 활약에 힘입은 바 컸다.

흑인들의 동원과 참여는 말할 것도 없다. 우리는 언론보도를 통해 그들이 가슴을 조이면서 드러내놓지 못하고 오바마의 당선을 성원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그 모든 염원과 열광은 유세장으로, 투표장으로 가는 그들의 기다란 줄, 그들의 태도, 그들의 표정, 그들의 눈물에서 보고 느낄 수 있었다. 버지니아와 같이 비교적 작은 주에서만도 덴버 전당대회 수락연설을 보기 위해 13,000개의 파티가 열렸고, 9월에만 63만 명의 새로운 기부자들이 헌금해서 전국적으로 1억 5천만 달러의 선거자금이 거쳤다. 오바마 선거캠프는 4년 전 선거에서 하워드 딘 후보가 개발했던 인터넷 선거 전략을 수천, 수만 배로 확대하여, 컴퓨터 데이타베이스에 1천만 명에 이르는 유권자정보를 확보했다. 선거당일 플로리다 주에서 선거감시를 위해 자원봉사에 참여한 변호사 수만5천명에 달했다고 한다. 이것은 선거가 아니라 거의 온 국민이 참여하는 정치운동처럼 보였다.

이런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실제 투표율과 지지율이 그에 합당한 엄청난 기록을 보이지 않은 것이 의아해 보일 수도 있겠다. 투표율 61.6%는 존슨이 당선됐던 1964년 선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예상보다 높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것은 월남전, 워터게이트 이전 수준을 회복했을 뿐이다.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지 않았던 까닭은, 공화당 지지자들 중 맥케인—페일린 후보에 실망한 기권자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의 투표율은 이들의 공백을 메우고 남는, 종래에 투표하지 않았던 젊은 층과 흑인들이 대거 투표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투표에 나타난 오바마대 맥케인 지지 - 365(대) 162, 52.6%(대) 46.1%(6.5%차이)를 보면, 비록 최근 년에들어 일반투표 득표율에서 50%를 넘은 적이 근래에 없었다는 (클린턴 1992년 43%, 1996년 49.24%) 점에서 변화는 괄목할 만하지만, 오바마의 승리를 역사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존슨은 일반투표 61%획득). 투표자 수는 2004년 1억2천2백만에서 2008년 1억3천1백만으로 9백만 정도가 증가했다. 그러나 4년 전과 비교해볼 때 투표율과 득표율 자체보다 더 주목하게 되는 것은 내용상의 변화이다.

이번 선거에서 오바마는 2004년에 비해 9개주를 적색 주에서 청색주로 전환시켰는데, 이들 주의 선거인단수만 모두 112명에 달한다. 중서부의 오하이오, 인디애나, 아이오와, 남부의 버지니아, 노스 캐롤라이나, 플로리다, 록키산맥 인근지역의 콜로라도, 뉴멕시코, 네바다가 그들이다. 이로 인해 공화당 지지지역은 최남부 주 (Deep South), 대평원 주, 애팔래치아산맥 근처의 일부 주로 완전히 축소되었다. 선거지도를 바꿔놓은 결과에 대해 당연히 지난 선거를 재정렬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할 될 수 있다.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의 정치이론가들은 재정렬의 개념을 경성(硬性)의 안 정적인 정렬(hard alignment)과 연성(軟性)의 불안정한 정렬(soft alignment)로 나누어본다. 대통령과 연방 상하원, 주, 지방 선거를 한 정당이 휩쓰는 경우를 경성 정렬이라고 말한다. 대표적인 경성 (재)정렬은 뉴딜동맹에 의해 민주당 지배 체체가 확립된경우이며, 연성 정렬은 1980년대 레이건정부가 끝난 이후 시기에 공화, 민주 양당이불안정한 균형을 보여주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이점에서 이번 선거로 나타난 오바마정부는 다음 선거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연성 재정렬로 정의된다. 오바마 정부의 출현이 현재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역사적인 사건이 되기 위해, 바꿔 말해 연성 재정렬이아닌 경성 재정렬이 되는데는 현재의 금융위기와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있다는 분석이다. 이것은 민주당의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즉 백인노동자 집단의 지지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획득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말이다. 그럴 경우 2008년의 대선은 앞선 시기 1932년의 재정렬에 비견될 만한 압도적인 민주당위 체제가 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오바마가 읽은 여러 권의 책 가운데 프린스턴대학 정치학과 교수 래리 바텔스의 『불평등한 민주주의』(Unequal Democracy)가 포함되어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2차대전 이후 공화당정부와 민주당정부의 업적을 100분위 소득분

배구조에서 상위 20%와 하위 20%간의 소득분배율 비교를 통해 보여준다. 6개의 공회당정부 하에서 소득분배상의 불평등비율은 증가했고, 5개 중 4개의 민주당정부 하에서 (오일쇼크에 의한 카터정부는 예외) 불평등비율은 하락했다.

특히 하층소득자의 실질소득은 민주당집권시기 평균 5.7% 증가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이 뚜렷하게 향상된 반면, 공화당집권시기에는 1.3%만 증가했다. 이러한차이는 경제학자들이 말하듯이 경기순환 때문이 아니라, 어떤 정당이 집권하느냐에따른 결과라는 것이다. 요컨대 "문제는 정치"에 있다는 주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 백인노동자집단은 중서부와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의 경우에는 오바마를 남부지역의 경우에는 맥케인을 지지하여, 그 비율상으로는 백중세의 지지분포를보였다. 여기에서 초점이 되는 문제는 여전히 계급투표는 중요한 요인인가 하는 것이다. 바텔스는 이 문제를 구체화시켜 네 가지의 질문, 즉 백인노동자계급은 민주당을버렸나? 그들은 더 보수화되었나? 노동자계급은 경제문제를 도덕적 가치들로 대체했나? 종교적 투표자들은 경제이슈로부터 이탈했나? 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그가찾아낸 답은 이들 모두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번 선거는 바텔의 연구결과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대선의 최대 관심사는 과연 오바마가 치명적인 결함이라 할 인종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느냐하는데 있었다. 그가 흑인 후보라는 사실은 거의 넘어서기 불가능한 장애처럼 보였다. 그것은 '브래들리 효과' 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 효과는 사실무근임이 입증되었다. 상당수의 백인들은 그가 흑인이기 때문에 투표했다고 말했다. 선거분석가들은 선거 막판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미결정자들이 맥케인을 더 많이 찍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조사결과는 두 후보가 이들의 지지를 거의 절반씩 나눠가졌음을 보여주었다. 동부로부터 중서부를 잇는 산업벨트지역의 주들 모두에서 오바마가 승리함으로써 힐러리를 지지했던 블루칼라노동자들 사이에서 브래들리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이들 주에서 백인민주당지지자들의 85%가 오바마를 지지했다. 또한 맥케인 대 힐러리 가상대결의 지지자들 가운데 힐러리 지지자들의 83%가 오바마를 지지했고, 나머지 16%만이 맥케인을 지지했다. 오바마는 백인투표자들 가운데서 2000년의 앨 고어, 2004년의 존 케리 보다 더 많은 지지를 획득했다.

흑인과 젊은 층은 말할 것도 없고, 히스패닉, 카톨릭, 중서부지역, 교외거주자들로 부터도 골고루 높은 지지를 받았고, 특히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으로부터는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다. 맥케인이 다수를 획득한 집단은 65세 이상의 노년층뿐이며, 그들 사이에서도 오바마는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표를 얻었다. 레이건이 형성했던 전통적인 보수파와 종교적 우파를 핵심으로 하는 공화당 지지기반, 칼 로브가 자신해 마지않았던 '항구적인 공화당 다수'는 이로써 분쇄되고 말았다. 많은 정치 분석가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오바마의 당선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이번 선거는 '역사상 최악의 행정부가 드리운 어두운 밤'에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흑인대통령의 출현을 가능케 한 사회적 변화이며, 미국사회의 개방성과 포용성이라는 장점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선거 결과가 보여주듯이 어떤 도덕적, 정치적 레토릭이나 슬로건으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흑인을 비롯한 소수인종을 포용하고 통합할 수 있는 시민들의 행동과 태도에 있어서의 변화가 만들어낸 결과 이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사람들이 오바마의 등장에 환호하는 이유는, 그들 나라들이 갖지 못한 정치지도자로서 다문화적 배경을 갖는 그의 매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인물을 탄생시킬 수 있는 사회에 대한 긍정과 찬양 때문이기도 하다.

#### 2. 무엇이 그를 비상한 지도자로 만들었는가?

오바마가 대통령에 취임하던 날,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사설은, "그에 대해 너무 젊고 경험이 없으며 한편에서는 너무 흑인이라 말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충분히 흑인이 아니라고 말해 온 그 모든 정치적 기성관념에 도전했던 한 사람의 취임식, 수많은 부끄러운 방법으로 인종적으로 분열된 한 도시와 한 나라에서 대통령으로 선서를 하는 버락 오바마의 대통령 취임식이 불러일으키는 것만큼 강력한 상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썼다. 이 날 취임식의 의미를 무척이나 잘 요약한 시적이고 감동적인 사설이라고 생각한다. 한편에서는 너무 흑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충분히 흑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이 모순적 불일치는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간적, 인격적으로도 그를 비상한 인물로 만든 동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모순적 태생, 흑인혼혈로 백인어머니와 백인가정에서 성장한 그의 특별한 배경은 그가 흑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격렬한 내적 긴장을 불러왔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인간과 사회적 관계의 성격을 깊이 생각하도록 만들었으며, 그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 (deep thinker)으로 성장시켰다. 이 긴장을 통해 그는 창조적 능력과 자질을 배양했고, 인간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대성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하겠다. 보통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그 긴장을 극복하기보다는 거기에 분열증적으로 함몰되어 인생에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그가 자신에 대해서 쓴 글들은 정치적 성공담이라기보다 오딧세이의 여정과 같이수많은 위험과 역경을 뚫고 급기야는 자기 발견을 성취하는 인간적 드라마로 느껴진다. 오바마 개인에 대해 말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뛰어난저작,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 작품 자체의 내용과 수준으로 인해 모두 불후의 작품으로 남을 두 권의 저작을 통해 직접 자신에 대해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저작 가운데 하나인 『나의 아버지로부터의 꿈』(1995, 이하 『꿈』)은 그의 내면, 그의 인간으로서의 깊이와 사색의 궤적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해주는 자전적회고록이다. 이 책은 미국사회의 인종차별이라는 맥락에 위치한 분열적 자아를 극복하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더불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발견해가는 성장소설(Bildungsroman)적인 내면의 기록이다. 서술이 시적인 운율을 가져 머리로 생각될뿐만 아니라 감동적으로 느껴지게 하는 작품이며, 인종문제를 주제로 한 저작으로서도 고전의 반열에 오를 걸작 중의 걸작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른 하나는 나는 왜 정치를 하나, 아니 그보다 나는 왜 정치를 하지 않으면 안되나 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그의 정치적 행동과 사상, 가치와 비전을 담은 정치적 저술, 『희망의 담대함』(2005, 이하 『담대함』)이다. 그의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으로부터 시작되는 정치적 경험을 바탕으로 연방 상원의원 당선 이후 집필한 이 책은 대통령선거과정에서 그의 선거강령으로서 그리고 그의 여러 명연설들의 중심주제와 내용의 토대를 이룬다. 뿐만 아니라 그가 대통령으로서 집무를 시작하면서 펴나가는 정책기조를 안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책이기도 하다. 이 두 권의 저작으로부터 우리는 그가 무척 긴 호흡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임을 알게 된다.

『담대함』에서 느끼게 되는 것은 정치를 주제로 한 내용과 형식의 새로움이다. 여기에는 문학적 형식 및 서술방법과 객관적이고 거시적인 정치·사회 현실에 대한 기술이 자연스럽게 융합되어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갖게 되는 사적 느낌과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공적인 정치의 장으로 연결되고, 또 반대로 정치의 문제와 공공정책의 효과들이 사적 생활과 영역으로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잘 볼 수 있게 한다.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사적 생활과 공적 정치행위 사이의 경계들은 확연한 울타리로 둘러쳐지지 않고 열려있고 상호 접맥되는 연결고리들을 갖는다. 마치 바그너의 오페라가 무한선율의 기법, 즉 다른 오페라에서와 같이 화성과 멜로디



가 그 전환에 따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매듭 없이 연결되면서 지속되는 것과 같은 느낌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의 작품을 쉽게 소설처럼 읽으면서 정치의 본질 속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정치학자들은 딱딱한 방법으로 정치현상과 사태를 분석하고, 이를 개념화·이론화 하려고 시도하지만, 그는 이러한 수단을 빌리지 않고서도 보통의 말로, 평상시에 보통 사람들이 말하고 느끼는 보통의 언어를 통하여 자신의 관점과 비전을 전달하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다. 그렇다고 그가 이론을 모르는 것은 전혀 아니다. 보통의 말로 이해하기 쉽게 개진되는 관점들은 심화되고 논쟁되고 경험적으로 검증된 이론과 이념들을 그 배면에 깔고 있고 그 행간에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의 말들은 무거움과 깊이를 가지며 설득력과 감동을 준다. 흑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적, 내면적 의식의 형성과 필연적으로 연결된다. 그가 콜럼비아 대학생 시절 인종문제의 규모와 밀도가 비할 수 없이큰 뉴욕에서 깨닫기 시작한 것은 그의 표현을 따르자면 "거의 수학적 정확성과 같이"인종문제는 곧 계급적 문제라는 사실이었다. 흑인이라는 소수인종문제를 사회경제적계급문제의 맥락에서 보편화시켜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법은 그의 젊은 시절 이러한 깨달음으로부터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신이 보았던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보았다.

그러나 그가 자신이 대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1960년대 급진적 학생운동의 전통으로부터 이어지는 어떤 종류의 혁명적 방법의 추구는 결코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이들의 이념과 이론 틀이 경직되고 도식화되어 현실과 크게 괴리되어 있었다. 또한 사회변화를 위해 실천하지 않으면서도 도덕적 우월성을 자임하는 게토화된 운동 문화와 담론 구조는 생명력을 상실한 것이었다. 그가 선택한 길은 흑인거주공동체에서 그들을 돕고, 풀뿌리에서 그들을 조직하여 사회를 보다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조직유동가로서의 길을 선택한 것은 이러한 사고의 결론으로부터 왔다.

그는 『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거주공동체 조직운동가(community organizer)가 되기로 결심했다. …… 변화는 위로부터 오지 않을 것이다. 변화는 풀뿌리의 동원으로부터 온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고자하는 일이다. 나는 풀뿌리로부터 변화를 위해 흑인들을 조직하겠다." 시카고 지역개발 프로젝트의 운영자였던 제리 켈만의 안내로 조직운동가가 되기 위해 시카고 사우스사이드에 안착한 시기는 1985년으로 그의 나이 25세 때였다. 그가 사회운동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목적의식적으로 행위하는 이상 그의 활동무대를 시카고 사우스사이드로 결정한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다. 이미 그는 옥시덴탈 대학생 시절 LA보다 큰 사회인 뉴욕으로 가기를 희망했고, 할램과 브루클린의 흑인공동체는 그의 활동무대로서 예상보다 협소해서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시카고야말로 미국의 흑인공동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며 흑인정치의 본고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바마의 활동 지역은 이미 1950~60년대 사울 알린스키가 시카고흑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공동체운동의 전통을 확립한 지역이며, 20세기 초업톤 싱크레어의 소설 『정글』의 무대로서 유명해진 지역이기도 하다.

그가 3년 동안 이 지역에서 조직운동가로서 했던 일은 가난, 절망, 문맹, 실업, 범죄, 모기지불이행, 영업실패, 주택폐쇄, 산업침체가 일반화 · 일상화되어 있는 지역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상담하며, 이들을 모아 회의를 조직하고, 이들의 요구사항들을 시청직원들에게 청원하는 일이었다. 이를테면 주택의 석면을 제거해달라거나, 화장실 창문을 달고 난방시설을 설치해달라는 것이 그런 로비였다. 그가 이 지역조직운동을 통해 학습한 귀중한 내용은 알린스키의 활동교범이 가르치는 바대로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먼저 듣기"를 배우는 것이었다. 교회건물의 지하에 있는 작은 사무실에서 지역주민들과 매주 20~30회의 인터뷰를 하면서 그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일을 거듭하는 것이 그의 중심적인 과제였다. "결코 이상적이 되지 않을 것", "이상주의를 실용주의, 냉철한 현실주의와 결합하는 것"은 이 시기에 습득한 가장 귀중한 학습 내용이었다.

조직 활동이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이 스스로를 위한 공동 체의식을 갖도록 하는, 즉 자조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이었다. 듣는 태도에 대한 강조는 자신의 아이디어나 주장을 주민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자신의 생각을 밀쳐 두고 먼저 그들의 애로를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뒷날 그가 어떤 기득세력의 정치 적 자원을 배경으로 삼은 정치인들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정치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는 3년 동안 조직운동가로서 활동한 경험이 가져다준 사회저변에 속한 가난하고 힘없 는 주민들의 실생활에 대한 깊은 이해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정치인으로서 그가 가진 가장 귀중한 경험이자 자산이다. 대통령 당선 이후 언론들이 그를 평가하면서, 미국 역사상 도시중심의 퇴락과 빈곤문제에 대해 가장 넓은 지식을 갖는 대통령이 출현했 다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근거에서이다. 그가 처음 운동의 길을 선택한 까닭은. 어떤 다른 정치적 또는 사회적 욕망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의 향상, 흑인지역공동 체에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열정 때문이었다. 그러 나 이를 성취하기에 운동은 매우 비효과적인 방법이었다. 다른 한편 그에게 정치는 지 금까지 했던 운동보다 훨씬 더 대규모적이고. 효과가 큰 다른 이름의 운동처럼 이해되 었다. 이와 같은 생각을 만들어낸 그의 정치인 모델은 1983년 시카고 최초의 흑인시장 으로 당선된 해롤드 워싱턴이었다. 오바마가 하바드 로스쿨 진학을 결심한 데는 운동 으로부터 정치로 가는 중간다리를 밟고자 하는 지극히 목적의식적인 판단이 있었다.

그것은 분명 학문적 목적이라기보다 정치적 '지위재' 를 획득하려는 동기의 결과였다. 그가 가장 재능이 많은 학생들이 모여 치열하게 경쟁하는 로스쿨에서 뛰어난 리더십과 지적능력을 발휘하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시카고 시절 조직활동가로서 배운 그의 경험에서 기인하는 바 컸다. 풀어 말하면 다른 동료학생들의 지적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론적으로 습득된 지식이었던 반면 그는 현실을 먼저 접하고 이론을 습득함으로써 현실과 이론 간의 관계의 맥락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다룰 수 있었던 것이다. 이론과 현실간의 변증법, 이것은 뒷날 그를 비상한 정치인으로 만드는 지적능력이고 자원이다.

어쨌든 정치는 작은 운동이든, 큰 운동이든 운동이 아니며, 정치는 정치 자체의 논리를 갖는다. 즉 운동과 정치는 다른 논리, 다른 작동원리, 다른 덕목에 의해 움직인다는 말이다. 오바마의 뛰어남은 그의 활동영역과 행보가 운동으로부터 정치로 옮겨갈때 이 양자가 다른 행동원리와 덕목을 갖는다는 점을 빨리 파악했다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 아닐 수 없다. 정치에 대한 그의 이해는 정치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그의 말속에 잘 드러난다. 『담대함』에서 그는 말한

다. "정치는 과학이 아니다. 정치는 너무 가끔 어쩌다가 이성에 의존한다. 다원적 민주 주의에서도 같은 구분이 적용될 수 있다. 정치는 과학과 마찬가지로 공통의 현실에 기초한 공통의 목표를 갖는 각 개인들이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의존한다. 더욱이 정치는 (과학과 다르게) 타협 가능의 예술/기술을 포함한다."

이어서 그는 정치를 종교와 비교한다. "어떤 근본적인 수준에서 종교는 타협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것은 불가능을 주장한다. 만약 신이 말했다면 신자들은 그 결과가어떤 것이든 신의 명령을 따를 것이 요구된다. 비타협적 헌신에 한 사람의 삶을 의탁하는 것은 숭고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헌신에 기초해서 정책을 만드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정치는 가능을 만드는 것이고, 타협을 수단으로 하지 않고서는 가능은 만들어질 수 없다.

정치는 곧 타협이고, 설득이다. 정치는 때로는 이성의 원리와 규칙에 따라 움직이고 그와 병행할 수 있지만, 보다 더 많이 정치는 비이성적 영역에서 작동하는 인간행위이다.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충돌하면서 빚어지는 갈등과 폭력의 장에서 발생하는 인간행위이고, 그 속에서 의도한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설득과 타협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신념과 가치에 입각하여 도덕과 이성을 관철하려들 때, 그것은 설득과 타협을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정치가 아니며 그렇게 만들어진 정책은 위험한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정치에 대한 그의 관점이 가장 예리하게 표출되는 부분이 『담대함』에서 '정치'를 주제로 한 장(章)이 아니라 '신앙'을 주제로 한 장(章)에 있다는 것은 의미 있는 대목이다. 시카고 흑인사회에서 지역정치에 지대한 영향력을 갖는 사회조직은 교회이다. 교회가 중심이 된 사회운동과 정치는 운동과 신앙의 연장선상에서 흑인사회를 동원하고 조직하는 것이다.

민주당경선 시기에 터져 나온 제레미아 라이트 목사 사건은 오바마에게 가장 어려운 도전이고 심각한 위기였다. 그가 필라델피아에서 행한 「하나의 보다 완전한 연합」이라는 연설은 이 도전에 대한 응답을 주제로 한 것으로 그의 여러 명연설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하고 빛나는 것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연설은 양비론에 해당하는 구성을 갖는다.

한편으로 오바마는 미국 역사의 원죄로서 노예제, 인종차별, 빈부격차, 허영과 타락, 범죄, 중동전, 팔레스타인 문제 등, 미국사회의 어두움과 치부를 가리지 않고 비판하는, "폭언에 가까운 비판으로" 표현되는 라이트목사의 정치관에 대해 비판을 유보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윌리엄 포크너의 말을 인용하면서 "역사는 죽지않고 매장되지 않았으며, 오늘의 현실에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라이트

목사를 정면으로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사회에 대한 그의 비판을 옹호했다. 오바마가 그의 정치관을 신앙의 장에서 말한 까닭은 신앙의 관점에서의 정치관, 교회를 중심으로 한 도덕적 설교와 종교운동의 연장선상에서의 정치관에 대한 비판을 말하고자함이었다. 그의 말과 같이 신앙의 관점에서, 또한 이 경우 이성의 관점에서 흑인의 궁경과 인종차별은 미국역사의 원죄이며 동시에 살아있는 오늘의 현실이다. 이 점에서그것은 과학과 경험에 입각한 사실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 다른 수준에서 정치라는인간행위의 지평이 있다. 위에서 말한 정치에 대한 이해에 바탕할 때, 라이트목사나제시 잭슨과 같은 대부분의 흑인 정치지도자들의 관점, 즉 흑인 소수인종의 해방과 인권, 사회적 시민권의 실현을 통한 사회통합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흑인중심 정치의접근과 전략은, 그것이 진실이긴 하지만 오바마의 표현대로 불가능의 정치이다. 그것은 사회를 바꾸는 것은 고사하고 어떤 실제적 변화를 가져오는데 이렇다할 효과를 보이지 못하는 분노와 항의의 정치일 뿐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바마가 추구하는 정치는, 그것이 또 다른 현실이라할 가능을 추구하는 타협의 정치, 현실주의적 정치인 것이다.

오바마의 이성과 정치, 신앙과 정치에 대한 대비를 통해 우리는 그가 인간존재의 선과 악이 공존하는 양면 적 측면, 의지의 순수성과 무오류성이 빚어내는 위험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현실주의의 시각에서 낙관적인 자유주의신학을 비판했던 라이홀드 니버의 신학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니버는 신학자로서 사회적 문제가 이성과 도덕적 방법으로만 해결될 수 없다는 정치적 갈등의 본질을 이해했고, 자본주의 산업사회가 만들어내는 노동문제를 대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종교의 역할을 고민했던 기독교 사실/현실주의 신학자였다. 오바마와 라이트목사와의 관계는, 『담대함』에서 말하는 정치와 신앙 간의 차이를 대변하는 것으로, 정치와 운동의 노선을 둘러싼 양자간의 불안정한 협력과 균형, 그리고 그 파열을 보여준다. 라이트목사의 미국사회에 대한 유보 없는 비판들은 그동안 부자관계에 비유되던 오바마와의 인간적 관계를 배반하고, 그의 꿈을 망가뜨릴 수 있었던 한 급진적 목사의 돌출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오바마와 시카고 흑인사회 간에, 말하자면 그의 인종문제에 관한 보편적인 접근, 즉 인종문제를 미국사회의 보편적 문제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해결코자하는 접 근과 미국 사회문제를 흑인문제를 중심에 놓고 접근하는 흑인정치의 전통사이의 긴장 과 갈등을 표출하는 사건이다. 일종의 노선갈등인 것이다. 오바마가 시카고 사우스사이드의 조직운동가로 활동하던 시기 이래 라이트목사는 그의 정신적 지도자였고 대부였다. 그러나 이들이 끝까지 공존하기 어려웠던 것은 한 사람은 정치의 방법으로.

다른 한 사람은 신앙과 정신운동의 방법으로 흑인문제를 접근한데서 발생하는 메울수 없는 차이 때문이었다. 이점에서 니버의 신학은 라이트목사가 비운 자리를 대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 대선과정을 포함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 독자들을 위한 오바마에 대한 수많은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치철학을 형성했고 정치참여의 결단과 정치의 방법론을 발전시키는데 기반이 되었던 흑인사회에서의 조직운동가로서의 경험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 알려진 내용은 거의 없다. 그의 리더십형성과정에서 두 운동, 즉 이미 앞에서 언급했던 60년대의 민권운동과 50년대 중반부터 70년대에 이르는 지역공동체조직운동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가 민권운동을 통해 마틴 루터 킹 목사를 배웠다면, 지역공동체조직운동과 그에 기초한 정치를 통해 사울 알린스키와 해롤드 와싱턴을 배웠다. 여기에서 특히 지역공동체조직운동에 대해 부연하고자 한다. 도시내부주거지역(inner city neighborhood)이 지역공동체조직운동에 의해 조직되기시작한 것은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에 이르는 시기, 학자들이 이를 '거대한 부정의' 라고 불렀던 연방정부의 두 정책프로그램, 즉 도시재개발과 주를 가로지르는 전국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대응으로부터 형성되고 전개되었다.

그리하여 그 이후 이 지역공동체운동은 미국정치의 하부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1950년대부터 본격화되는 '도시내부' 문제는, 흑인들의 도시내부로의 집단적인 이주로 인해 백인중산층들이 교외로 대거 이주하면서 도시내부가 게토화되거나 공동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연방정부정책으로 추진된 도시재개발은, 이주가 강제되는 거주자들에 대한 보상비를 둘러싼 분쟁(20~30%정도의 손해)을 야기하고, 여기에 흑인-저소득층들이 저항하면서 조직화된 운동을 말한다. 이른바 알린스키형 거주지역조직운동은 결국 연방정부의 중앙정치와 민주당정당조직들이 흑인공동체의 요구들을 무시해온 것에 대한 대응으로 발전했다. 그리하여 운동은 정당조직을 우회하여 직접 정부에 대해 그들의 요구를 처리할 수 있는 채널을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운동의 방법을 통한 이 항의운동은 대결적 방법으로 인해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한계를 드러냈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투표자등록운동 투표하기운동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지역운동이 만들어낸 풀뿌리운동과 지방의 정당기간조직이 종류가 다르고 경쟁관계에 있다하더라도, 전자(前者)는 결국 민주당의 하부기반으로 기능하게 된 것이다.

1980년대에 들어와 시카고의 워싱턴, 뉴욕의 딘킨, LA의 브래들리를 포함하여 미국의 5대도시에서는 흑인유권자들이 비록 소수라 하더라도 조직적 투표를 통해 흑인

시장을 배출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요컨대 흑인들의 정치적 진출은 거주지역조 직운동에 힘입은 바 크다. 앞서 언급했듯이 1965년의 투표권법은 짐 크로우법에 의해 정치적 시민권을 갖지 못했던 흑인들에게 정치참여의 권리를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이 제도적 법적 전환이 곧바로 흑인들의 정치세력화를 가져왔던 것은 아니다. 거주지역조직운동은 흑인들을 하나의 투표 집단으로서 정치적으로 조직하는데 결정적인 매개역할을 수행했다. 이제 흑인들은 그들 자신의 대표를 정치무대에 진출시킴으로써미국정치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심적인 행위자의 하나로 등장했다. 오바마의 경력 자체가이 과정을 잘 보여준다. 그는 먼저 거주지역 조직운동가로서 활동했고, 하버드로스쿨을 졸업하고 다시 시카고로 돌아온 이후 처음 했던 일은 투표자등록운동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것이었다. 그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그는 일리노이 주 상원의원에 당선되어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것이다. 그가 연방 상원의원을 거쳐 대통령에당선된 것은 흑인들이 스스로를 정치에 대표시키는 단계의 최종점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미국의 거주지역운동과 한국의 운동을 비교하는 것은 흥미롭다. 두 나라에서 도시재개발의 내용은 많이 다르지만 성격은 유사하다. 그러나 그 결과는 완전히 상이하다. 흑인-저소득층들은 거주밀집지역을 형성하면서 거주자이익을 중심으로 운동을 조직하고 이를 매개로 표를 결집하여 그들 스스로를 정치적으로 조직하기시작했다. 이를 토대로 그들의 대표를 처음에는 지방정부, 뒤에는 연방정부 수준으로 대표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반면 한국의 도시재개발에서 원래의 거주자들은 여러 곳으로 산재되고, 새해벽두 용산재개발지역참사 사건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그들의 권익을 위해 스스로를 조직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원리와 배치된다.

정부는 일방적으로 개발정책을 추진하고 건설업자들과 부동산소유주의 이익에 부응하고 그것을 보장하는 한편, 거주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결사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으며 그들의 요구를 적나라한 국가폭력을 통해 분쇄한다. 이것은 민주주의정부라는 얼굴을 갖는 가히 약탈적 국가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오늘의 정부가 민주주의적이나 아니냐하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그것은 휴머니티에 반하는 모습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개발을 물신화하는 정부의 반인 륜적 정책으로부터 연유하는 것만은 아니다. 한국의 진보적 운동의 전통은 또한 운동이 정치와 결합하고 그것이 정치를 발전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는 전환에 있어 결코우호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치를 도덕의 실현으로 이해하고, 정치보다는

NUCLEACT GUISOCAL CANTE TARGOS AND THE MAN THE

운동을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동력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거주지역 운동과 오바마의 등장은 기득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조직을 뛰어넘거나 이를 대체하는 풀뿌리운동의 승리로 이해되기 쉽다. 그러나 미국의 거주지역조직운동에서의 풀뿌리 운동은 정당을 대체하는 조직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의 소리가 강하게 대표될 수 있는 새로운 정당하부조직의 건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운동은 자연히 정당하부조 직으로 기능하고 그것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운동의 정당조직으로의 편입이라 할 만한 현상이다. 오늘의 시점에서 진보의 의미란, 시민사회의 사적 영역에서 사회의 특수이익들이 스스로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정의할 수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조직될 수 있는 것, 그리고 선거경쟁에서 그러한 조직들이 표로서 결집되고 선거 이후에는 표의 결과에 따라 정치의 주요한 행위자가 되어 정책적 투입에 지분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발전시키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오바마의 등장과 지역조직운동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다.

#### 3. 오바마는 어떤 대통령이 될 것인가? 중간으로부터 통치하는 문제

대공황 이래 최대의 경제위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두 전쟁과 그로부터 비롯된 미국 헤게모니의 약화라는 국내외적인 정치적 난국에서 흑인이라는 치명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비상한 지적, 정치적 능력을 통해 대통령이 된 오바마는 과연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오바마가 어떤 대통령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오바마 정부의 출범 이후 미국 안팎으로부터 널리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최대의 정치적, 학문적 관심사가 아닐 수없다. 이 문제는 이념적 스펙트럼에서 오바마 정부는 어디에 놓여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둘러싼 해석과 전망의 문제로 볼 수 있다. 현재의 시점에서 미국의 정치분석가들은 오바마 정부의 이념적 좌표를 중간이라고 보는데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다. 이 중간이라는 좌표는 그의 통합적 정치비전에 의해 주도되는 초당적 정치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는 이제 막 출범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통치할 것 인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오바마 정부에 대한 전망적 분석은 오바마가 어떤 대통령이 될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이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할 것 인가 하는 당위적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사실상 구분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이다.

선거과정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많이 새 정부의 출범 이후에 정부의 이념적 성격과 정책방향에 대해 논쟁이 가열되는 것은 민주주의 정치의 필연적인 현상이다. 민주주의는 상호연속선상에 있지만 엄연히 구분되는 두 과정으로 구성된다. 선거경쟁을

통해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 때까지의 과정과 선거 이후 다수표를 획득한 정치집단/정 당이 정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과정이 그것이다. 이들 중 두 번째 과정에서 대통령 오바마가 어떤 이념적, 정책적 방향을 취해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야기되는 논쟁은 특 히 필연적이다. 무엇보다 그는 흑인사회 지역공동체에서 운동을 통하여 정치에 입문 했고 그의 정치적 출발점이었던 일리노이 주 상원의원과 연방 상원의원의 지역구 자 체가 이 흑인공동체를 포괄하고 있었다. 그의 정치적 비전과 사상, 그가 정치를 이해 하고 접근하는 방법. 그의 선거전략 모두를 관철하는 중심원리는 '밑으로부터'라는 말로 요약가능하다 그는 밑으로부터 흑인 노동자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서민대중 들의 일상적인 삶을 누구보다 깊이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정치의 방법으 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실제로 그는 일리노이 주 상원이나 연방 상원 시절 의 표결에서 가장 진보적으로 투표했고 그렇게 활동했으며 그것을 통해 업적을 쌓았 다. 대선 전략 또한 밑으로부터 풀뿌리조직을 통해 투표자를 동원하는 것이었고, 그렇 게 해서 성공했다. 그의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경제회복 정책패키지에서의 중심개념 은 그의 선거운동 경제자문가의 한 사람이었던 로버트 라이시의 말처럼 부시의 경제 이념을 계승한 맥케인의 '위로부터 아래로의 경제'에 대항하는 '아래로부터 위로의 경제' 였다

민주당경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꺾은 그의 승리는 무엇보다 워싱턴에 본부를 갖는 민주당기득집단의 대표에 대한 승리였기 때문에 극적이었다. 공화당 맥케인 후보에 대한 승리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모든 정치적 상식과 전문지식에 반하여 성공했고, 완벽하게 기득집단의 밖으로부터 왔다. 그러한 개인적, 정치적 배경을 갖는 정치인 오바마가 최소한 중도좌를 대표하는 인물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인물로서의 이러한 성격에 더하여, 오바마가 등장한 정치적 타이밍과 배경은 유례없는 경제적, 국제정치적 위기의 시기로, 이는 그에게 이 난국을 타개할 역할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역사에서 정치적 경쟁의 틀과 정당의 지배구도를 바꾸는 역사적인 유권자 재정렬들, 이를테면 1896년의 공화당지배체제, 1932년의 뉴딜민주당체제, 1980년의 레이건 공화당체제 등은 모두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위기와 맞물린 역사적인 정치변화였다. 오바마 정부의 등장을 경제위기와 맞물린 새로운 정당지배체제를 가져올 절호의기회로 이해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경제학자이자 언론인인 로버트 커트너의 용어를 빌어 쓰자면, 과연 그는 '전환적-진보적 대통령' (transformative, progressive president)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은 정당하게 제기될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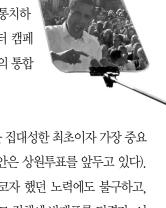
것이다. 그는 과연 링컨, 루즈벨트, 린든 존슨, 또는 보수파들이 추천할 만한 로널드 레이건과 같은 뛰어난 리더십을 갖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

얼마 전 나는 오바마를 주제로 한 한 소규모 강연을 가진 적이 있다. 한 참석자가 내 게 한국사회에서 이해되는 이념적 스펙트럼에서 오바마는 어디에 위치시킬 수 있냐는 질문을 했다. 당연히 제기될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고, 처음에는 쉬운 질문처럼 느껴 졌지만 막상 대답하려니 쉽지 않았다. 그는 좌인가? 중도인가? 앞에서 말했듯이 분명 그의 객관적 위상이 중도좌의 위치라 하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그가 선거운동에서 보여준 전략전술과 정책강령은 중도에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정치분석가들은 미국사회 투표자들의 이념적 분포를 대체로 보수 40%. 중간 40%. 자유주의적 진보 20%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유권자의 이념적 분포의 관점에서 오바마의 대선 승리는 자유주의(liberal) 진영을 기반으로 중도파로 부터 압도적 다수를 획득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맥케인의 패배는 공화당 우파의 전략가인 칼 로브의 조언을 따라, 공화당 핵심지지층인 보수적 유권자진영의 기반을 다지는데 집중함으로써 중도파의 지지를 잃은 결과이다. 유권자의 성향분석과 그에 기초한 선거전략에서 오바마의 승리와 맥케인의 패배라는 결과를 가져온 요인 은 경쟁진영의 각자가 그동안 '문화전쟁' (culture war)으로까지 표현되었던 이데올 로기적 갈등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를 안소니 다운 스의 정치학에서 유명한 이른바 '중위수 투표자 모델' 로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것은 투표자들을 극좌와 극우를 양극으로 하는 단일축에 놓고 이들의 분포를 도표화할 때, 중간을 차지 하는 중도성향의 투표자가 가장 많기 때문에 하나의 봉우리를 갖는 잘 균형 잡힌 산처럼 보이는 투표자 분포에서 정치인과 정당이 다수의 획득을 위해 중위수를 선점코자 하는 경쟁을 모델화한 것이다. 이 모델을 빌어 말하면 오바마는 투표자의 행태는 하나의 봉우리를 갖는 균형 잡힌 모습으로 표현되는 내용을 갖지만, 기존 정치권이 조장한 이데올로기적 양극화로 인해 중간이 가장 얕은 두 개의 봉우리를 갖는 허위적 분포가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는 현실로부터 괴리된 이데올로기적 대립에 기초한 전략을 세우지 않고, 투표자의 현실적 요구에 상응하는 중간을 공략하는데 집중했다. 그에 비해 칼 로 브-맥케인은 이데올로기로 표출된 정치적 갈등을 투표자의 실제 투표행태로 보고 그들이 다수라고 생각했던 보수파들을 공략하면서 중간에 있는 유권자들을 버렸다. 이런 구도에서 오바마는 경쟁자가 비워둔 공간을 쉽게 장악하는 행유을 가짐으로써 무

난히 선거에서 승리했던 것이다. 오바마의 캠페인은 대담하고 개혁적이었지만 동시에 온건함과 조심스러움으로 균형 잡힌 대안을 제시했다. 그것은 처음 자유주의 진보파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했던 것보다 온건한 중도지향적인 것이었다. 이라크전 종결과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등 국제정치영역에서의 정책은 언급하지 않더라도, 고용창출을 유발하는 에너지자립 프로그램과 인프라건설, (그 범위를 분명히 밝히진 않았지만) 의료보험개혁, 중산층을 지원하는 감세, 교육개선, 부시의 재무부가어설프게 기획한 구제금융정책에 대한 개선, 자동차산업지원 등은 강력한 개혁적 내용을 포함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요구했던 많은 정책제안들을 완화하거나 유보하기도했다. 의료보험개혁은 과거 개혁안에 비해 덜 개혁적이고, '피용자자유선택법인'의 완화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운동이 제시했던 개혁요구의 모든 것이 다 수용되지는 않을 전망이며, 방위비 역시 극적인 정도로 삭감코자 하지 않았다. 중도좌로부터 통치하기를 바라는 민주당내 개혁파들은 이에 실망한 나머지 정부가 중도적으로 통치하려 한다고 불만을 털어놓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오바마는 중간으로부터 캠페인하고 중간으로부터 통치하는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의 통합적 비전과 초당적 정치는 이러한 중간적 노선의 반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바마가 취한 초당적 정치행보는, 1월말 오바마 정부의 경제회복프로그램을 집대성한 최초이자 가장 중요한 8,190억불 경제회복패키지에 대한 하원 표결 때까지 계속 되고 있다(이 법안은 상원투표를 앞두고 있다). 오바마가 초당적이고 통합적인 비전으로 정부출범이후 공화당의원들을 설득코자 했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원표결의 결과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당 노선을 따라 그 정책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대해 혹자는 이제 '초당정치' (bipartisanship)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대선 이래 오바마가 보여주었던 초당적 통합의 정치가 작동하지 않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다. 여기서 정당 간 중심적 갈등라인은 감세대상과 폭을 중산층상위소득자로 확대하려는 공화당과 그렇지 않은 민주당간의 대립이다. 그것은 오바마 정부의 명운이 걸린 경제회복프로그램의 재원확보와 직결된 이슈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두 개의 전선에서 이라크전을 종결하고 하나의 전쟁에 집 중코자 하는 결정은 중동에서의 군사적 전략의 선택으로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 제회복정책의 재원조달이라는 측면에서도 하나의 명령이라 할 수 있다. 대선과정에서 그리고 정부초기에 이르기까지 오바마의 레토릭, 행동, 전략 등을 통하여 나타나는 정 당 노성을 뛰어넘는 통합적 비전은 선거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확대하

는데 기여한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의 통합적 비전과 경제개혁 프로그램의 내용은, 그의 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이념적 스펙트럼을 확대하고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는 정도의 함수라는 그의 정치에 대한 이해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결국 경제개혁의 범위는 경제회복패키지와 정치적 세력균형을 반영하는 것이고. 양자 간의 역동적인 상호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미국에서의 정치적 결정들은, 집행부 수장으로서 대통령의 일방적인 의지와 정책목 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집단들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구성체로서 정당들이 주체가 되는 의회에서 결정된다. 그리하여 그것이 실제의 최종적인 정책이 되어 집행될 수 있는 것은 정당을 매개로 한 대통령과 의회 간의 설득과 타협의 산물이다. 민주주의의 작동과정에서 의회 내의 다수결만이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까닭은 야당이 아무리 의회 내의 소수라 하더라도 시민투표자들의 일반여론이 제도화된 결정구조 밖에서 끊임없이 대통령과 정당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며, 그것은 2년 후 중간 선거를 통하여 제도화된 결정과정내로 투영되기 때문이다. 『담대함』에서 오바마가 "개혁을 위해서는 단순다수로는 충분치 않다"라고 말한 것은, 개혁의 범위가 큰 것만큼 의회 내 다수뿐만 아니라, 누가 더 공익을 대변하고 정의를 말하는가 하는 도덕적 지도력을 통해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는 능력, 즉 헤게모니를 필요로 한다는 정치적 힘의 논리를 의미한다.

오바마의 통합적 비전과 초당적 정치가 하원의 정당노선에 따른 투표결과로 무효가된 것은 전혀 아니다. 공화당의 반대가 결코 공익에 부응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만들고, 그 인식이 지배적이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오바마 프로그램의 성패를 좌우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오바마의 리더십은 의회에서 반대에 봉착할 때 의회를 우회하여 여론에 호소하고 여론의 힘으로 의회를 압박하는 정치 갈등의 통합자로서 나타날 수 있다. 집권 이후 오바마가 연방 상하원의 공화당 의원들과 빈번한 대화를 가지고 협력과 지지를 호소하는 초당적 행위는 선거가 끝난 이후 시기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자신의 정책프로그램, 개혁 법안을 실제의 정책으로 만드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자 과정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것은 적과의 협력과 타협이 정치적 가능의 기술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말하다.

우리는 지금 미국에서 전개되는 정치를 통하여 '비상권력' (emergency power)을 갖는 독재를 허용하지 않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치가 작동하는 한 교과서적 과정을 볼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미국 정치는 국가적 경제위기 속에서 민주주의는 어떻게 작동하며, 사회집단들의 이익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서

공익을 어떻게 정의하고 그에 대한 합의를 어떻게 확대하고, 그에 부응하는 집단(합) 적 결정을 어떻게 만들어서 위기를 극복하려 하는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가 아 닐 수 없다. 독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전간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나치를 불러 들인 것은 비상권력의 제도였다. 바이마르공화국 시기 독일의 헌법학자들이 생각했듯 이, 국가의 위기적 상황에서 비상권력이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만약 통 치자가 공익에 봉사하고 순수하게 이성적으로 행위할 수 있다면, 그러한 권력은 많은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력은 대개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독일에서도 그것은 통치자에 의해 체제를 붕괴시키는 힘으로 활용되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비용은 때로는 비상권력이 허용된 경우보다 더 클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그러한 비용 관념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와 이념을 갖는 체제이다. 이 점에서 정치는 이성에 의존하는 체제가 아니다. 또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효율성에 의존하는 체제도 아니다. 그것은 갈등하는 사회적제 세력들이 평화적 방법으로 정치권력을 분점하고 그에 따라 사회경제적 이익을 분배하는 정치체제를 의미한다. 오바마는 『담대함』에서 민주주의 하에서의 이 정치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있다.

중간으로부터 통치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오바마 정부를 구성하는 인적구성을 통해 잘 드러난다. 그것은 동질적 이념이나 오바마 개인의 친밀한 사적연줄의 폐쇄적 결집 체가 아니라, 당 노선과 이념적 아치를 가로질러 완전히 열린 능력중심의 인사구성이다. 그것의 기준은 오바마를 리더로 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일을 성사시키는 능력본위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그가 중간의 입지에서 담대함과 조심스러움을 적절



하게 배합하면서 통치하는 것은, 클린턴정부의 경험이 주는 교훈의 결과인 것처럼 보인다. 집권초기 클린턴은 의료보험체계의 획기적 개혁을 포함하는 개혁적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미국의 정치적 지형이 수용하기 어려운 클린턴정부의 지나친 과욕은 다음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의회다수 상실과 아울러 뉴트 깅그리치를 필두로 한 뉴라이트의 등장과 공화당 다수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후 클린턴정부의 나머지 기간에는 레이건의 이념적 헤게모니를 이행하는 역할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의 세력변화는 시계추의 진자(振子) 움직임에 비유될 수 있다. 레이건-대처가 구현했던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독트린이 극에 이르러 이제 그 반대방향을 향하는 오바마정부를 맞게 되었다. 우리는 지금 레이건과 대처가 집권 시기 취했던 여러 정책들의 패키지들을 신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적 개념을 통해 말하고 그렇게 추상화하여 이해한다. 그러나 실제로 신자유주의는 처음부터 하나의 일관되고 정연한 이론의 체계를 가지고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1979년의 대처정부와 1980년의 레이건정부는 각각 인플레 억제의 통화정책과 탈규제정책을 시발로 하여 다음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강화된 정치적 기반을 통해 이를 여러 정책영역으로 확대하면서 이른바 신자유주의 독트린을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자유주의 좌파의 대표적 이론가인 폴 크루그만은, 자본주의경제체제에 대한 통제의 상실에서 경제위기의 원인을 찾고 이를 교정했던 케인즈의 해법을 강조하면서 오바마가 케인즈의 방법으로 현재의 경제문제에 접근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

경제위기의 해소를 위해 은행의 일시적 국유화도 불사하는 과감한 금융정책을 펼 것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것은 틀린 얘기는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이론의 체계로서나 현실 경제정책의 대안으로서 케인스주의가 어렵지 않게 수용된 데는 자본주의경제체 제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사회주의체제가 존재했다는 요인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또 한 라이시가 말하듯이 케인스주의를 가능케 한 기본가정들은 오늘날 현대 자본주의경 제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오바마는 지금까지 그러해왔듯이 점진적이고 부드럽고 그러면서도 확고하게 그의 정책들을 밀고 나갈것으로 예상된다. 그것에 대해 커트너가 말하듯이 한편으로는 급 진적 개혁자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통합적 지도자로서 동시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 중간으로부터 중도좌를 향하여 점진적으로 이동하는 방향을 기대해볼 수도 있다. 물론 이는 내용에서가 아니라 실천적 방법의 측면에서 신자유주의를 확립했던 레이건과 대처가 취했던 방법이기도 하다. 오바마는 「담대함」의 기회를 말하는 장(場)에서 케인스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경제관으로 문제를 말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때로는 공동체적 가치의 중요성, 때로는 국가주의적인 해밀톤주의의 중요성을 말하지만, 그는 이념

혹은 이데올로기로서 케인스주의, 국가주의, 공동체주의를 말하지 않는다. 우리가 『담대함』을 통하여 읽을수 있고, 또한 그의 정치적 행동을 통해 관찰할수 있는 것은, 그가 이데올로기, 이념, 담론이란 필요 할때도 있겠지만 현실을 추상화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더많이 현실을 소외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이해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그는 추상화된 이념, 담론을 말하지 않는다. 그는 이념적 문제, 이념화된 현실을 직면할 때면언제나 원래의 현실로 돌아가서 말하는 습성을 갖고있다. 그리고 그는 진정한 진보는 강한 이념적 언사,레토릭의 진보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 사회적 약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실생활을 현실에서 얼마나 개선할 수 있는가,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며,그 정책을 실제의 법안으로 만들 때 어떤 구체적인 효과를 가질 수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선거운동과정에서 경제정책강령으로 제시한 '밑으로부터의 경제' 는 그러한 관점을 집약한 말이다. 이러한 관점은 그가 1960년대를 이해하는 방법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는 미국의 운동이 제기했던 과제는 정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좋은 정치가 이를 실천에 옮기지 못했기 때문에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일찍이 베버는,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정치인으로서 가져야할 의무, 덕목에 대해 말하면서 그 자신이 정치를 해야할 이유로서 '목적의지의 윤리'와 함께 그 자신의 정치적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책임윤리'를 강조했다. 오바마는 그 누구보다도 목적의지의 윤리만이 아니라 책임윤리의 중요성을 실천하고 있는 지도자의 모델로 이해된다.

#### 참고한 문헌

- Bartels, Rarry M. Unequal Democracy: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Gilded 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
- Drew, Elizabeth. "The Truth about the Election", The New York Review of Books, Vol. LV, No. 20 (Dec. 18, 2008).
- Fiorina, Morris P. Culture War?: The Myth of A Polarized America, 2nd ed. (Pearson/Longman, 2006).
- Gelman, Andrew. Red State, Blue State, Rich State, Poor State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
- Judd, Dennis R, and Todd Swanstrom.
   City Politics: The Political Economy of Urban America, 5th ed. (Pearson/Longman, 2006).
- Kuttner, Robert. "Post-Partisnaship, R.I.P."
   The American Prospect (Jan. 30, 2009).
- \_\_\_\_\_\_. Obama's Challenge (Chelsea Green, 2008)
- Lowi, Theodore and Benjamin Ginsberg, American Government, 5th ed. (W.W. Norton, 1998).
- Mendell, David. Obama: From Promise to Power (Harper-Collins, 2007).
- Obama, Barack. Dreams from My Father (Random House, Inc., 1995/2004).
- \_\_\_\_\_, The Audacity of Hope (Vintage Books, 2006/2008).
- \_\_\_\_\_\_\_, President Barack Obama: Change Has Come To America. His Words – His Promises (CreateSpace, 2008).
- Reich, Robert B. "The Real Economic Choice", The American Prospect (Aug. 18, 2008).
- Tomasky, Michael. "Unequal Democracy: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Gilded Age by Larry Bartels and Red, Blue, and Purple America: The Future of Election Demographics edited by Ruy Teixeira", The New York Review of Books, Vol. LV, No. 20 (Dec. 18, 2008).
- 그 외 Financial Time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기사들

# 경찰권 불행사로 인한 국가배상청구 인용판결

# 서울고등법원 - 제7민사부

# 판 결

사	건	2007나77738 손해배상(기)
원고, 형	소인	1. 신종〇
		2. 윤순〇
		3. 신택○
		4. 신수〇
		5. 신혜〇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민병덕
=I= =I=	-	rii-lai ¬

#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김경한

2006가한93071 판결

소송수행자 하삼종, 김○진, 정○기

####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5. 선고

변 론 종 결 2008. 8. 20.

**판 결 선 고** 2008. 10. 29.

# 주 문

-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 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 을 취소한다.
- 2. 피고는 원고 신종○, 윤순○에게 각 1,000만원, 원고 신택○, 신수○, 신혜경에게 각 2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11.부터 2008.
   10.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3. 워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4.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신종〇, 윤순〇에게 각 1,750만원, 원고 신택○, 신수○, 신혜○에게 각 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망 신선○의 상속인으로서의 청구 중 재산상 손해부분을 취하하고, 망 신선○의 위자료 청구권에 대한 상속분을 포함하여 원고 신종○, 윤순○의 청구금액을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 이유

#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3호증, 갑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강○옥의증언, 증인 김○진, 정○기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수 있다.

#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망 신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5. 2. 28. 가석방(2005. 10. 13. 형기종료일)된 박○희에게 살해당한 피해자이고, 원고 신종○, 윤순○는 신선○의 부모이며, 원고 신택○은 신선○의 오빠, 원고 신혜○, 신수○은 신선○의 언니들이다.

(2) 김○진, 정○기는 박○희가 신선○을 살해할 당시 강○옥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피고 소속 시흥경찰서 모지구대에 근무한 경찰관들이다.

# 나. 이 사건 사고 발행 전 가해자 박 ○희에 대한 긴급체포 등

(1) 신선○은 2006, 5.경 시흥시 모처에 있는 모 직업전문학교에서 박○희를 만나 사귀다가 2006. 8.말경 박○희와 교제를 그만두고 헤어지려고 하였 으나, 박○희는 신선○을 찾아와 계속해서 사귀자 고 졸랐다. 그러자 신선○은 2006, 9, 2, 모지구대에 박○희가 신선○을 강간하고 협박한다는 이유로 신 변보호를 요청하고, 박○희를 강간 등 혐의로 고소 하였다.

(2) 이에 모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2006. 9. 2. 박
○희가 2006. 7. 15.경부터 2006. 8. 29.경까지 신선
○을 수차례 강간하고, 2006. 9. 1. 신선○을 강제
로 차에 태워 전북 무주의 야산에 데리고 가서 같이
죽자며 감금하고 협박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박○희
를 긴급체포하였다.

(3) 위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은 박○희가 신선○ 과 교제하는 사이라고 하면서 강간 등 혐의사실을 부 인하고, 신선○이 박○희로부터 200만원을 빌린 사 실도 있는 점 등을 이유로 2006. 9. 2. 박○희를 석 방하였다. 그 후 신선○은 2006. 9. 4. 박○희가 다 시는 신선○앞에 나타나지 않고, 전화도 하지 않으 며, 신선○에게 빌려주었던 200만원을 포기하는 등 의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하였다.

# 다. 박 ()희의 신선 ()에 대한 강간 및 살해 범행

(1) 박◇희는 2006. 9. 10. 저녁 무렵 꽃다발 1개 와 수면제 등의 약물을 사서 소지한 후 2006. 9. 11. 08:15경 시흥시 모처 소재 다세대 주택(이하 '이 사 건 다세대 주택'이라 한다) 앞에서 직업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서던 신선()에게 잠시 집에 들어가 이 야기를 하자면서 신선()의 집(3층 301호)으로 들어 갔다. 박○희는 신선○에게 꽃다발을 주고 가지고 있던 약을 보여주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약까지 사왔 다며 다시 만나달라고 간청하였으나 신선○은 박○ 희를 만나기 싫다며 2006. 9. 11. 08:27경 직업학교 선배언니인 이()숙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려 하였다.

(2) 이에 박○희는 301호 앞 계단에서 집 밖으로 나가던 신선○을 붙잡아 강제로 집안으로 끌고 들어 간 후 신선○에게 수면제 등을 먹이고. 방안에 있던 청색테이프로 신선○의 입을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신선○을 1회 강간하였다. 박○희는 강간 후 신선○에게 다시 계속 만나달라고 애원했으나 거절 당하자 주방에서 부엌칼을 가지고 와 신선○의 목부 위 등을 9군데 찔렀고, 신선○은 그 자리에서 전경 부자상 등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신선○의 선배 언니인 이○숙의 휴대전화내역에 신선○으로 부터의 전화일시가 '2006. 9. 11. 08:47' 로 되어 있 는 점, 박○희가 2006. 9. 11. 09:20경 여동생인 박 관 정○민은 같은 날 08:32:33경 모지구대 소속 경

○ 정에게 '엄마, 아빠 잘 부탁한다' 고 전화한 점 등 에 비추어. 신선○의 사망시간은 08:47경부터 09:20경 사이로 추정된다).

(3) 박○희는 신선○을 살해한 후 부엌칼로 배를 찔러 자살을 기도하였고. 301호에 있는 거울에 '차 는 한빛교회 옆에 주차되었어요. 죄송해요'라는 메 모를 남겼으며. 위와 같이 여동생인 박○정에게 전 화를 하고. 외삼촌인 허○홍에게도 죄송하다는 내용 의 문자메시지를 남겼다.

# 라. 강 ○옥의 신고와 112신고센터의 지령

(1) 위 301호 맞은편에 있는 304호에 거주하던 강 ○옥은 계단에서 사람이 굴러떨어지는 듯한 소리와 신선○의 '언니 살려줘' 라는 소리를 듣고 출입문 구 멍으로 계단을 보았고. 박○희가 신선○의 상체를 잡아끌고 301호로 끌고 들어가는 상황을 목격하였 다. 그런데 박○희가 신선○을 방안으로 끌고 들어 간 뒤 아무런 싸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자 강○옥은 상황을 목격한 후 수분이 경과한 2006. 9. 11. 08:32 경 112신고센터에 '시흥시 모처 301호예요. 갑자기 여자가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남자가 계단에서부 터 여자를 때리면서 끌고 들어갔거든요' 라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2) 강○옥의 신고를 접수한 112신고센터의 경찰

찰공무원(순경) ○ 현에게 '남자가 여자를 때리면서 위 301호로 끌고 들어갔다'는 신고가 들어왔으니 출 동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 마 모지구대 소속 경찰 김()진 정()기의 현장 출동과 현장에서의 조치 내용 등

(1) 모지구대에서 순찰 교대를 위하여 대기 중이 던 김○진. 정○기(이하 '김○진 등' 이라 한다)는 정○철로부터 사고장소의 주소와 신고자의 전화번 호 및 '남자가 여자 폭행' 이라는 내용이 적힌 메모지 를 받고 순찰차로 신고된 사고장소에 같은 날 08:35:54경(출동 지령을 받고 약 3분 11초 경과 후) 도착하였다.

(2) 이 ○ 숙은 같은 날 08:27경 신선 ○ 과의 전화 통화가 중간에 끊겨 이상한 생각이 들어 10분 후 이 사건 다세대 주택으로 찾아갔고. 김○진 등이 이 사 건 다세대주택에 도착할 무렵 신선○이 거주하는 주 택호수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1층 입구에서 직업학 교 사람들과 신선()의 주택호수를 알기 위해 통화하 다가. 강○옥의 신고로 출동한 김○진 등에게 302 호에서 폭행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니 도와달라고 말 하였다.

(3) 김○진 등은 302호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거 주자를 확인하였는데. 302호 거주자인 고○정은 자 신이 여자와 싸운 사실이 없고, 방금 요란한 소리에

잠이 깨었으나 금방 조용해졌으며, 평소 싸움이 많 은 동네라 그냥 싸움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몇호인 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였다.

(4) 이에 김○진 등은 301호의 초인종을 눌렀으 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고 이 숙에게 신고자인지 확인하였다. 이○숙은 신고자가 아니고 신선○과 같은 직업학교에 다니는 선배언니인데 전화통화 도 중 갑자기 '아' 하면서 비명소리가 나고 전화가 끊겼 다고. 같은 직업학교에 다니는 박○희가 며칠 전 폭 행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합의하고 나갔다면서 신선 ○을 폭행하고 있는 사람이 박○희일지도 모른다는 말을 하였다

(5) 그 후 김○진 등은 신고자인 강○옥에게 전 화하여 신고경위를 물어보았는데, 강()옥은 계단 복 도쪽에서 나는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출입문 구멍을 통해 살펴보니 남자가 여자를 때리면서 팔을 끌고 301호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신고하였다고 대답하였 고, 김○진 등이 강○옥에게 자세한 설명 등의 협조 를 부탁하며 몇 호에 거주하는지 물어보았으나, 강 ○옥은 신분이 노출되어 남의 일에 개입되는 것이 싫다며 협조요청을 거절하였다. 김○진 등은 강○ 옥과 전화통화 후 계속해서 301호의 초인종을 눌렀 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들리지 않자 다시 강○옥에게 언제 싸우는 것을 보고 신고하였냐고 물어보았고. 강○옥은 경찰이 출동하기 10분 정도쯤 전에 남자가 여자를 끌고 들어갔고, 곧바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말을 듣고 신고하게 되었다고 대답하였다.

(6) 김○진 등은 같은 날 08:54경 다세대주택의 관리회사의 관리인에게 전화하여 301호 거주자가 신 선() 임을 확인을 한 후 계속해서 301호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으나 인기척이 없었고, 내부 의 동태를 살피고자 10분 남짓 301호 현관문 앞에 있 으면서 귀를 대어보기도 하였지만 내부 인기척을 확 인할 수 없었다. 당시 상황을 지켜보던 이○숙은 강 제로 문을 열어 확인하자며 문을 열 것을 요청하였으 나 김()진 등은 아무런 범죄의 정황이 없고 안에 누가 있는지조차 알 수 없으며, 어떤 가족이나 친인 척의 동의도 없는 상황에서 강제로 문을 열 수는 없 다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그리고 김○진 등은 같은 날 09:05경 관리인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경찰관인 데 내부를 확인해 달라며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관 리인은 수색영장을 가지고 오던지 열쇠수리공을 불 러서 문을 열라고 하면서 협조를 거부하였다.

(7) 김○진은 건너편 건물 3층 계단에서 301호의 내부를 베란다 창문을 통해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빨 래가 걸려 있어 확인할 수 없었고. 정○기는 옆 건물 의 3층 계단에서 301호의 내부를 창문을 통해 확인 하려고 하였으나 기왓장에 시야가 가려 확인할 수 없 었다.

(8) 또한 김○진 등은 사고현장을 찾아온 직업학 친구에게 전화하여 친구로부터 경찰에 신고하라는 🔝 교 사람들(3명)으로부터 301호의 문을 열어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현재 상황이 마음대로 문 을 열고 들어갈 수 없다면서 이를 거부하였고. 혹시 내부인이 경찰관을 의식하여 문을 열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 순찰차를 이동 주차한 후 계속해서 301호의 내부 상황을 살폈으나 아무런 동태를 확인할 수 없었 으며. 같은 날 09:36경 신고자인 강○옥에게 주변에 서 순찰을 하고 있을 것이니 다른 특이한 사항이 발 견되거나 소리가 들리면 신고를 부탁하고 현장을 떠

> (9) 한편 김○진 등은 사고현장에 있으면서 신선 ○의 휴대폰으로 직접 전화를 시도하거나. 모지구대 등에 연락하여 박()회가 조사받은 폭행 사건 등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지는 아니하였다.

#### 바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상황 등

(1) 박○희의 외삼촌 허○홍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아침 박() 희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걸려왔다는 말을 듣고 박○희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 고 여동생 박○정에게도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다는 말을 듣고 박() 정과 함께 이 사건 다세대 주택으로 찾아 갔다

(2) 허○홍은 이 사건 다세대 주택 부근에 있던 직업학교 사람들로부터 경찰이 출동하였다가 문이 잠겨 있어 확인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 은 날 10:55경 112신고센터와 119신고센터에 자살기 도자가 있다고 신고를 하였다. 그 후 시흥경찰서 119 구급대는 같은 날 10:59경 현장에 도착하여 소방차 량에 탑재된 2단 복식사다리를 이용하여 301호 베란 다 창문을 통해 같은 날 11:08경 실내로 진입하였고. 이미 사망한 신선○과 자해를 하고 신선○과 나란 히 침대에 누워있던 박○희를 발견하여 박○희를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3) 한편 경찰관들이 운영하는 112 신고센터와 소 방관들이 운영하는 119 구급센터는 상황에 따라 무 전으로 협조를 구할 수 있고, 일방의 신고를 다른 쪽 에서 당연히 알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 사 상속관계

망 신선○의 부모인 원고 신종○. 윤순○는 망 인의 재산을 1/2 지분 비율로 상속하였다.

# 아.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주요 내용

경찰권 행사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경 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집법' 이라 한다)의 주요 내 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 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 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조 제1, 2항).

- (2) 경찰관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업무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 (3)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 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 ·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 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 위를 제지할 수 있다(제6조 제1항).
- (4) 경찰관은 제6조 제1항 등에 규정한 위험한 사 태가 발생하여 인명 ·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 기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타인의 토지 · 건물 또 는 선차 내에 출입할 수 있다(제7조 제1항).

#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진 등은 강○옥의 최초 신고 내용. 이○ 숙의 현장에서의 진술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출동 당시 박○희가 신선○을 강간 또는 살해하는 등 신선○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위 301호에 강제로 진입하는 등 그 범행을 저지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적절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신선○에 대한 강간 및 살인이라는 결과가 초래되었는바, 피고는 소속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경찰권 불행사로인하여 망 신선○및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한 김○진 등은 구체적 상황하에서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였고, 김○진 등이 당시 박○희가 신선○을 강간 또는 살해할 것을 예상할 수도 없었으므로, 위 301호에 강제진입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김○진 등의 부작위가 직무상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 나. 이 사건의 쟁점

(1) 경찰권 불행사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요건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며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이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하에서 그 인적·물 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의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 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 ① 경찰관에게 그와 같은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 적 ② 경찰관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 하여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 의 심각성 내지 그 절박한 정도 ③ 경찰관이 그와 같 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 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 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 어 위법하게 되고 그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 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국가배상책임의 요 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009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2132 판결 등 참조)

(2)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피고 소속 경찰공무원 김○진 등이 이 사건 사고발생을 막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지 여부이다.

#### 3. 판단

#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1) 앞에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 및 경찰권 행사에 대한 관련 법령의 내용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현장에 출동한 피고 소속 경찰관인 김○진 등의 경찰권불행사는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어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2) 즉. ① 경찰권의 행사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 지라는 추상적 목적을 근거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 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용납될 수 없음은 물론이 나. 경집법에서는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업무를 경찰의 가장 주요한 업무로 정하고 있고, 가해자에 대한 사적 제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국가기관이 수 사권과 공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우리 법제에도 이래 에서 현실적으로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흉악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국민이 기대할 수 있는 수단은 오로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업무를 1차적으로 담당 하고 있는 경찰권의 적절한 행사일 수밖에 없는 점 ② 강()옥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피해자 신선()이 '살려달라' 고 소리를 지르는데도 박○희가 신선○ 을 계단에서부터 때리고 올라간 것을 목격하였고. 위와 같은 구체적 위해상황을 112 신고센터에 신고 하였던 점. ③ 이○숙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김○진

등에게 신선○과의 전화 도중 '아' 하는 비명소리가 나면서 전화가 끊겼고. 박○희가 사고 며칠 전 경찰 서에서 폭행 사건으로 수사받은 적이 있다는 말을 하 면서 신선()이 박()희로부터 폭행당하고 있는 것 같으니 301호 내부로 진입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음에 도, 김○진 등은 신선○에게 직접 전화연결을 시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선()의 상태를 확인하는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④ 비록 김○진 등이 박◇ 희가 신선○을 살해하는 범행을 저지를 것까지는 예 상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경찰관의 입장 에서 볼 때 위와 같은 강○옥의 신고내용. 이○숙의 현장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적어도 신선○에 대한 성폭행 범행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⑤ 또한 김〇 진 등은 그들이 소속된 모지구대에 일정 기간 긴급체 포서 사본 등이 보존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고 보이므로. 가해자로 의심된 박○희가 폭행 혐의 등으로 수사받은 사실을 들었다면 전화나 무선으로 그 혐의 내용 등을 확인함으로써 가해자의 범죄행위 를 예측하여 이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 다고 할 것인데도 이와 관련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112 신고내용이 '칼을 들고 싸우고 있다' 는 등 구체적으로 신체의 위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우발적이고 경미한 사안인 경우가 많으리 라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출동 경찰관은 피해자의 안전을 확인하 거나. 상황이 완전 종료된 경우에만 사건을 종결하 였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⑥ 그리고 김○진 등은 301호 문을 두드리고 관리인에게 문을 열어달라는 협조 전화를 하기는 하였으나, 수색영장을 가지고 오라는 관리인의 협조 거부에 대하여 당시의 상황이 나 경집법상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 할 권한이 있음을 고지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하 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⑦ 김○진 등이 112 신 고센터의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하기까지 걸린 시 간은 3분 정도이고. 박○희가 자살을 기도하고 있다 는 외삼촌 허○홍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 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11분 정도이 며, 강○옥의 신고시간인 ()8:32경부터 신선○의 사 망시간으로 추정되는 08:47경 이후와의 시간 간격 등에 비추어, 만일 김()진 등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 여 301 내부에 강제진입하는 조치를 곧바로 취하였 다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막을 수도 있었던 것으 로 보이는 점 ⑧ 사생활의 비밀이나 주거의 자유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기는 하지만. 인간의 생명은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 재의 근원이고, 이러한 생명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 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 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 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 권 중의 기본권이며, 인간의 신체의 안전은 이러한 생명권의 전제이므로 경찰관으로서는 국민의 생명. 신체라는 기본권적 법익이 헌법질서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비중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경집법상 보장된 타인의 주거에의 강제집입 조치 등을 취할 것인지 여 부를 결정할 위무, 즉 경찰권 행사에 있어 적절한 법 익형량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소속 경찰관인 김○진 등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도착한 이후 위에서 본 조치 이외에, 피해자 신선○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 어도 신선○의 안전을 확인하고. 만일 신선○의 안 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곧바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 의 관리인에게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지하여 그 협조를 구하거나 인 근의 열쇠수리업자나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이 사 건 사고장소의 내부 상황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진입을 시도하는 등의 적절한 다른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 고 인정되고. 따라서 이러한 김○진 등의 경찰권 불 행사는 경찰관에게 요구되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 나. 손해배상의 범위

위와 같은 피고 소속 경찰관들의 위법한 직무집 행행위로 인하여 신선()이 강간 및 살해까지 당하게 됨에 따라 망 신선○과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상당 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 고. 신선()이 이 사건 사고로 강간 및 사망에까지 이 르게 된 점. 신선○이 이 사건 사고 며칠 전에 다시 는 찾아오지 않을 것 등을 조건으로 박○희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고 당일 박()희 를 집에 들어오게 하였던 점, 이 사건 다세대 주택의 구조 및 강○옥이 신선○의 '살려줘'는 소리를 듣고 신고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신선○이 박○희로 부터의 위해를 감지하고 비명을 지르는 등 내부의 상 황을 밖으로 알렸다면 이 사건 사고와 같은 비극적인 결과를 막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신선○의 연 령, 신선○과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면. 위자료의 수액 은 망 신선○에 대하여는 1.000만원, 신선○의 부모 인 원고 신종○. 윤순○에 대하여는 각 500만원. 신 선○의 오빠. 언니들인 원고 신택○. 신수○. 신혜 ○에 대하여는 각 2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위자료로 원고 신종○, 윤순○에 게 각 1,000만원(500만원(망 신선○의 위자료 상속 분, 1,000만원 × 1/2) + 500만원(위 원고들의 위자료), 원고 신택○, 신수○, 신혜○에게 각 2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9.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8. 10. 2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원고들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각 금원의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완주 판사 사봉관 판사 김선일

# 특별연재 ] MB악법 릴레이만화



MB약탭 빠르브기 릴레이 키륜. -강풀-

여기 한 남자가 있다.



이 남자는

집회현장 근처에서 마스크 쓰고 있다가 경찰에 체포 되었다.

이런 일이

있을수도 있는 것이 바로 (복면금지법)이다.



물론, 위의 사례는 SF이며,환타지이며,초현실적 대왕오바질이다.

자, 그렇다면, 이번 집시법개정안에 대해서 몇가지 더 들여다보자.

- 4파이프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거나 신체에 해를 꺼칠 수 있는 도구를 휴대 및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보관·운반하는 자까지 처벌
- '경찰차, 소방차, 구금차 등 비상차량의 통령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불여 제한할 수 있음
- 관합경찰관서장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만 하면 영상촬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
-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벌금형의 상한액수를 증액하고 과료를 삭제

언뜻 보기에는 꽤나 그럴듯해 보인다만..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들여다 보자.

- 4파이프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도구를 휴대 및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보관·운반하는 자까지 처벌
-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비상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불여 제한할 수 있음

4)번을 보자.

이미 정부여당은 (배후) 운운하며 집회참가자를 범죄자 취급하고 단순참가자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기소하고 있다.

현행 집시법의 경우도 이러한데, 앞으로는 집회를 했다하면, 더 무거운 벌금으로 처벌하겠다는

결국, 서민(부자거나)들은 벌금이 무서워서 집회에도 참가하기 힘들게 만드는 것이다.



게다가. (소음제한)이란 것도 있다. 집회한답시고 모여서 소리도 높일 수 없고, 기껏해야 웅성거리는









# 특별연재 ] MB악법 릴레이만화

####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촛불이다.

정부여당은 얼마나 많이 촛불에 시달렸는가.



정부 여당 입장에선, 야당이 워낙에 지 할일을 못하고 있으니 "괜찮은가부다, 우리 세상이 왔나부다." 했는데 이건 국민들이 자꾸 들고 일어서니 아주 죽을 맛이었을 것이다.



시원하게 정권도 잡았겠다, 야당들은 의석수에서 상대도 안되겠다, MB정권과 한나라당에게 바로 눈엣 가시 같은게 바로 이 촛불집회인 것이다.



어쩌면, 촛불에 열라 데인 정부여당이 "집회의 자유" 를 원천봉쇄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분명히 어쩌면이라고 했다.... 미네르바... ㄷㄷㄷ...)

다가오는 2월에 일명 MB악법이 상정된다.



이게 또 웃기는게, 국민들의 눈과 귀와 입인 언론까지 틀어막으려 드니 쓰리콤보 포콤보 차차차다.



(신문법 개악) 국민들의 눈을 막고

이건 국민들이 자꾸 들고 일어서니 아주 죽을 맛이었을 것이다.



(방송법 개악) 국민들의 귀를 막고



(집시법 개악) 이제는 국민들의 말할 권리인 입까지 막으려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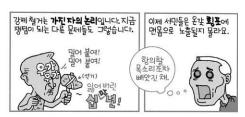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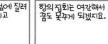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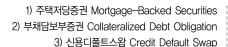














# 김상조 교수님 강연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정리 **공두현 · 김나은 · 남현웅** 인턴

송호창	2008년 마지막 월례회에서는 금융위기의 문제를 주제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이고, 이제 좀 제대로 된 분석과
	전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성대에 계시고 경제개 연대에 소장으로
	계신 김상조 선생님을 모셔보았습니다.
김상조	예, 외환위기 때에도 이 자리에 왔었는데,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의 운명이
	불황기가 되어야 할 말도 많아지고 듣고자 하는 사람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크게 두 가지가 있겠는데 우선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을 생각해보고,
	지금의 한국경제의 문제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분석

먼저,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을 짚어보자면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 과잉유동성의 오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IT버블이 꺼지고 9.11 테러가 났을 즈음 13번 연속 금리를 내렸습니다. 1%금리를 1년간 유지했었고 그 앞뒤로도 상당기간 저금리가 유지되었습니다. 특히 달러화가 기축통화였기 때문에 이것이 전세계에 과잉유동성을 가져온 것이 지금의 전세계적 위기의 가장 중요한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과잉유동성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참여정부도 똑같은 오류를 범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참여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부동산 가격 급등이었고 그 원인으로 진단된 것이 교육문제 비롯한 강남 등의 문제였습니다. 종부세가 그에 대한 대책으로 나왔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개혁 진영의 경제정책적 역량의 결핍을 뼈져리게 느꼈습니다. 버블현상은 과잉유동성이 본질인데 그걸 깨닫는 게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담당 비서관을 하셨던 한 비서관 말씀이 2006년 말이 되어서야 과잉유동성이 진짜 원인이었는데 이걸 놓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이명박 정부도 똑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후에 언제일지 모르지만 진보개혁진영이 다시 한번 집권을 한다해도 이런 기본적인 것을 챙기는 경제정책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진정성만으로는 성공하는 정부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각국 정부에서 유동성 공급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본격적인 회복의 신호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때 이 과잉유동성을 적절하게 회수하는 정책을 쓰지 않는다면 전세계가 다시 거품과 붕괴를 겪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이러한 측면에서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두 번째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는 신자유주의자들이나 네오콘의 이념적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네오콘이 요즘 부자와 가난한 자라는 계층간 구분을 없애고 이른바 모두가 자산 소유자인 새로운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선전합니다. 부시도 미국인 전체가 자산 소유자가 되는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정치적 슬로건에 기반해서 다양한 형태로 정책을 펴게 되고, 그런 차원에서 집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도 더 많이 이루어집니다. 은행 등에서 아무 소득도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싶어하더라도 정부가 제대로 감독하고 있었다면 지금 상황으로 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 파생금융상품과 그에 대한 감독의 실패문제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주택구입에 대해서는 상당한 사회정책적 지원이 있습니다. 보통 고정금리로 30년간 장기대출을 합니다. 대출은 쉽게 해주고 그 대출에 대한 위험은 금융기관이 떠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과보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30년간 이자를 받아서만은 장사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에서는 그 모기지 채권을 팔아서 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시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개별 모기지 자산은 가장 환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수의 모기지를 모아서 이를 기초자산으로 새로운 유가증권, MBS<sup>1)</sup>를 만든 것입니다. 이 MBS가 초기에 만들어졌을 때에는 부도날 위험이 없는 AAA등급만을 다른 쪽에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등급의 채권은 모기지 발행회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이 차지 않으니까 MBS를 섞어서 만들어낸 2차 파생상품이 CDO<sup>2)</sup>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자기에게 남기는 채권을 계속 줄여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브프라임모기지는 미국 금융시장전체의 2%밖에 안되요. 서브프라임의 시장규모는 우리나라에서의 카드시장보다 규모가 작은 시장입니다. 이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에서의 실패가 금융시장 전체를 녹아내리게 한 것은 바로 이것을 2차 파생상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세계의 금융기관들이 여기에 투자하면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된 것입니다.

이런 파생금융상품의 위험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CDS®입니다. 워렌버핏이 금융적 대량살상무기라



고 부른 것 중 하나입니다. CDS는 개별기관에서 가진 채권이 부도가 날 위험을 만기까지 지고 가는 것이 위 험하다고 생각할 때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그 보험료가 바로 CDS프리미엄입니다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아무 관계가 없는 두 사람이 '우리 야바위 한번 해볼까'. '저 회사 가 부도나면 내가 100워 줄게 부도 안나면 네가 10워 먹어라' 하는 식이 되었습니다. 워본채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CDS를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CDS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원본채권보다 5배 정도 되는 양의 CDS가 발행되었습니다. GM의 채권보다 5배 더 많은 CDS가 있다면, GM이 진짜 부도가 나는 경우 보 험회사는 5배 되는 보험료를 물어줘야 하고 사실상 그 순간 보험회사도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CDS가 위험 을 더 크게 한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 하자면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함 때 이미 리먼브라더스와 AIG 두 곳이 부도라는 것은 확실했는데 미국 정부가 둘 다 살릴 능력은 없었고. 둘 중 하나인 AIG를 살려야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리먼 브라더스는 파산시키고 AIG는 살린 것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은 리머브라더스는 기업들과 거래하기 때문에 그 위험을 기업들이 스스로 책임질 수 있지만. AIG는 소비자들과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개인인 소비자를 보 호하기위해서 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큰 부분은 AIG가 CDS를 가장 대규모로 취급했던 금 융기관이고 여기를 파산시키면 그와 CDS거래를 했던 전 세계금융기관이 파산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되었냐. 미국의 금융감독당국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를 짚어봅시다. 금융은 은행. 보 힘. 증권으로 나뉘는 데. 미국은 세 영역별로 다른 금융감독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은행은 연방법으로 되어 있고 보험은 주법으로 되어 있는데. 은행과 보험은 그래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은행이든 보험이 든 지주회사 내에서 통합해서 감독하는 방식이 사용되는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미국의 증권감독시스템에는 IB지주회사 전체에 대해 규제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아무리 법을 읽어봐도 IB지주회사에 대해 사전적이든 사후적이든 건전성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래의 위 험에 대해서 보고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IB에 대한 감독이 아주 느슨한 것은 아닙니다. 영업용 순자본비율과 유사한 개념의 NCR4 규제를 통해서도 IB들이 차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자기 자본의 12배 정도입니다.

근데 중대한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2004년도에 증권거래법이 바뀌면서 SEC®가 감독규정을 하나 새로

만들었는데. 영업용 순자본이 10조원이 넘는 대형 IB의 경우에는 기존의 NCR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규정입니 다 이렇게 해서 대형 IB들이 자윸규제 시스템으로 넘어가요 자윸규제로 넘어가 IB들이 딱 다섯 개입니다 골 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리먼브라더스, 베어스턴스, 메릴린치, 이들이 레버리지가 다 30배를 넘었습니다. 여기 에 파생상품으로 인한 우발부채까지 하면 레버리지가 70배가 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시스템이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감독을 할 수 있었는데 못한 것이 아니라. 아예 감독을 안하기로 한 겁니다. 과잉유동성 과 정치적 슬로건 속에서 IB들과 헤지펀드들이 엄청나게 위험한 영업을 할 때 아무런 예방장치도 하지 않고 끝까지 가버린 겁니다. 전세계의 금융기관이 그 위험구조에 연루된 과정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응책을 이야기할 때인데, 위기에 대한 대응책은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일국적 차원에 서는 부실채권 사주고, 부분 국유화하고, 실물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일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전세계 적인 금리완하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1%까지 왔는데 추가 인하까지 간다고 하니 전세계가 동시에 제로 금리를 경험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FRB와 IMF가 달러유동성을 공급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4개의 나라와 통화 스왑 을 했었는데 이제 14개 나라와 통화스왑을 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2의 외화위기의 가능성을 걱정하 시는데, 생각하기에 IMF에게 다시 구제금융받는 것을 외화위기라고 좁게 정의한다면 그러한 사태는 오지 않 을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통화스왑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러한 통화스왑으로 막지 못 해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다는 것은 미국 FRB의 체면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환위기의 의미를 넓게 잡는다면 원화가치가 급격히 떨어질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 케인즈를 다시 생각한다

이제 케인즈주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케인스주의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인데 가장 좁은 의미의 케인스주의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 히 지금과 같은 위기 시에 확장 재정금융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우파 케인스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좌파적 케인즈주의입니다. 60년대 이래로 유럽국가 쪽에서 만들어진 자본주의 체계 내에서의

미국의 FRB와 IMF가 달러유동성을 공급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4개의 나라와 통화 스왑을 했었는데 이제 14개 나라와 통화스왑을 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2의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걱정하시는데, 생각하기에 IMF에게 다시 구제금융받는 것을 외환위기라고 좁게 정의한다면 그러한 사태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계급타협 모델'을 케인즈주의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즉 사회정책적 측면에서의 좌파적 케인즈 주의를 의미합니다. 좁게 보면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사회 노동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론 사회적 대화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차원에서 요즘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제통화시스템입니다. 즉 달러본위제의 개편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2차대전 당시 연합국들이 전후의 국제정세질서를 다시 논의하면서 IMF와 GATT가 만 들어질 당시 두 개의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의 입장을 대변했던 케인즈 플랜와 미국의 입장을 대 변했던 와이트 플랜이 그것인데, 당시 세계의 새로운 헤게모니 국가로 등장했던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와이 트 플랜이 채택되어 지금의 IMF와 GATT 체제가 탄생했습니다.

와이트 플랜과 케인즈 플랜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첫 번째로 다른 점은 세계기축통화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에 관한 것인데, 와이트 플랜은 미국의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었고, 케인즈는 방코르(Bancor)라는 새로운 화폐를 창조하는 방식으로 국제통화를 만들려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통화시스템을 관리하는 국제기구의 성격과 관련된 것입니다. 와이트 플랜은 IMF와 같은 펀드로 회원국들이 돈을 출연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즉 자본금을 출연해서 자기가 출연한 그 금액만큼 의결권도 행사하고 돈도 빌릴 수 있는, 자기가 출연한 만큼의 권한을 갖는 방식인 것입니다. 반면 케인즈는 이것을 은행으로 만들어서 그 은행을 통해 스스로 여수신을 하는 방식으로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국제수지의 불균형의 부담을 어떻게 분담하는가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와이트 안의 경우 국제수지 불균형의 조정부담을 적자국에게만 부담시켜 그것을 조정하지 못하면 IMF 구제금융을 받도록 하였고, 케인즈 안의 경우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적자국과 흑자국 양쪽 다 부담해야 한다고 하였던 것이죠

지금 생각건대 케인즈 플랜이 와이트 플랜에 비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당시 미국의 헤게모니 하에서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국제 질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IMF 체제로 가게 된 것입니다. 최근 프랑스의 사르코지나 영국의 고든 브라운 같은 사람들이 달러와의 기축통화 문제와 관련해서 도전을 시작했는데, 이러한 경향들은 그 성공여부와는 별개로 국제적인 측면에서의 케인즈주의를 다시 부활시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G20차원에서 케인즈주의에 대해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지금 우리가할 일은 그 결과가 어디까지 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전망이며, 그 속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국제통화시스템을 관리하는 국제기구의 성격과 관련된 것입니다. 와이트 플랜은 IMF와 같은 펀드로 회원국들이 돈을 출연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즉 자본금을 출연해서 자기가 출연한 그 금액만큼 의결권도 행사하고 돈도 빌릴 수 있는, 자기가 출연한 만큼의 권한을 갖는 방식인 것입니다. 반면 케인즈는 이것을 은행으로 만들어서 그 은행을 통해 스스로 여수신을 하는 방식으로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한편, 20세기의 금융시스템을 돌아보는 측면에서 금융산업에 대한 재규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국제적 자본이동에 대해서 직접 규제하는 수준까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봅니다. 미국에서 33년 증권법이 만들어질 때 루즈벨트의 측근들이 꿈꾸었던 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같은 직접적인 구조나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할 수 있는 증권법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에 대해 의회의 반대에 부딪쳐 지금의 증권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결국 지금도 이와 같은 상황이 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우파적 케인즈주의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결과적으로 금융 산업의 규제체계가 사르코지나 진보진영에서 이야기하는 직접적 규제구조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다만 너무나 기이하게 만들어져 있는 미국의 금융감독시스템이 보다 합리화되는 계기 정도일 듯 싶습니다. 좌파적 케인즈주의와 관련하여선 메케인이 아닌 오바마의 당선이라는 결과로서 상대적으로 부시정부에 비해 진전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국제적인 측면에서의 케인즈주의입니다. IMF를 대체하는 새로운 통화시스템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제통화시스템은 헤게모니 국가의 주도나 암묵적 동의 아래에서만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미국의 헤게모니가 흔들리고 다극화 체계가 될수록 안정된 국제통화시스템은 만들어질 가능성이 점점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 위기가 지나더라도 국제적인 측면에서의 통화금융의 혼란상은 상당기간동안 더욱더 심화된 형태로도 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우파적 케인즈주의조차 역행하고 있는 듯 합니다. 자통법이나 금산분리, 규제완화 등등을 볼 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좌파적 케인즈주의와 관련하여서도 한쪽에 대해서만 치우친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모습에서 사회적 대화기구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제적인 측면의 케인즈주의와 관련하여서도 전세계적 금융 불안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외환상황 진단

우리나라 얘기로 들어가겠는데요, 우선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점검해보겠습니다. 최근 6개 나라가 IMF의 구제금융을 받았죠. 이런 구제금융을 받는 나라의 공통적인 특징이 세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대규모의 경

외환보다 더 급한 것이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문제고 그것은 실물기업들의 문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건설사, 조선사, 자영업자들, 최근 M&A로 급성장한 그룹들 쪽에서 일이 터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파다하게 퍼져있습니다.



상수지 적자가 있고, 은행의 단기부채가 많고, 이에 비해 외환보유액이 적다는 점입니다. 10년 전의 우리나라는 이 특징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펴보면 외환위기 측면에서는 10년 전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98년부터 10년 동안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외환위기의 문제는 경상수지 쪽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100억불 흑자적자는 금융시장 쪽에서 한 달에 움직이는 돈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화위기문제는 금융시장 쪽에서 봐야되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과 관련해서 금융기관들의 외채, 특히 단기외채들이 너무 많다는 게 상당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이 공식적인 감독 규정으로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총액으로 보면 거의 자산 부채는 엇비슷합니다. 문제는 만기가불일치하면서 나오는 미스매치의 문제인데요, 은행들이 지난 3, 4년 동안 너무 방만하게 경영을 했고 그걸 감독하지 못한 것도 참여정부의 실책입니다. KIKO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상품이 아니죠. 은행들이 중개하면서 수수료를 먹기 위해 KIKO를 그렇게 많이 팔고 손실에 대해서 다시 오버헤지하려다가 중견기업들이 다 망하게 생긴 겁니다.

또 조선사 같은 경우에 미리 들어올 돈이 있는 겁니다. 1년 후에 들어올 돈을 미리 팔면 즉 선물환을 매도하면 외화유동성을 확보하기위해서 똑같은 규모의 외채를 들여오게 되는데 장부상 보면 액수 자체는 일치해요. 그런데 그 매도한 외화들은 60%정도가 만기가 1년 이상이었어요. 근데 외화 부채는 3개월, 1개월, 결국 하루짜리로 갔습니다. 미스매치가 너무나 심각해진거죠. 이 문제로 은행들의 외화부도 우려까지 간 것입니다.

해외주식 투자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래에셋이 중국에 인사이트 펀드로 투자를 했습니다. 1년 후에 달러 들어오는 게 100이라고 생각해서 100을 헤지해놨는데 중국주식은 삼분의 일이 되니까 나머지는 삼분의 2는 다 오버헤지한게 된 것이고 원금까지 까먹고 오히려 돈을 더 내야하는 펀드들이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금융기관들이 영업했던 것들 전부가 꼬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외환보유액이 과연 충분하냐의 문제입니다. 2600억불까지 갔었는데 11월 통계를 보면 2000억불 수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의 외환 담당 차관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외환보유고는 일주일 내에 현금화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건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갈 때의 이야깁니다. 페니메, 프레디맥 채권과 재무성 증권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페니메, 프레디맥 채권 300억불 팔면 당장 부도납니다. 재무성증권을 우리나라 정부가 팔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가면 그 영향은

엄청납니다. 그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도 재무성 증권들은 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통화스왑 같은 것도 받아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금융연구원에 계신 분이 그래서 실제 현금화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산해 봤더니 800억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은행에서 미스매치된 부분과 비슷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은행 쪽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정말 거덜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통화스왑이라는 장치가 생겼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줄어들었습니다.

### 우리나라 내부적 문제의 심각성

그 다음에 살펴봐야 할 것이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 인정사정없이 팔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비중이 가장 높을 때가 2004년 10월인데 43%였습니다. 2005년 이후부터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는 규모와 양태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주식을 팔면 그만큼 우리나라 채권을 많이 샀어요. 왜 냐면 우리나라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본수지가 큰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올해는 채권까지 팔기 시작했어요. 이 양상이 되면서 외환보유고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외국계 증권사들 불러서 비공개 간담회를 하는데, 왜 이렇게 파냐고 물어봤대요. 우선 우리나라 시장이 매력이 없다고 합니다. 한국 시장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한국경제의 어려움은 미국발 경제위기가 단순히 전파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잠재된 위기와 부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위기의 성격이 달라졌어요. 10월까지만 해도 외환 금융의 위기였다면 이제는 국내의 신용위기가 된 것이고 그 신용위기가 다시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식으로 성격이 변한 겁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3%라고 정부나 기관에서 얘기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이미 제로성장을 한다고보고 있어요. 코스피도 증권사 따라 800에서 500까지 써놓습니다.

즉, 외환보다 더 급한 것이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문제고 그것은 실물기업들의 문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건설사, 조선사, 자영업자들, 최근 M&A로 급성장한 그룹들 쪽에서 일이 터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파다하게 퍼져있습니다. 2003년도에 신용불량자들 양산했던 카드대란당시 카드사들이 지고 있던 부채가 95조정도됐습니다. 그런데 건설사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한 금액만 100조가 이미 넘었습니다. PF로 아파트 지어서 안팔리면 부도가 날 것이고 부도가 나면 시행사, 시공사, 은행이 연쇄적으로 피해가 가는 겁니다. 지급보증이

이미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2007년 중 영업이익으로 순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전체의 48.9%입니다. 올해는 절반을 넘겠죠.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사실상 다 죽었습니다. 한국은행이 10조원정도의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 10조정도의 지금을 가지고 기업들의 회사채나 CP사주면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서는 채권시장이 정상화 될 수가 없습니다.

니까 우발부채라서 대차대조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GS건설의 예를 들어봅시다. 대차대조표의 부채비율은 200% 밖에 안되요. 근데 PF 지급보증액만 5조입니다. 이걸 합산한 총 부채비율은 392%입니다. 은행들은 이런 위험성을 알고 있어요.

건설 쪽 이야기를 좀더 해보자면, 우리나라에서 건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OECD 30개국 중 가장 최다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건설업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에 더 건설업을 부양하게 되면 우리나라 이 산업구조의 기형적인 모습은 더욱더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래의 위기를 부르는 초대장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너무 어려워하니까 중장기문제는 뒤로하고 단기문제부터 해결해야한다. 이게 정부여당의 입장인데, 건설업이 전후방연관효과가 가장 큰 산업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설업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라는 것이 너무너무 안 좋다는 점입니다. 임금조건 안 좋고 대부분 일용직이죠. 그것으로 과연 서민들의 일자리를 일단 다잡아보자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참으로 의문입니다.

지금 존재하는 건설사의 부실문제가 5년 전의 카드대란문제 정도의 충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부실이 널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위기상황이 5년 전보다도 더 엄청납니다.

조선업 쪽을 좀 봅시다. 지금 남해안에서 정주영신화를 재현하려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도크가 없이 발주해서 배 만들겠다는 신설 조선사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선수금으로 도크 만듭니다. 받고 다 판 곳도 있고 아직도 파는 곳도 있고. 이런 것이 남해안에 널려있거든요. 근데 지금 전세계 해운업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경기의 상황을 가장 빠르게 나타내는 것이 해운물동량입니다. 경기가 죽으면 수출입이 안됩니다. 그래서지금 해운물동량이 베이징 올림픽당시의 5프로밖에 안됩니다. 우리나라 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했던 사람들이계약금 다 떼이면서도 취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선소는 미리 발주 받아놨던 주문분량의 30%~40% 취소되었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2007년 중 영업이익으로 순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전체의 48.9%입니다. 올해는 절반을 넘겠죠.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사실상다 죽었습니다. 태산LCD와 같은 중견기업은 크니까 우리 눈에 보이죠. 하지만 자영기업과 중소기업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엄청난 부실채권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들이 전부다 잠재적인 폭탄입니다. 이 부실들이 현재화 되는 순간 은행의 자기자본을 잠식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적자금을 다시 투입해야하는 상황이 곧 올 것입니다. 외환시장에서 부도가 나서 가 아니라 내부의 썩은 문제 때문에 다시 공적자금을 조성하는 상황이 내년 초반에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왔으면 좋겠지만 그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염두에 둬야만 하는 상황이 왔다는 것입니다.

#### 위기 속 정부의 역할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가야하는가가 중요한데요. 위기상황이면 당연히 정부가 개입할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부의 개입이라는 것이 시장을 대체하는 개입이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시장이라는 것이 물론 여러가지로 정의되지만, 시장의 기능 중 하나가 가격발견기능입니다. 가격이 높아지면 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가격이 떨어지면 그 반대라는 것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시장인데 위기가되서 시장이 붕괴되면 가격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해야할 일은 그시장의 기능 특히 그 중에서도 가격의 기능을 복원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우리나라 정부가 이 작업을 안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10조원정도의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 10조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기업들의 회사채나 CP사주면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서는 채권시장이 정상화 될 수가 없습니다. 채권시장을 다시 살리려면 회사의 상태에 따라서 신용등급과 그 수익율이 차별화가 되어야합니다.

좋은 기업, 나쁜 기업이 구분되지 않으면 모두 나쁜 기업으로 보고 거래를 안하는 것입니다. 유동성을 아무리 풀고 시중은 돈이 넘친다고 하지만 정작 기업에는 돈이 안가게 됩니다. 정부가 이런 위기상황에서 수행해야 할 첫번째 작업이 살 기업과 죽을 기업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그 옥석을 가릴 능력과 의지가 있느냐하는 것인데, 그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돈이 흐르지 않으면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로 갈 것입니다. 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된 이래로 지금까지 45년정도 되었죠. 그 40여년 동안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 딱 두 번입니다. 79년 제2차 오일쇼크가 첫 번째였구요, 1997년 외환위기 터지면서 98년 마이너스로 성장한 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이 두 번의 마이너스를 빼고 가장 성장률이 낮았을 때가 2003년, 3,1%입니다. 근

한국경제의 미래는 10년 전과는 다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10년 전에는 그래도 이 위기의 진행과정이 V자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0년대 말 일본이 걸었던 L자형의 장기침체가 지속되는 고통스러운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데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상한 것처럼 내년의 성장률은 3%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뭐냐면 우리나라 40여년의 경제성장 역사에 있어서 3번째 마이너스 성장 내지는 3번째로 성장률이 낮은 해가 될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살기업과 죽을 기업을 가리는 옥석을 가리는 작업이고, 퇴출 또는 구조조정에 필요한 비용이 이미 은행이나 시장이 자체적으로 부담할 수준을 넘어설 것입니다. 이 돈을 전부 국회의 감시를 비롯한 어떤 사회적 통제도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유사공적자금방식으로 쓰기 시작하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지금의 부실을 털어내는 과정에서 그 비용이 사회화 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사후적인 모럴해저드를 가장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구조조정을 해야합니다. 이미 10년 전에 상당한 정도의 법률적 틀은 만들었습니다. 첫번째로 동원할 수 있는 게, 일단 구조조정촉진법입니다. 물론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2005년도에 고등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 했을 정도로 문제가 많습니다. 일몰조항에 의해 없어졌다가 작년 2007년 8월에 재입법된 법이고 평소라면 저도 반대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대주단협약을 쓰는 것보다는 그나마 구조조정촉진법을 쓰는 것이 낫습니다. 결론적으로 살 수 있지만 부실이 심각한 기업의 경우에는 구조조정촉진법을 써야하구요, 그것도 안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우리가 10년 전에 했던 것처럼 캠코와 예보를 통해서 공적자금 조성에 집어넣는 그런 워크아웃방식을 써야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일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송호창 AIG를 파산시키지 않는 이유를 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후원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CDS의 최대보유관리를 하는 곳이라고 하는군요. 이제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IB업무로 인해 생긴 문제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김상조 예, 사실은 우리나라 은행들의 IB업무는 걸음마수준입니다. IB라는 그 기능자체는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은행은 자기가 예금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그 돈을 기업한테 대출해주는 주체적 입장에서 금융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반면 Investment Bank는 에이전트의 입장에서 금융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법적인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유가증권을 발행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평가해주고 구매자를 찾아주고 여러 가지 어떤 M&A같은 컨설팅을 해주고 원래 이런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나

라 금융산업에서 굉장히 발전시켜야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미국의 IB들이 정통적인 에이 전트로서의 기능에서 문제가 터진 것이 아니에요. 과잉유동성과 법적인 규제의 완화, 감독의 실패 이런 과정속에서 그 차입비율을 12배에서 30배이상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차입자금으로 자기자본직접투자에 더 많이 몰두하게 되었고 그것이 오히려 더 많은 수입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날의 사태가 터진 것이죠.

# 금융위기 현안에 관해서 정부는 위기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정부에서 어떤 기조로 대응해야 할지 전망을 좀 해주십시오.

김상조 국장급이나 그 이하 경제 관료들을 만나보면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 알고 있고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안정적으로 경제운용하면서, 그 다음에 옥석가리기의 구조조정을 해야된다라고 의사결정이 거의 이루어졌었어요. 문제는 그렇게 실무자들 차원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져도 대통령이 한 말씀하시면 이것이 완전히 물거품이 됩니다. 최종의사결정자인 청와대와 장관급이 사람들이 받아주지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의 한국경제정책의 난맥상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대통령은 어차피 바꿀 수가 없으니까 장관부터 바꿔야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장관을 바꾼다는 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정책기조를 변화시키는 기점이 되기 때문에 바꿔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말씀만 더 붙인다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10년 전과는 다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10년 전에는 그래도 이 위기의 진행과정이 V자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0년대 말 일본이 걸었던 L자형의 장기침체가 지속되는 고통스러운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 지난번 브라질에서 APEC회의를 할 때 우리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해야하고 IMF를 발전시켜야하고 강화해야한다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상조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자체는 그렇게 비판의 대상은 아닙니다. 흔히들 지금의 상황을 30년대 대공황과 같은 상황이라고 했는데, 당시 많은 국가들이 여러가지 오류를 범했습니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저지른 실수가 여러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과거의 금감위와 재경부의 경제정책실을 합쳐서 지금의 금융위로 만든 것입니다.

다. 첫 번째로 긴축정책을 썼는데, 이것이 바로 위기를 더욱더 심화시킨 요인이었습니다. 또 심각하게 보호주의 무역정책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30년대 대공황을 최악으로 만든 요인이라는 것이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식으로 굳어져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전세계적 경제정책 공조의 방향을 이야기한다면 어떤 대통령이 이야기하든 30년대 대공황의 교훈을 잊지 말자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한국의 정치경제상황에 어떤 함의를 갖느냐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보호무역 주의에 대한 경계는 한미FTA에 대한 조기비준과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국내정치상황에서의 어떤 현안들과 연결시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참여정부에 책임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실책의 원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김상조 노무현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이야기 했던 것이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5년동안 혁신도시 이런 것들 외에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금리라는 전통적인 경기부양책은 너무 강하게, 너무 오래 썼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과잉유동성의 문제이고 이런 상황을 방치하게 된 것은 결국 대통령 본인도 물론이거니와 청와대에 있는 정책참모들 중에서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 역대대통령들이 다 그랬지만 노무현 대통령 역시 취임한 첫해인 2003년에 경제가 제일 어려웠어요. SK분식회계사건과 카드대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의 국정과 제를 실행하기는 커녕 위기관리하기에 급급한 상황이 된 것이고, 경제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면서 전통 적인 모피아®에게 경제정책의 주도권을 다 넘겨버린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참여정부에 참여했던 이른바 전문가 그룹들이 금융에 관해서 너무나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진보개혁진영이 혁명이 아닌 선거를 통한 집권을 생각한다면, 한사람의 지도자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준비가 된 팀으로 무언가를 이뤄야하고 하나하나의 경제정책부분들이 빠지지 않아야할 것입니다.

또 지지하는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제발 서두르지 말라, 당신은 우리가 30년 동 안 해야 할 과제를 5년동안 1/6만 하고 가라' 고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서 상시적인 규제, 적절한 규제가 계속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이 어느 정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김상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경제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제대로 된 시장감독기구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공정위, 금감위, 국세청, 이 세 감독기구가 정치적, 정책적 판단으로부터 독립되어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경제개혁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정위와 금감위는 시장감독기구인데, 이 시장감독기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치로부터도 독립해야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장으로 독립해야합니다. 시장은 언제나 확장정책과 규제완화를 원해요. 그 확장정책과 규제완화를 원하는 시장의 압력으로부터도 독립된, 오직 감독만을 생각하는 그런 공정위와 금 감위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개혁의 포인트죠. 그것을 만들어간다면 극심한 부침을 겪는 그런 문제는 상당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해야 할 과제도 분명합니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저지른 실수가 여러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과거의 금감위와 재경부의 경제정책실을 합쳐서 지금의 금융 위로 만든 것입니다. 지금의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기능과 금융정책기능을 합쳐놨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정책과 감독을 한군데서 하게 되면 당연히 정책이 우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위가 산업은 행 민영화, 금산분리 완화 이런 것만 열심히 해요. 대통령이 좋아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독 쪽에서 부실금융기관처리하자고 하면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전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이것을 합쳐놓은 감독기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결정적인 패착이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한국금융위기가 더 혼란을 겪고 있는 중요한 이유도 금융위의 감독파트가 발언권을 가지지 못하는 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호창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 민변의 활동

# 현장보고

# MB악법저지 철야농성

글 **황희석** 회원

1996년 12월 26일 김영삼 정부와 한나라당이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에 맞서 초유의 변호 사 철야농성으로 날치기통과 반대의 불씨를 지폈던 민변이 그로부터 꼭 12년만인 지난해 12월 29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방송기본법 등 언론관계법,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등 인권침해법, 재벌만 키우는 은행법 등 경제관련법 등 85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입법전쟁에 맞서 또다시 철야농성에 돌입하였다.

이미 한달 전부터 법률전문가단체로서 MB악법이 통과될 때 발생할 위험과 불행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민변은 대표적 위험법률 16개의 법률적, 현실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법안 통과로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극단적인 대립과 분열을 초래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추운 날씨와 독감이 퍼지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민변 회원들은 연내 강행처리라는 정부여당의 의도를 막기위해 농성장에 속속 집결하였고, 12월 29일 오후 기자회견을 필두로 'MB악법, 무엇인 문제인가'라는 홍보물 배포, MBC와 SBS 등 파업 중이던 방송사의 지원방문, MB악법저지를 위한 국민대회 참가 등 다양한 행사에 결집하여 함께 했다. 철야 중에는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으로부터 언론관계법 개정안의 의도와 문제점을 소상히 듣고 전성인 교수로부터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근본원인에 대하여 깊이 있는 설명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민변의 철야농성은 서울시청과 청계천에서의 홍보물 배포와 뒤이은 MB악법저지 국민대회 참가로 공식적 인 일정을 마쳤고, 많은 회원들은 보신각 종소리를 덮을 정도의 함성을 지르며 새해를 거리에서 맞았다.

민변을 비롯한 각 시민단체의 항의와 언론노조의 파업 등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여당은 연내 강행통과

방침을 유보하였지만, 이것이 일시 물러섬에

지나지 않음을 잘 알고 있는 민변은 철야농성이 끝난 뒤에도 31개 법안 검토의견서를 국회와 각 정당에 전달하고, 입법 TFT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MB악법의 통과를 저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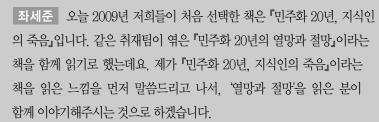




# 『민주화 20년, 지식인의 죽음』

(후마니타스)

정리 **좌세준** 회원





#### 민주화 20년을 되돌아본다.

먼저 이 책은 1987년 이후 20년, '87년 체제' 라고 명명되기도 하는 민주화 이후 20년을 되돌아보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 1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는 김수행 교수의 강의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월례회 때도 김수행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비주류 경제학자가 대학 강단에 임용되지 못하는 문제.

이 책에서는 "비판적 지식인의 재생산구조가 존재하는가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교육부와 전경련이 함께 경제 교과서를 만들어 노동을 조롱하고 재벌을 찬양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지적하는데요. 제가 자료에 한격레 사설을 옮겨 놓았습니다만 5000만원씩 돈을 들여서 만들었다는데, 그 내용의 면면을 보면 "정부의 시장개입이 개인과 사회에 모두 해를 가져온다"는 '과감한' 서술을 하고 있다거나, "노동조합이 임금을 높이는 점도 있지만 기업에게는 고용을 줄이는 면이 있다"고 해서 실업문제를 노조에 돌리고 있는 문제가 발견된다는 거지요.

물론 학생들에게는 아니고 선생님들에게만 배포할 목적이었다고는 합니다만, 사실 정부가 전경련의 지원을 받아 교과서를 만든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었다는 겁니다. 대학교수들이 학술진흥재단(학진)의 연구비를 지원받으려 경쟁하는 체제하에서 '논문 작성 노동자'가 되고 있다는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지식인담론과 관련해서는 수유너머 고병권씨의 대담을 싣고 있는데요. 지식인 담론을 3가지로, 칼만하임의 자유 부동하는 지식인, 그람시의 유기적 지식인, 사르트르의 기능적 지식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이책 49페이지에 '한국 지식인 이념 분포도'가 나와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책이나 글을 읽을 때 한 번 참고할만한 분류가 아닌가 합니다.

민변활동\_공부모임 103



한화 김승연 회장 사건이 났을 때 김상조교수를 인터뷰했던 기자의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재벌 비판적 언론보도에 등장하는 지식인은 김상조 교수 외에 손에 꼽을 정도라서 다른 교수들은 인터뷰하지 않고 김상조 교수에게만 기자들이 전화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어서 최근 발견되는 현상으로, 좌파 지식인들이 우파로 전항하거나 '중도선언'을 하는 경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으로 안병직 교수, 뉴라이트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분. 이분은 잘 아시겠지만 사회구성 체논쟁에서 '식민지반봉건사회론'을 주장한 좌파 경제학자였는데 완전히 돌아서서 최근에는 식민지근대화론자가 되었다는 거지요. 최근 이진경씨는 안병직 교수의 사례를 두고 "이보다 더 놀라운 시대착오를 나는 알지 못한다"는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지성을 키우는데 영향을 준 책들도 소개하고 있는데, 『제3의 길』(앤서니 기든스)에 대한 조효제 교수의 평은 재미있습니다. "진보진영은 공개적으로는 기든스를 비판하면서 자기 방에서는 몰래 정독했다" (웃음) "최근 와서 대안적 진보 이념으로 사회국가, 사회투자국가, 사회서비스국가, 사회연대국가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는 거의 모두 기든스식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맞는 얘기인 듯합니다.

#### '지식인의 위기' 인가?

3장에서는 '지식인이 말하는 지식인의 위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식인 위기론에 동의하는가"에 관한 문제, 이 문제는 결국 '지식인이란 무엇인가'라는 정의와도 관련된 문제입니다만, 최장집 교수는 "비판적 의미의 지식인을 인텔리겐치아(inteligentsia)형 지식인"으로 보는 전제하에 '지식인의 몰락, 위기론'을 인정합니다. "지식인의 몰락은 민주화 이후 '군부독재반대', '불의에 저항하는 민주화 투쟁'의 의미를 넘어서는 민주주의의 이상과 가치를 실현하는 대안적 비전을 갖는데 실패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임지현 교수도 "민주화 이후 인텔리겐치아적 지식인이 대거 권력에 참여해서, 자신의 전문지식을 통해 국가권력에 봉사하는 '지식인'으로 변신하면서 과거 인텔리겐치아적 지식인이 가졌던 도덕적 위상 등이 붕괴된 것은 사실"이라고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지난 대선 때도 문제가 된 '폴리페서'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윤해동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정치의 미성숙으로 정치인 충원구조가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정당이 대안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그런 이유로 대선 때마다 정책 입안을 명목으로 폴리페서들의 등장을 허용하는 구조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은 브루킹스 연구소나 월가의 수많은 경제연구소 등이 좋은 연구 환경과 높은 보수로 지식인 집단을 흡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이같이 지식인 그룹이 몸담을 만한 기관이 별로 없다"는 기사를 읽은 적도 있는데요. 우리 공부모임에서도 토론되었던 주제이고 앞으로 관심을 가질만한 지적이 아닌가합니다.

#### 경제권력, 문화권력과 지식인

5장은 경제권력과 지식인의 문제를 담고 있는데, 한화 김승연 회장 사건이 났을 때 김상조 교수를 인터뷰 했던 기자의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재벌 비판적 언론보도에 등장하는 지식인은 김상조 교수 외에 손에 꼽을 정도라서 다른 교수들은 인터뷰하지 않고 김상조 교수에게만 기자들이 전화를 하더라는 겁니다. 대기업 자문교수들이 월 2~300만원을 받고 기업에 우호적인 칼럼을 쓰게 되는 현상, 특히 삼성의 자동차 진 출과 삼성생명 상장 사례에서 보여준 교수들의 햇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반대하던 교수들이 나중에 는 다 입장을 바꾸어서 찬성하는 논조로 돌아서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최근에 문제되고 있 는 신문-방송 겸영에 대한 교수들의 의견 변화를 관찰해보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박노자 교수 는 "기업사회가 한국 사회의 현실인지는 몰라도 그것이 미래가 된다면 우리의 미래가 없다고 봐야 한다" "짓 정한 지식인은 기업사회의 야당이 돼야 하는데, 다들 기업사회에 편승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최근 '기업의 식민지가 된 대학'의 문제를 비중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새는 대기업들이 대학 생들에게 야식을 제공한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그리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나 다른 행사를 지 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서강대 구내에 홈에버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어제 제가 80년대 학번으로 서강대 나온 분들을 만났는데 알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아직 모르더라구요. 6장에서는 문화 권력과 지식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신문에 홍위병 얘기 자주 하는 소설가의 시국론이 나오던데요. 문학 평론가 이명원이 김윤식 교수의 표절을 비판했다가 고욕을 치른 사례,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이명원씨의 『타는 혀,라는 책에 나와 있는 문제의 논문을 재미있게 읽기도 했습니다. 학진 시스템의 외부에서 나름대로 독창적 글쓰기를 하는 그룹들의 노력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7장은 시민운동에 참여했던 지식인들의 공직사 회 이동의 문제를 다루면서 약간은 부정적 시각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저는 꼭 이 문제를 부정적으로만 접 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8장에서는 이른바 '정책지식' 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삼성경제연 구소가 낸 "대한민국 정책지식생태계,라는 책이 소개되고 있어서 서점에서 찾아봤더니 상당히 방대한 내용 을 담고 있더군요. 한마디로 삼성경제연구소가 부상하고 있다는 평이 있는데. KDI(한국개발연구원)의 경우 서울대. 시카고 마피아라고 부를 정도로 박사학위자 72명 중 미국박사가 70명인데 삼성경제연구소는 미국 박사 40%, 일본, 유럽 20%, 국내 40%랍니다. 구성면에서만 보면 오히려 삼성경제연구소가 더 바람직하다는 평가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경제연구소는 결국 다루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 어 정치 투명성, 정치 개혁에 관련된 보고서, 기업 지배구조를 정면으로 다루는 보고서는 나올 수 없다는 것

민변활동 \_공부모임 1 5



인데, 이런 연구는 결국 시민사회 내에서, 예를 들면 경제개혁연대, 희망제작소, 민노당 진보정치연구소,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학회, 대학연구소들이 맡아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자금이나 역량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견해입니다. 9장에서는 미국 위주의 박사 학위 취득과 학술진흥재단의 문제에 대한 건데, 장하준 교수가 서울대에 교수 지원을 했다가 계속 떨어진 사례는 재미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모 교수가 "삼류 잡지 에 디터"라고 평했다는 장하준 교수는 스티글리츠가 인용하기도 하는 세계적 경제학자의 명성을 얻었지 않습니까. 10장에서는 작년 촛불 집회 때 회자되었던 대중지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저도 『다중』이라는 책을 어깨 너머로 한 번 보기도 했습니다만. 11장은 대담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난 전반적인 느낌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특히 경제권력과 지식의 문제, 대학의 문제에 대하여는 상당히 선명하게 다가왔다는 점에서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이 책을 읽은 의미를 찾을 수 있었지 않나 합니다.

황희석 저는 『민주화 20년의 열망과 절망』을 읽은 느낌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책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보면 2006년 5. 31. 지방선거 다음날 경향신문은 '민심은 노정권을 떠났다' 라는 1면 헤드라인을 달았다는 거죠. 조중동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단정적 표현이었는데, 당시 진보와 개혁세력이 왜 위기에 봉착했는가,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기획보도를 준비하면서 이 책이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진보의 10대 의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조세개혁, 부동산, 교육정상화, 재벌개혁, 고령화·저출산, 소외된 소수, 건강불평등, 생태주의, 빈곤문제 해소, 비정규직을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장집 교수의 위기진단에 대한 3문 3답으로 "민주주의의 실천이 진보의 출발점"이라는 것으로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된 것은 외부적으로는 신자유주의라는 변수도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도 진보라고 이야기되는 세력들이 결국은 도덕이나 정당성 문제에 치우친 나머지 실제 사회를 조직하거나 움직일만한 건전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만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덕적 정당성만으로는 사회를 새롭게 하거나 개혁을 성공시킬 수 없다는 것이지요.

김선수 뼈아픈 지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열망과 절망' 이라는 책을 보면, 시민단체에서 진보성향의 교수들과 함께 일했던 서울대 대학원생이 했다는 말인데, "진보운동을 하는 지식인들은 왜 하나같이 둥글둥글한 사람이 없고 모난 성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항상 불만에 가득 차서 욕지거리만 해 대는 모습에서 이 분들이 과연 언제 대안이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라고 하고 있는데 진보의 모습에 대한 아픈 지적이 아닌가 합니다.

'열망과 절망' 이라는 책을 보면, 시민단체에서 진보성향의 교수들과 함께 일했던 서울대 대학원생이 했다는 말인데, "진보운동을 하는 지식인들은 왜 하나같이 둥글둥글한 사람이 없고 모난 성격이 있는지 모르겠다"........"항상 불만에 가득 차서 욕지거리만 해 대는 모습에서 이 분들이 과연 언제 대안이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라고 하고 있는데 진보의 모습에 대한 아픈 지적이 아닌가 합니다.

강신하 우리 공부모임에서 조광조를 읽기도 했습니다만, 조광조의 개혁에 대해서도 같은 파 내부에서는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였고, 반대파에서는 너무 과격하다라는 거였는데, 참여정부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연순 '지식인의 죽음'을 읽으면서 사실은 앞이 안 보인다는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지식과 비판적 지성을 양산하는 체제, 시스템의 위기' 라는 건데, 이런 면으로 접근하면 어떤 대안이 보이지 않겠는가하는 겁니다. 민주화 이전과 이후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를 보면, '이전' 에는 비록 권력적 폭압이 있었지만 그나마 비판적 지식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학생운동을 포함해서 비판적 지식인 생산을 추동하는 원천이 되었었는데 민주화 '이후' 에는 그런 기반이 뽑혀져나가고, 기업권력이 너무나 커져서 돈줄이 없으면 지식인들의 활동도 힘든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건데.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거는 도정일 교수님이 최근에 낸 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식인은 단순히 지식을 알기 때문에 지식인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지식인이다"라는 것이지요. 하이젠베르크의 예를 들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핵을 발명하고 연구했기 때문에 지식인이 아니라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의 문제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식인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는 거지요.

우리나라에서도 민주화 20년 기간을 거치면서 지식의 생산체계가 바뀐 상황에서는 새로운 지식인의 개념을 전문적 지식인이나 개인적 명망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운동주체로서의 지식인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희석 우리 공부 모임에서 남명 조식을 읽을 때 조선 유학자들의 출처(出處) 문제를 보기도 했고, 요즘 제가 조선 유학에 대한 책을 몇 권 읽었는데요. 조선 유학자들의 경우, 조선 초기 1세대 유학자들이 조선을 만들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후 조선 중기와 임란을 거치면서 실제적인 사회와 유리된 순수한 자기 세계에 빠졌다는 비판이 따릅니다

결국은 실생활 속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수밖에 없다, 그 외에 별다른 대안이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기능적 지식인이 아닌 비판적 지식인의 터전을 만드는 데는 누구나 공감을 하지요, 씽크탱크 이야기를 합니다만 일정한 보상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지식인들의 활동이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당장에 거대한 씽크탱크를 만들어낼 수 없다면 각자 활동하는 영역에서 씽크탱크를 만들어나가는 것도 필요한 것 아닌가하는 생각도 합니다.

민변활동 \_공부모임 1 7



김선수 이 책에서 학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대학교수들이 정부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보면 젊은 교수들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 보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그런 교수들과 모임이 있을 때는 가능하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정연순 비판적 지식인은 소수라 할지라도 숨쉴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해야한다는 건데 그런 공간이 점점 줄 어든다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좌세준 요즘은 오히려 보수가 능동화된 면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보수세력이 오히려 진보보다 더 당당해 졌다는 거죠. 보수 내부에서도 참신해 보이는 논리를 만들어 내기도 하죠. 대중들이 보수의 논리에 좀 더 익숙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서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데 요즘은 너무 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오늘은 사법연수원 시보님들도 두 분 참석을 했는데 책을 읽은 느낌을 한 번 들어보았으면 하는데요.

조○○ 저는 연수원 생활을 하면서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학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 이 사회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나서야 지식인으로서의 발언이나 활동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고, 다만 항상 우리 사회에 대해 관심을 잃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책을 일고 난 느낌은 하까 어느 변호사님도 지적을 했지만, 진보세력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는 공감하는 면이 있습니다. 대중들과의 거리감이나 공감을 얻기 어려운 말과 행동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제가 활동하면서 실제 느꼈던 점이기도 합니다. 비판적 지식인을 만들어나가는 방법상의 변화가 있어야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고, 예를 들면 자신들이 가진 전공분야에서 진보적인 생각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한 것 아닌가 합니다.

이 이 '지식인' 이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책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과연 지식인이 될 수 있는가, 아니면 단순한 전문가에 그치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또 하나 비판적 지식인이라고 할 때, 무엇을 향한 비판인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신의 위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지향점은 어디인지하는 고민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들은 세계의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고민하는 노력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국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는데 다른 나라, 예를 들면 버마 민주화운동이나 제3세계 분쟁에 대한 관심도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신하 조금 다른 느낌을 이야기해보면 우리들은 세계의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고민하는 노력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국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는데 다른 나라, 예를 들면 버마 민주화운 동이나 제3세계 분쟁에 대한 관심도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선영 민변 내부에서도 소수인종 문제나 국제 분쟁 문제는 국제연대위원회 등에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집회 참여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연순 많이 나아진 것이죠. 오히려 부족한 것은 정부의 관심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 관심을 가졌던 아시아 국가들이 아시아 개발원조에 소극적인 한국 정부의 태도 때문에 많이 실망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좌세준 최근에 제가 알게 된 사실인데 일본만 해도 공적개발원조(ODA)에 관한 헌장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공적개발원조를 총괄하는 법이 없더라구요. 모법이 없다는 말인데, 민변에서도 국제연대위원회 등에서 한 번 입법추진을 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강신하 그렇지요 민변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 보다 폭 넓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좌세준 예. 오늘 모임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읽을 만한 주제를 선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변호사님이 몇 권의 책을 추천해주셨는데요.

황희석 제가 요즘 국제질서를 다룬 책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나 우물 안 개구리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 미국, 영국, 중국 등 국제질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 이란, 이라크, 최근 이스라엘 문제 등 역동적이고 다변적인 관계를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제가 최근 읽었던 책으로 『추락하는 제국』과 『새로운 제국주의와 저항』이 있는데 다음 공부모임에서 읽을 책으로 추천합니다.

좌세준 예. 그러면 다음 모임은 황변호사님이 추천하신 두 권의 책을 읽기로 하고, 같은 주제의 책들을 추가로 몇 권 선정해서 계속 읽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모임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변활동 \_공부모임 1 0 오

• 회원이야기

즐거웠던, 조금은 아쉬웠던 2008년 민변 송년회

글 **이한본** 회원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네요. 민변 송년회를 언제 했는지 지난 메일을 뒤져서 날짜를 알아냈습니다. 2008. 12, 22. 월요일에 2007년 송년회를 했던 장소인 서초동 큐브 아고라에서 민변 송년회를 했습니다.

지난 송년회 때에는 매우 일찍 가서 오는 분 모두에 게 인사를 할 수 있었는데, 이번 송년회에는 다음 날 재 판 준비를 마치고 가다 보니 원래 시작시간인 19:00보 다 한 시간 늦은 20:00 정도에 도착을 했

답니다. 같은 사무실 에 있는 새내기 회원을 데려가려고 애썼는데, 다른 일정이랑 겹치니 아무래도 아는 사람이라고 저밖에 없는 민변송년회에 가는 것을

조금 꺼리더군요. 게



다가 저는 차를 가지고 갔고, 혈중 알콜 농도 0.05% 이내로 술을 마실 것을 미리 작심하고 갔답니다. 쩝… 의사가 술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뭐, 간수치가 높아 서라기보다는(간수치도 높긴 하지만) 직접적인 증상이나타나는 스트레스성 난청에 시달리는 중이라서요… 어쨌든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송년회에 참가하여 저의재미는 좀 떨어졌겠지만 아마도 이 송년회 후기의 정확성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이제 3년차로 들어가는 회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경험한 지난 2007년 송년회와 비교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둘 다 참석하신 분은 느끼셨겠지만, 많은 수의 인턴들이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송년회와 비교하면 참석 회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08년 신입회원 수가 50명이 넘는 것을 상기하여 보면 참석률은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난 송년회 때에는 여러 회원님들이 떠들썩하게 늦게까지 술잔을 기울였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다 파악하지는 못했겠지만 눈에 띄는 신입회원은 두 분이셨는데(제가 얼굴을 모르는 신입회원이 참석하셨다면 죄송…), 제 자신도 신입회원과 함께 송년회에 참석하지 못한 입장이지만 어쨌든 모두들 반성하시고 올해 송년회에는 아는 신입회원이 있다면 사무실까지 찾아가서 손 꼭 잡고 질질 끌고 오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민변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총회와 송년회 딱 2번이니까 모든 회원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흔히 민변 계열이라고 말하는 펌에 계신 대표변호사님, 구성원 변호사님들~신경 써주셔야겠는데요. 그리고 평소에도 신입회원들에게 많은 관심을 쏟고 친한 척해야지만 쑥스러워하지 않고 송년회 행사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송년회에는 그간의 여느 송년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획기적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번 송년



회에는 민변 인턴들이 참석을 하였고, 공연을 준비하였지요. 깜찍한 인턴들이 의상을 맞추어 입고 나와 율동과함께 "사방사방" 노래를 부르고 "노바디" 댄스를 췄답니다. 흠~ 그야말로 장내는 열광의 도가니탕이었다고할까나. 저는 인턴들 공연이 있을 때 여성위원회 회원분들이랑 같이 있었는데요. 그 젊음과 깜찍함에 부러움의탄식을 쏟아내시며ㅎㅎ 제가 너무 좋아라하니까 약간의경계의 눈초리도 보내시며. 흠흠. 아니 뭐 저는, 혹시 반응이 시원치 않으면 우리 인턴들께서 혹여라도 쑥스러워 하시거나 민망해 하실까 그랬지요.

인턴들의 공연으로 후끈 달아오른 가운데서 영상을 보고, 퀴즈를 진행하였는데, 역시 민변과 관련한 퀴즈였 습니다. 테이블 별로 팀을 나누어 퀴즈를 진행하여 제가 있는 여성위원회 중심의 테이블과 다른 한 테이블이 동 률을 이뤘지요. 우승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저와 신입회 원인 김지미 회원이 앞으로 나와 인턴들이 했던 "노바 디" 댄스를 누가 더 잘 따라 하는가를 시켰답니다. 쩝. 뭐. 그때 눈 버리신 회원님들께 죄송. 제가 나와서 웃기 게도 잘 해 버리면 재미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퀴즈 1등상은 "1년간 민변 회비를 면제 받을 수도 있는 권리"였습니다. 집행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면제를 받 을 수 있다고 했는데, 과연, 퀴즈 1등상은 주최 측의 농 간이네요. ㅎㅎ 아니면 송년회 사회를 맡은 이재정 회원 의 귀여운 위트였는지도~ 그리고 소장품 경매도 있었 는데, 여러 회원님들이 고가의 소장품을 쾌히 기부하셔 서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경매가 진행되었답니다.

이후에는 회원님들이 자연스럽게 무대로 나와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강금실 회원님이 나오셔서 무대에서 춤도 추셨구요. 자리를 정리하고 한꺼번에 앉아서 술자리가 계속되었지요.

민변 송년회는 즐거운 자리이고 즐거워야 합니다. 민 변 활동이 대부분은 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회원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자 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새로운 회원들이 계속 생겨나고 현재 회원수가 500명이 넘은 상태에서 서로를 모두 알 수 없어서 조금은 어색한 자리가 될 수도 있을수 있기 때문에 모두들 즐거운 분위기로 만들도록 노력해야 하지 할 것입니다. 특히 조금 연차가 있는 회원분들이 저처럼 연차가 낮은 회원들이나 신입회원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물론 혼자 내버려 두어도 잘 노는 편이기는한데, 아무래도 기존 회원들도 오랜만에 서로를 만나게되니까 서로 반가와 하느라고 신입회원 들에 대한 관심이 아무래도 좀 적은 것 같네요. 즐거운 송년회 자리에기존회원님들이 부담을 가지시면 안 되겠지만 신입회원에 대한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는 부담은 팍팍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일찍 송년회 자리를 마치고 나왔지만 아마도 남은 회원님들이 큐브 아고라에서 나올 때쯤에는 새하얀 눈이 펑펑 내리고 있을 때였을 겁니다. 집에 들어가시는데 애 좀 먹었겠지요.

2008년은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는데, 민변도 이것저것 많이 힘들었고, 회원님들도 많이 힘들었고, 물론 국민들 전체가 많이 힘들었지요. 힘든 만큼 민변이 한 일도 많았고 어느 정도는 뿌듯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년 송년회 때에도 많은 즐거운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2009년 힘차게 보내시고, 특히 많은 신입회원, 기존회원 손에 손 잡고 오셔서 행사 장소가 발 디딜 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009년에도 민변 화이팅!!!



# 회원이야기

# 민변 신년산행, 라백산을 가다

글 **김선수** 회원

민변에서 1월 17일(토요일) 2009년 신년 산행으로 태백산을 찾았다. 작년 11월에 산행을 하기로 결정하고, 12월에 구체적인 날짜를 결정했다.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해서 버스를 대절하여 가기로 했었다. 민변 전체 차원의 행사로 장거리 산행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서어(瑞語)모임을 통해 내가 먼저 가봤다는 이유로 전체적인 기획과 추진을 내가 책임지기로 했다. 등반 '대 장'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대장(隊長)이라는 직책은 등 반대장과 성가대장만 맡을 수 있다는 말도 들렸다. 한 마디로 출세했다는 것이다.

가능한 한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초대의 글을 작성하여 보내고, 구체적인 준비를 위하여 다음에 조 구별과 일정 그리고 준비물 등에 대한 안내문을 보냈다.

'대백산 산행에의 초대 글'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은 다음과 같이 작성했다.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인 태평양 마리아나 해구.에베레스트 산의 해발보다 더 깊은 11,000미터 깊이의 그곳. 그 바다를 보지 못했지만, 순백의 상고대(樹霜) 또 는 눈꽃을 배경으로 한 태백산 하늘이 바로 그 바다의 색일 것입니다.

프랑스나 스페인 화가들 중 맑은 지중해에 반해 파란색을 즐겨 사용한 이들이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클레인블루(IKB)'로 유명한 이브 클랭이 대표적이고, 피카소도청색시대를 거쳤습니다. 우리나라 추상화가인 김환기도 '환기블루'라는 조어가 있을 정도로 푸른색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태백산 하늘의 맑고 짙은 푸름은 인간이만든 것과는 그 질이 다릅니다.

일상이 고됩니까? 꿈과 비전과 희망이 없는 현실입니다. 앞이 깜깜할 지경이지요. 앞으로 진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도 부족한 판에 거꾸로 돌아가려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온몸으로 막고 발버둥치자니 힘도 들고 지치기도 합니다.

'살아 천년 죽어 천년'의 주목은 태백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수령 600년이 넘는 주목은 가운데가다 색어 텅 비었습니다. 몇 백 살이 넘는 주목들은 줄기의 7,8할이 죽어 외과수술을 했지만 나머지 부분만으로 꿋꿋하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푸른 잎에 눈과 얼음을 뒤집어쓰고 인고의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주목 앞에서 하잘것없는 우리네 인생의 사소한 어려움을 털어버리시지요.

행여 날이 흐리거나 눈이 와서 푸른 하늘을 보지 못하면 또 어떻습니까. 단군조선시대부터 하늘에 제사를지낸 '크게 흰 산' 정상의 천제단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 특히 이 땅의 80 아니 90에 해당하는 무지렁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한 해를 맞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쁘겠지만 하루만 빼내 이 향연에 함께 하시지 않겠 습니까.

#### 전체적으로 41명 참여

얼마나 참여할 것인지 적이 걱정되었다. 아이들 8명을 포함하여 39명이 버스를 이용했고, 촛불집회커플 2명이 승용차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41명이 참여했다. 초등학교 3학년생부터 환갑이 넘은 대선배(고 조영래 변호사님과 대학 동기이신 안변호사님)와 대학시절부터 산악회 활동을 하고 현재도 해외원정도 자주 나가며 우주인선발대회에 출전하여 1차 예선을 통과했던 박변호사님 등 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었다. 그런 대로 성황을 이뤘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7시에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7시 50분쯤에야 출발하 게 되었다. 30분 정도 늦을 것으로는 예상했으나 좀 더지체되었다. 버스가 출발한 후 대장으로서 인사를 하고 조편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1조는 화방재에서 출발하고 2조는 유일사매표소에서 출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전반적인 의견이 화방재에서 시작하는 코스가 거리는 멀지만 경사가 완만하므로 눈길을 고려하면 천제단까지는 모두 화방재에서 함께 올라가는 것이 낫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 버스에서의 인사

등반대장으로서 산행에 대한 안내 겸해서 인사말을 했다.

「저는 회장님의 건강을 담당하는 부회장입니다. 회장 님이 너무 바쁘게 활동하느라 건강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산에 모시고 다니면서 건강 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제가 2007년 12월에 태백산을 한 번 찾았다가 너무 황홀한 광경을 보고 그러한 장면을 한 명이라도 더 많이 같이 나누기 위해 오늘의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태백산(太白山)은 크게(太) 흰(白) 산(山)입니다. 우리

민족을 백의(白衣)민족이라고 하지요. 단군시대부터 하늘에 제시를 드린 산입니다. 민족의 정기를 받을 수 있는 산에서 새해를 힘차게 맞고, 추억에 남는 좋은 경험이 되길 바랍니다.

버스로 1시간 30분 내지 2시간 정도 가서 치약휴게 소에서 한 번 쉬겠습니다. 다행히 어제 눈이 와서 상고 대를 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상고대를 보려면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고 합니다. 우선 전날 눈이 와야 하고, 그리고 물기가 있을 정도로 푸근했다가 얼어 붙을 정도로 기온이 떨어져야 하며, 그리고 당일에는 화창하게 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행운을 맛볼수 있을지요?

무엇보다도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몸 상태에 맞게 코스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제단에서 식사를 하 고 간단하게 시산제를 드릴 예정입니다.

산에 오르면서 나무도 보고 이름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이름을 불러주어야 친구가 되듯이, 나무도 이름을 불러주어야 친구가 됩니다. 제가 세 가지 나무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행하면서 찾아보고 이름을 불러주고 그래서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낙엽송입니다. 산행 처음 시작할 때와 마지막 내려올 때 등산로 초입에 빽빽하게 조림되어 있을 것입니다. 길쭉하게 한 줄기가 솟고 잔가지들이 층층이 둘러 났습니다. 소나무 송(松)이 붙어 있습니다. 잎이 소나무와 같이 침엽수입니다. 그런데 잎이 떨어져 낙엽(落葉)입니다. 보통 침엽수는 상록수가 많습니다.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 주목, 구상나무, 삼나무 등등. 낙엽송의다른 이름은 일본이깔나무입니다. 우리나라 자생종이아니고 일본에서 들어온 것이어서 '일본'이 앞에 붙습니다. 이깔은 '잎갈'이라고도 합니다. 잎을 떨어져 새로갈기 때문에 잎갈입니다. 낙엽송은 늦가을에 노랗게 단풍이 듭니다. 높기 때문에 낙엽송의 단풍은 좀 떨어져서



보아야 제대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보통 군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노랗게 물든 낙엽송의 군락은 참으로 환상 적입니다.

다음으로 자작나무 종류입니다. 자작나무는 생가지도 불을 붙이면 자작자작 소리를 내면서 타기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워낙 추운 지방에서 자라기 때문에 줄기가 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나무껍질 밑에 기름이 있어 보온을 합니다. 그 기름기 때문에 잘 타는 것입니다. 우 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자작나무는 백두산에 가야 볼 수 있고, 남한에서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 자작나무는 인공 적으로 심은 것입니다. 강원도 도로를 달리다가 보면 도 로가에 자작나무를 많이 심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작나무는 러시아와 북구의 나무입니다. 러시아 이동파 화가의 풍경화를 보면 자작나무를 그린 것이 많습니다. 빈분리파 화가 클림트의 그림 중에도 자작나무가 있습 니다. 자작나무에서는 혁명의 냄새가 납니다. 바이칼호 수 근처에도 자작나무 숲이 있습니다. 껍질로 공예품을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자작나무는 껍질이 희고 가로로 평행하게 갈라집니다. 자작나무 껍질을 벗기면 종이와 비슷한데, 거기에 편지를 써서 보내면 맺어지기 어려운 사랑일수록 맺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그런 인연을 만들 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작나무를 산에서 만날 수는 없고 자작나무 사촌인 거제수나무와 사스레나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거제수나무는 사스레나무보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거제수나무는 껍질에 붉은 기운이 있고, 사스레나무는 순백색에 가까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천제단에서 문수봉으로 가는 능선에 사스레나무 군락이 있습니다. 거제수나무와 사스레나무의 이름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여기저기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입니다. 빨간(朱) 나무(木)입니다. 줄기가 나이를 먹으면 빨갛게 되고, 또 열매가 빨갛습니다. 가을에 잎 밑에 열린 열매를 보면 빨갛고 말랑말랑한 과피 안에 씨앗이 들어 있는데, 과피의 아래 가운데부분이 뻥 뚫려 있습니다. 주목은 보통 '살아 천 년 죽어 천 년'이라고 합니다. 죽어서도 썩지 않고 고사목으로 천년을 버립니다. 장군봉에 오르기 전에 주목군락이

있습니다. 600년 이상 된 주목도 있으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줄기의 80-90%가 죽어서 외과수술을 한 나 무들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나머지만으로 생명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나무 앞에서 우리가 사소한 일상 생활의 아픔 때문에 괴로워한다면 너무 부끄럽지 않겠 습니까?

이 정도의 나무들을 확인하고 이름을 불러준다면 산행이 더욱 재미있을 것입니다. 오늘 수고해 주실 기사님께도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산행 코스 및 일정

산행은 서초동 출발(07:50) → 화방재(12:00) → 산령각 (山靈閣) · 사길치 · 유일사 갈림길 → 주목군락 → 장군 봉(1,567m, 15:00-15:40) → 부소봉 → 문수봉 → 소 문수봉 → 당골광장 → 제2주차장(17:50 출발) → 영월 동강올갱이해장국 식당(19:00-20:00) → 서초동 (23:00)의 일정과 코스로 진행되었다.

버스로 이동한 일행은 모두 화방재에서 산행을 시작했다. 다만 아이 2명은 버스로 당골로 직접 가서 석탄 박물관을 구경했다. 승용차로 온 한 커플은 유일사매표 소 쪽에서 시작했다. 12시가 돼서야 등산로 입구인 화방재에 도착했다. 서어모임을 같이 하고 있는 장부회장이 선두그룹을 책임지고, 2명의 베테랑이 후미를 책임졌다. 원래 천제단에서 모두가 모여서 시산제를 지내고식사를 같이 할 예정이었으나, 선두와 후미 사이에 최소한 30분 이상은 차이가 났다. 선두그룹에게 먼저 점심을 먹고 기다라라 했다.

후미그룹은 3시 가까이에 천제단에 도착했다. 후미그룹은 선두그룹이 모여 있는 곳을 지나쳐 천제단 바로 옆에서 식사를 했다. 발열도시락이라고 해서 열을 내 밥





과 마파두부, 자장 또는 카레를 데워서 뜨겁게 먹을 수 있는 것이었다. 한 회원이 추천하여 사무국에서 준비했다. 음식을 데운 후에도 열기가 오래 남아 있어서 손을 덥히는 데도 유용했다. 준비한 막걸리를 한 잔씩 했다. 선두그룹에서는 장부회장이 준비해온 꼬냑으로 몸을 풀었다고 했다. 후미그룹은 표변호사가 준비해온 앱솔루트 보드카로 몸을 풀었다.

천제단에서 모두가 모여서 기념사진을 찍고 시산제를 지냈다. 시간이 늦어서 시산제를 생략할까 순간적으로 고민했는데, 사무총장이 술과 과일 등 준비해온 것이 아깝다며 강력하게 권했다. 결과적으로 지내길 아주 잘했다. 준비해간 북어와 과일을 바위 위에 올려놓고, 막걸리로 헌주했다. 약식으로 간단하게 진행하려 했는데, 최연장자이신 안변호사님께서 주도하시는 바람에 제대로 된 정식의 절차로 진행했다. 그리고 음복으로 막걸리를 나누어 마셨다.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 되었는지 1조 그룹은 시산제에 참여하지 않고 바로 떠났다. 1조는 능선을 타고 문수봉을 거쳐 내려오고, 나머지 2조는 반재 쪽으로 해서 내려왔다. 나는 시산제를 마치고 1조 코스를 선택했다. 지난번에는 소문수봉에 오르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소문수봉도 경유했다. 상당히 급하게 내려와야 했다.

반재 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특이사항이 없이 밋밋했다고 한다. 문수봉 쪽을 보니 그쪽으로 올 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2조가 30-40분정도 먼저 내려와서 기다렸다.

#### 시산제(始山祭)

시산제는 처음 지내봤다. 인터넷 등을 검색해서 기본적 인 절차와 축문 작성 요령을 파악했다. 축문을 미리 작 성해 갔고, 전체적인 진행을 맡은 사무총장이 낭독했다. 절을 몇 번 해야 하는지에 대해 두 번(再拜)이라는 견해와 세 번(三拜)이라는 견해가 대립하였는데, 우리는 세번 하기로 했다. 산 사람에게 한 번, 죽은 사람에게 두 번, 그리고 산신에게는 세 번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우리는 회장이 焚香, 降神(제주가 분향 후, 잔의 술을 세 번 나눠붇고 삼배)하는 것으로 시작해, 參神(제주 및 참가자 전원 산신께 삼배), 初獻(제주가 헌주 후 삼배), 讀祝(제주는 꿇어 앉아 있고, 축관이 독축), 亞獻(헌관이 헌주하고 삼배), 終獻(희망자들이 헌주하고 삼배), 辭神(참가자 모두 삼배 후 종료), 飮福(차린 음식을 나누어 먹음)이라는 순서에 따라 제법 그럴듯하게 시산제를 올렸다.

우리가 읽은 축문도 제법 의미심장한 것이다. 「유세차 단기 4342년 서기 2009년 1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일동은 바야흐로 희망을 밝히는 찬란한 새해를 맞으며 백의민족의 시원인 크게 흰 산 태백산을 찾아 천지신명님께 고하나이다. 작년에 국내정권의 변동과 세계적 경제위기로 말미암아온 나라와 만백성이 도탄에 빠져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회원들이 바쁘고 많은 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세상사가 고달프고 어려울수록 산을 찾아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자연의 섭리와 삶의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한 자리에서 천 년을 지키는 주목(朱木)에게서 꺾이지 않는 의지와 인내의 자세를 본받고자 합니다. 푸르른 하늘을 우러러 올 한 해 이 땅의 서민과 함께 고난을 해쳐 나가고 희망과 행복을 만들어 갈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회원들과 가족의 안녕과 행복, 그리고 이 땅모든 민초들의 희망을 갈구하면서 고하노니

천지신명이시어, 이 한잔 술을 흠향能變하여 주옵소서. 단기 4342년 서기 2009년 1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일동,

#### 산행스케치

날은 맑았고, 기온도 괜찮은 편이었으며, 바람도 그리 강하게 불지 않았다. 전날 서울에는 많은 눈이 왔는데, 태백산에는 눈이 온 것 같지 않았다. 그래도 나뭇가지에

는 눈꽃이 피어 있었다. 투명한 상고대는 아니었지만 그 래도 충분히 매력적인 설화(雪花)를 감상할 수 있었다. 짙은 파란 색 하늘을 배경으로 한 눈꽃에 참여한 회원 들 모두가 잘 왔다고 해서 나도 기분이 좋았다.

사람은 꽤나 많은 편이었다. 유일사 갈림길에서 천제 단까지 올라가는데 줄을 서야할 판이었다. 주목군락지 광장과 천제단은 시장처럼 벅적거렸다. 그래도 눈꽃축 제 기간에 비하면 양반이란다.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것이니 긍정적으로 생각해 도 좋을 것 같다.

등산로는 눈길이나 워낙 많은 사람들이 다녀서 다져 졌다. 그렇다고 얼음이 얼은 것은 아니다. 급한 내리막길이 아니면 아이젠을 하지 않아도 무방할 정도였다. 버스에서 설명한 대로 등산로 처음과 끝의 낙엽송 숲, 국도 옆의 자작나무와 천제단에서 문수봉 사이 능선의 사스레나무 그리고 그 밑 지역의 거제수나무, 주목군락지의 주목이 전의 모습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다. 소문수봉에서 내려오는 길에 거제수군락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부소봉 자락은 눈꽃터널을 이루고 있다. 문수봉에서 내려오는 제당골 계곡은 깡깡 얼었다. 병풍바위가 여러 폭으로 둘러치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당산목 앞에서는 노년의 부부가 소원을 빌고 있었다. 당골광장에서는 1월 말부터 열리는 눈꽃축제 준비로 한창 공사 중이다. 나무한 그루 전체를 얼려버려 지나는 이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멋이 있기는 하지만 나무에게는 못할 짓이 아닌가?

어둠이 몰려오기 직전의 당골 앞산 능선이 선명했다. 큰 키의 나무들이 정상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확연하 게 드러났다.

#### 고생한 사람들

우리 일행 중 가장 막내는 초등학교 3학년생이다. 아빠인 심재환 변호사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 초등학교 3학년인데도 싫은 내색 하나 내지 않고 거뜬하게 소화해냈다. 큰 아이는 서초동에 도착해서 다음에 또 오라고했더니 오늘 코스는 너무 따분했다고 한 마디 했다.

회장의 둘째 딸은 초등학교 6학년이다. 화방재에서



오르는 초반부터 엄마와 신경전이다. 내키지 않는데 부모 따라 억지로 올라가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뒤에서 살펴보니 철저하게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오르고 있었다. 결국 문제없이 코스를 소화했다. 아침에 출발을 지체하게 했던 장본인인 정간사는 화방재에서 약간 올라간 지점에서 등산화의 뒤축이 덜렁거렸다. 끈으로 적당하게 묶고는 결국 코스를 무난하게 소화했다.

사무총장 부부도 고생했다. 작년 12월 조영래 변호사 님 산소를 찾은 후 천마산에 올랐을 때 사무총장은 조 금 올라가다가 중간에 그만둔 적이 있었다. 화방재에서 오른 직후부터 부부가 같이 힘들어 했지만, 그래도 무난 하게 마쳤다. 우리의 사무총장은 시간이 갈수록 기운이 넘쳤다.

#### 다음을 기약

예정보다 전체적으로 약 2시간 정도 늦었다. 그래도 별탈 없이 성공적으로 마친 것만으로도 대성공이다. 저녁은 영월에서 변호사활동을 했던 표변호사의 제안에 따라 영월로 나와서 동강올갱이해장국 식당에서 했다. 족발, 배추지짐, 메밀전병이 맛있다고 별도로 주문해서 소주와 함께 풍족하게 먹었다. 올갱이해장국도 시원한 것이 일품이었다.

다행히 모든 참여자들이 만족해하는 것 같았다. 또 기회를 마련해 달라는 의견도 많았다. 상황을 보아 야생화가한창일 때인 5월초 쯤 강원도의 산을 다시 찾는 것을 기획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 회원이야기

# 길 위에서 길을 묻는다

\_글 **임종인** 회원(17대 국회의원)

#### 미네르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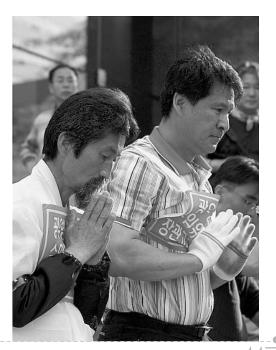
결국 권력은 '공익을 크게 해쳤다'는 죄목으로 미네르 바를 인신 구속했다. 그가 해쳤다는 공익은 과연 무엇일 까? 인터넷게시판에 쓴 그의 글 하나가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국가신인도가 과연 법이 보호해 야 할 공익에 속하는 것인지도 의문스럽지만, 설령 그렇 다 해도 과연 얼마만큼 떨어졌으며 그로 인해 우리 사 회가 입은 공익의 손상은 어느 정도인지 온전히 죄질을 측량하고 입증할 수 있을 것인가가 더 큰 의문이다. 온 (on)세상의 사람들이 미네르바에게 보낸 열광의 이면에 는 마치 국가의 존재 이유가 기득권의 탐욕 실현이라도 되는 양 시대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상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중구난방의 대책을 쏟아내는 벌거벗은 권력을 향한 아유가 또렷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 그의 구속과 더불어 그 야유의 대상과 범위는 더욱 확장됐다. 무엇보다도 법 그 자체가 권위의 실추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분명 세상은 '막걸리 반공법' 시대 로 회귀하고 있다.

일찍이 루소는 "자유로운 시민은 오직 법에만 복종하며 타인에 의한 지배를 강제당하지 않는다.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법의 힘이다"라고 말했다. '법의 지배'가 정당한 것으로 승인되는 이유는 법이 사람 위에 존재하는 그 무슨 영물이라서가 아니라. 루소의 말처럼 부

당한 권력의 행사나 강제적인 지배로부터 '시민들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정의로운 것'이라고 개념지워지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두드러진 현상은이 같은 '법의 지배'의 의미가 법의 '자의적 동원에 의한' 지배로 둔갑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 집행의 정당성여부는 그것이 '누군가를 규율함으로써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선량한 시민들을 억압하려는 것'인지에 달려있다. 또한 공익이란 다짜고짜 무조건 전체의 이익이나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매 맞는아내나 상습적으로 돈을 떼이는 하청업체처럼 누군가의부당한 권력 행사나 강제적인 지배로 인해 침해당하는선량한 시민들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이익을 말하는 것이다.

지금 미네르바를 옥에 가둔 법은 과연 시민의 소중한 자유를 보장하는 정의의 보루로 작동된 것인가, 아니면 권력의 심기보존을 위해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전략한 것인가? 과연 미네르바로 인해 부당하게 침해당한 선량한 시민들의 이익이란 무엇인가? 혹여 누군가의 부당한 권력 행사로 인해 미네르바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자신의 이익을 억압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구치소에 갇힌 미네르바가 진짜 미네르바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다. 머리는



비었으나 힘은 철철 넘치는 이 권력이 '지배자의 결정에 무조건 복종하고 침묵하라'는 명령과 함께 지금 옥에 가둔 것은 법의 이름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선량한 시민의 자유와 인권이기 때문이다.

민변 창립 21주년을 맞는 해에 이처럼 말할 가치조차 없는 일에 관해 다시 말해야 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서 글프지만, 그래서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민주사회인가 아닌가?

#### 입법 전쟁

언술 그 자체에서 권력의 왜곡된 상황 인식이 그대로 베어 나온다. 그들에게 입법이란 민주주의의 중요한 작 동 과정이 아니라 타격해야 할 군사적 전략목표이며 반 대당은 곧 적이다. 전쟁의 외중에 여권 인사들의 입에서 가장 자주 나온 얘기가 '민주주의의 원리는 다수결'이 라는 말인데 그 의미구조는 '다수당인 자신들에게 복종 하라'는 것이며 '복종을 거부하면 응징 하겠다'는 것이 다. 이야기 전개에 앞서 우선 잘못된 개념부터 바로잡 자 첫째 민주주의의 원리는 다수결이 아니라 '다수의 지배'다. 다수결은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의사결정방 법의 하나일 뿐이다. 둘째, 다수의 지배는 '원내 다수당 의 지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다수는 '국민들 가운데 다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원내 다수당' 은 다음 선거까지 불변일지 몰라도 '국민들 가운데 다 수'는 개별사안별로 계속 그 구성이 변한다. 따라서 선 거가 끝난 뒤에도 민주주의의 과정은 중단되지 않는 것 이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수결이 아니라 참여다. 민주공화국 자체가 신분제의 구질서를 철폐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배할 뿐 그 누구에게도 지배당하지 않는 '시민'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들이 사회의 주인으로서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participation)해서 함께 세운 나라다. 이때 참여란 무엇인가? 대표자 선출과 입법을 포함한 모든 공적 사안들에 관한 합리적 토의와결정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즉 참여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과정이며 따라서 참여

가 배제되는 순간 나라의 이름을 뭐라 붙이든 간에 그 나라는 귀족국가나 왕조국가, 혹은 전체주의 국가로 되 돌아가게 된다. 그리고 당연히 중요한 것은 누구나 동 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이므로 상대적 소수나 약자 라 할지라도 배제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이다

만약 다수파의 의견이 전체의 의견인 양 일방적으로 관철되고 소수파의 입장이 일상적으로 억압된다면 그것은 다수의 횡포이며 그 자체로 구조적 폭력이다.

원내 다수당은 총선을 통해서 국정운영을 주도하라는 총론적인 위임을 받은 것이지 모든 개별정책의 각론에 대한 백지위임장을 들고 민주주의의 과정마저 생략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충분한 사회적 토론이나 원내 합의 과정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다수결이니 무조건 복종하라'며 그 무슨 전쟁을 선포하고 나서는 것은 바로 독재의 논리이며 반대당의 극한투쟁은 그 당연한 반작용이 된다.

지난 1월 12일 이명박 대통령은 새해 첫 라디오 연설에서 '해머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때렸다'며 연말 임시국회에서 벌어진 폭력사태를 개탄했다. 또한 '분열을 조장하고 통합을 가로막는 정치적 양극화야말로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말은바로 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때린 것은 해머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과정을 무시하고 입법전쟁을 선포한 다수당의 오만이며, 지금 '분열을 조장하고 통합을 가로막는' 것은 국회의권위와 야당의 존재를 무시한 채 무조건 밀어붙이라고 '속도전'을 주문하는 대통령 자신이다. 민변 창립 21주년을 맞는 해에 이처럼 말할 가치조차 없는 일에 관해다시 말해야 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서글프지만, 그래서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민주사회인가 아닌가?

#### 촛불과 촛불

대통령 탄핵사태를 맞아 새로운 세상을 향한 열망을 모 아 밝혀들었던 2004년 봄의 촛불은 불과 4년 뒤인



2008년 봄 배반의 시대를 향한 절망의 촛불로 바뀌었다. 그리고 촛불로 시작해서 촛불로 끝난 17대 국회. 그 안에 내가 있었다. 지난 해 촛불시위의 현장에서 삼보일배를 했던 것은 속죄의 의미였다. 무릎에 심각한 무리가올 수 있다며 의사가 중단할 것을 권고했지만 그래서도중에 멈출 수 없었다. 노무현 정부 5년의 좌절과 실패는 결국 민주개혁세력의 몰락과 수구보수세력의 재집권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시간을 거슬러 끊임없이 거꾸로, 거꾸로 가는 것이 그들이 보인 행태의 전부였다. 강기갑 의원과 함께 청와대까지 가는 동안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었던 것 은 '나는 진짜 최선을 다했는가? 이 비극적인 사태에 나의 책임은 없는가?'였다

물론 나는 열심히 노무현 대통령에게 반대했다. 국가보안법, 이라크파병, 대연정, 대추리 사태, 한미FTA, 비정규직 법안 등등. '그러려면 차라리 당을 나가라'는 모욕을 받아가며 그때마다 반대하고 또 반대했다. 그 일들은 모두 2002년 대선과 17대 총선 민의에 정반대되는 정책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는 열심히 했지만 결국 막아내지는 못하였다. 막지 못했으니 반대했다고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었다.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사망선고를 받은 열린우리당은 잘못을 고치는 대신 통합논의에 매달렸다. 한나라당 집권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그길은 한나라당 집권을 돕는 길이었다. 성난 민심 앞에서

잘못을 고칠 생각은 안하고 정권을 못 넘겨준다고 손에 쥐고 버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결국 그해 연말 당은 공개적으로 정계개편을 선언했다. 그것으로 백년 가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약속마저 물거품이 되었다. 나는 고심 끝에 통합신당에 동참할 수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2007년 1월 22일 당을 '가장 먼저' 탈당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책임지는 자세가아니었기 때문이다. 결국 나를 뺀 열린우리당 의원 전원과 한나라당의 손학규씨가 합류해서 만든 대통합신당은대선에서 대참패를 했다.

총선을 앞두고 대통합신당은 민주당과 통합하며 당명을 다시 통합민주당으로 바꾸었다. 입당해야 한다는 주위의 권유가 많았지만 나는 역시 그 당에 갈 수 없었다. 이름을 바꾼다고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었다.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했다. 결국 나는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낙선했다. 그러나 다시 나에게 묻는다. '나는 진짜 최선을 다했는가?'이 비극적인 사태에나의 책임은 없는가?' 반대하고 낙선했다고 책임이면해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촛불로 시작해서 촛불로 끝난 17대 국회. 그 안에 내가 있었기 때문이다.

#### 길 위에서 길을 묻는다

어느 여름날을 지나며 촛불시위는 잦아들었고 그 사이 17대 국회 임기도 끝났다. 의원 생활 동안 나는 국방위 원회와 법사위원회 소속이었는데, 그러나 나의 또 다른 관심은 경제와 복지였고 틈틈이 관련 공부를 하면서 북 유럽 사민주의 국가들을 꼭 한 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해마루에서 변호사 업무를 재개하는 것으로 진로를 정하고 나니 중간에 남는 기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은지 정하는 일이 나머지 과제였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런 자유시간이 다시 쉽게 올 것 같지 않다는 생 각이 들었다. 긴 여정은 아니지만 핀란드는 교육, 스웨 덴은 노사관계 - 이런 식으로 국가별로 이슈를 정해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그동안 궁금했던 사안들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면 나름대로 알찬 수확을 거둘 수 있겠 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렇게 해서 떠난 여행은 8월20일부터 9월19일까지 한 달 동안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아일랜드 등 북유럽 5개국을 차례로 방문하여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복지에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복 지국가모델을 탐방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 짧은 지면에 그 내용을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인 상 깊었던 몇 가지만 소개하면 스웨덴(900만)을 제외하 고 모두 인구 500만에 불과한 작은 그 나라들은 추운 기후와 척박한 땅을 가졌지만 매년 국가경쟁력 1.2.3위 를 다투는 강국들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원동력은 그들 특유의 사회모델이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경우 같은 일을 한다면 어느 직장에 다니건 같은 임금을 받 게 한다

그리고 비정규직은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오히 려 정규직보다 임금을 더 준다. 비정규직 비율은 10% 밖에 되지 않으며 반면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80%에 이 른다. 만약 한국적 상식에 따른다면 이런 조건에 놓인 스웨덴 경제는 노사분규로 인한 고비용저효율로 인해 진작 망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불과 100년 전만해도 후발국가였던 스웨덴은 볼보(자동차), 에릭슨(통신), 일

렉트로스(가전). 이케아(가구)같은 세계 일류기업을 보유 한 경제 강국이 되어있다.

이런 현상이 가능한 이유는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은 근로자이고. 근로자 대우를 잘해줘야 기업도 산 다'는 사회적 합의와 더불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제도의 정착과 소득의 편중 없이 보통사람들도 고 루 잘살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정 부가 교육비와 의료비를 거의 무료로 해주고. 연금과 주 거를 보장하며 정리해고 된 실업자들을 '적극적 노동시 장 정책'으로 보살피기 때문에 기업이 부담해야 될 총비 용은 줄어든다. 그 대신 기업은 불필요한 일에 노동력이 낭비되지 않게 하고 연구개발과 경역혁신으로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비 정규직의 비율을 높여 인건비를 줄이고, 대기업은 중소 기업을 쥐어짜 원가절감을 한다. 이렇게 떠넘겨진 사회 적 비용을 짊어진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생산성과 효율 이 급강하하며 사회적 갈등이 구조화되는 악순환 구조 를 이룬다.

여행을 하는 내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던 생각은 똑 같은 사람이 만들어낸 사회인데 어떻게 해서 저들과 우 리는 이토록 다른가? 하는 의문이었다. 빛나는 문화유 산과 높은 교육 수준 그리고 세계 11~13위 수준의 경 제 규모를 가진 우리나라는 저들과 비교할 때 결코 약 소국이 아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가진 역량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일까? 결론은 결국 정치가 문제라는 것이었다.

대학을 나와 평생 열심히 일 해도 집 한 채 가질까 말까인 나라의 국민에게 세계수준의 경쟁력과 근로의욕 을 기대할 수는 없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가진 것을 서로 나누며 열심히 일하는 보통사람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사회적 합의 없이 복지사회는 요원하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나마 이루어놓았던 민주화시 대의 성과마저 갉아먹으며 시간을 거슬러 거꾸로, 거꾸 로 '후진화' 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정치를 다시 바꿀 수 있는가? 길 위에서 길을 묻는다.

# 국제범죄와

International Crimes & Universal Jurisdiction



박찬운 지음 2009년 1월 30일 발행/한울아카데미 신국판/양장/384면 30.000원

박찬운 회원은 한양대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미국 노트르담 대학에서 국제인권법으로 석사학위(LL.M)를. 고려대학교에서 국제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회원으로 활발한 인권 활동을 해왔 다. 민변에서 사무차장 및 연구간사, 국제연대위원장 및 난민법률지원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의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섭외이사 를 역임했다

2005년부터 1년 반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정 책본부장으로 있으면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차 별금지법 권고 사형제 폐지 권고 양심적 병역거부 권 고 등 주요 인권정책의 실무 책임을 맡았다. 2006년 가을, 모교인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의 인권법 전임교수 로 부임하여 현재는 연구와 강의에 매진 중이며 이번에 「국제범죄와 보편적 관할권」을 출간하였다.

최근 국내외에서는 국제형사법 분야의 연구가 활발 히 진행 중이다.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의 발효 이후 국제형사재판소가 출범했고. 우리나라는 이에 가입했을 뿐만 아니라 재판관까지 배출했다. 또한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의 운영과정도 이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 들에게는 관심사항이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관심사에서 핵심적인 이론인 형 사관할권 이론을 연구한 것이다. 그동안 이 이론은 국제 형사법 분야의 핵심 이론임에도 특별히 소개된 바가 없 었고, 특히 이 이론을 국내의 형사법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는 더욱 연구된 바가 없다. 이 책이 그에 대한 답 을 줄 것이며,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보편적 관할권 이론을 전개하면서 형사관할권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즉 형사관할권의 일반적 기초 위 에서 보편적 관할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보편적 관할권에 관한 최근 10여 년간의 논쟁 중 대표적인 것을 모두 소개했다. 더불어 이에 관한 국 제사법재판소 등의 판례도 빠짐없이 소개했다.

셋째. 비교법적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무려 16개 국의 국내형사법을 조사하여 보편적 관할권이 어떻게 각국에서 수용되었는지를 조사했다

넷째. 이론의 소개가 공허하지 않기 위해 이 이론을 어떻게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우리 형법 등의 개정 시에 이 이론이 도입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방법론을 자세히 연구했다.

다섯째. 보편적 관할권과 관련된 국제원칙을 빠짐없 이 조사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알려진 프 린스턴 원칙에 대해서는 전문을 번역하여 부록으로 실 었다.

# ◉ 회원이야기

# 신념과 열정 그리고 민변의 꿈

\_글 **서민정** 1기 인턴

대학을 입학해 석사를 수료하는 7년 동안 나름 천직 이라고 생각해오던 역사학 공부를 접고 꿈꾸게 된 법조 인의 길. 다른 시공간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방인적 존재에서 벗어나 현재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동반자적 존재가 되고 싶어 새로이 선택한 길이었다. 그리고 이왕이면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자신의 목소리를 잘 낼 수 없는 사람들이 그들의 보호 영역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울타리를 엮는 작업을 하고 싶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인권법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며 경험을 쌓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의도전(?)은 시작되었다.

하지만 법조전문가 집단이라는 이우라가 워낙 강력했던 지라, '민변'의 존재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을 두드리는 일은 쉽지 않았다. 일천한 법적 지식에 가진 거라곤 의욕뿐인 내가, 분야별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는 거대한 단체에서 일을 할 수있을지, 아니 들어나 갈 수 있을 지 걱정이 앞섰다. 그렇게 여러 차례의 망설임과 주저함 끝에 드디어 마지막용기를 모아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내 우려와달리 '민변'의 문은 굳게 잠겨 있지 않았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열려 있는 문과도 같았다.

작년 5월 그렇게 나는 '민변'의 식구가 되었다. 사실 '민변'에 출근하던 첫 날은 적잖이 실망하기도 했다. 10 여개 넘는 위원회로 이루어진 법조인 단체라 사무실의 규모가 클 것이라 생각했지만, 소박하고도 작은 사무실의 공간을 간사님과 변호사님 두 분이 공유하고 계셨기때문이다. 하지만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그 작은 사무실에서 사회를 바꾸려는 거대한 움직임에 처음 참여하면서, 이곳이야 말로 '작은 거인'과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 움직임은 바로 9만6072명의 국민 청구인단을 모집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관한 정부 고시에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비록 작년 연말 헌법재판소가 '고시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려 아쉬웠지만, 밤을 새워가며 모두 한 마음으로 소송 준비 작업을 벌였던 그 당시의 느낌은 무어라 형언하기 어려운 묘한 것이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로 촉발된 촛불시위는 '민변' 의 존재감과 그 활동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계기 였다. 일종의 축제로서 시위의 새로운 문화를 열었다고 평가되던 평화적인 촛불시위는 시간이 흐르고 점차 규모가 확대되면서 폭력과 탄압으로 얼룩져 갔다. 물대포와 전경의 폭력적 진압에 부상자가 속출했고 집시법 위반 명목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경찰에 강제 연행되었다. 역사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 그 현장 가운데 바로 '민변'이 있었다. 창립 이래 시국사건의 문제제기와 변론을 담당해 온 '민변'은 이번에도 정부의 인권 유린 상황에 비판의 목소리를 드높였다.

연행된 시민들을 접견하고 피해상황을 파악해 진압 의 폭력성과 불법성을 고발하는 한편, 촛불시위 현장에 직접 참가해 시민들을 보호하고 그들과 함께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비판하였다. 밤을 새는 강행군을 마다하지 않고 매일 시위에 참여하는 변호사님이 계셨는가하면 시위 도중 큰 부상을 당한 변호사님도 계셨다. 그분들에게서 소위 말하는 법조인의 권위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 법조인으로서 앞으로의 내 삶이 어떠하여야 하는지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된 순간이었다.

촛불시위 외에 작년 한해 '민변'을 자극한 일이 또 있었다. 바로 한나라당의 악법 통과 움직임이었다. 2008년을 마무리해야 할 12월 말, 한나라당은 연내에 각종 개정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의지를 드러내었다. 비



정규직 기간 연장 법안, 종부세 개정안, 사이버 통제 법안, 방송법 개정 등 과연 시민을 위한 법안들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을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을 통해 통과시키려 하였다. 이에 '민변'도 29일부터 31일까지 2박 3일간의 악법 저지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변호사님들과 간사님들은 연말을 모두 반납한 채 사무실에서 새해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작년 한해는 분명 '민변'에게 공사가 다망한 해였다. 정부의 각종 돌출 행동들이 유독 많았기에 그에 대응하는 움직임도 자연히 분주해졌던 것이다. 그런데 약 8개월간 '민변'의 공간 속에서 살아가며 그 모든 모습들을 지켜본 나로선 문득 궁금증이 생겼다. 과연 '민변' 사람들의 활발한 움직임의 동력은 무엇일까? 눈을 막고 귀를 닫고서 다른 나라의 일처럼 치부하고 편하게 살아가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들을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사서 고생한다'는 말이 너무나도잘 어울리는 그 곳, '민변'의 사람들은 스스로 문제를제기해 일을 만들고 또 그것을 해결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높은 보수가 제공되지도 않는데 도대체 무엇이원동력인 것일까?

#### "신념과 열정"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 지난 8개월간 내 나름의 답을 내려 보았다. 상근 변호사님들과 간사님 을 비롯해 개개인의 본업과 '민변' 회원으로의 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여러 변호사님들이 늘 웃으며 열정적으 로 활동할 수 있는 데에는 바로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강 한 신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이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야말로 21년간 '민변'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 되어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처음에 꿈을 꾸지만, 사람을 만드는 것은 결국 그 꿈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자 늘 마음속에 새기려 노력 하는 말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약간의 어폐가 있을지 도 모르지만, 현재의 '민변' 도 결국은 '민변' 이 처음에 꾸었던 꿈. 즉 올바른 사회에 대한 신념에 의해 만들어 진 것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제 막 민변 의 1기 인턴으로서 그리고 법조인을 꿈꾸며 로스쿨에 진학한 나의 경우에도, 내가 어떤 꿈과 신념을 지니고 사느냐에 따라 내 미래의 모습이 정해질 것이다. 더욱이 3년이 시간이 흘러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되었을 때. 그 때 다시 '민변'의 회원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내 꿈과 신념이 결국 '민변'의 일부분을 형성하게 될 지도 모를 일이다. 왠지 모를 책임감이 갑자기 내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온다. 약 2개월간의 인턴 활동 기간이 남아 있는 지금, 나이를 먹더라도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내 신념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강함을 '민변'에서 배울 수 있도 록 더 충실히 활동할 것을 다짐해본다.

# ● 성명 및 논평

# 아래 내용 전문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홈페이지 http://minbyun.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성 명

살인적인 경찰의 강제진압이 부른 참사에 분노한다 2009-01-20

살인적인 경찰의 강제진압이 부른 참사에 분노한다

- 1.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상상할 수 없는 참극을 낳았다. 1월 20일 용산 재개발 지역 건물 옥상에서 농성중이던 철거민들을 경찰이 강제진압하는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 등 6명이 사망하고 십여 명이부상당하는 참극이 발생하였다. 모든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 2. 우리는 경찰의 살인적인 강제진압 방식에 전율하고 분노한다. 경찰은 마치 농성하던 철거민들이 테러리 스트라도 되는 것처럼 대테러부대인 경찰특공대를 콘테이너 박스에 태워 옥상에 직접 투입하고 물대포 까지 발사하는 무모한 진압을 시도하였다. 철거민들 이 화염병 등을 준비해서 저항하는 상황에서 이처 럼 강제진압을 시도할 경우 대형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음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경찰은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진압만을 최우선시하였던 것이다.
- 3. 우리 사회의 재개발 광풍 속에서 가난한 세입자들은 하루아침에 철거민이 되어 특별한 대책도 없이 터전 을 송두리째 빼앗겨 왔다.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곳 이 없는 이들의 요구는 절절할 수 밖에 없는, 지극히 정당한 것이다. 말로만 민생을 외치는 정부와 서울시 는 임시상가 등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철거민들의 오

랜 요구를 외면하여 왔다. 그런데, 철거민들이 농성을 시작하자 경찰은 불과 하루밖에 안되어 신속하게 강제진압을 실시하였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처사인가

- 4. 이번 참사는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시민 다수가 사망하였다는 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인권침해사건이다. 반드시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고 책임자들에 대한 엄벌이 있어야 한다. 우선 이번 강제진압 결정을 누가 어떤 경위로 내렸는지 반드시 밝혀져야한다.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경찰청장에 내정되자마자 직속 경찰특공대가 투입되었다는 점은 이 참사가서울경찰청장은 물론 정권의 뜻이 반영된 것임을 능히 짐작케 하는 것이다. 또한, 경찰의 살인적인 강제진압과 사망자 발생 과정의 실상이 밝혀져야한다.
- 5. 벌써부터 경찰은 철거민들의 불법을 묵과할 수 없었다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사건의 가해자인 공권력이 스스로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며, 오히려 진실을 덮는 일이다.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실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진상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 민변은 필요할 경우 즉각 전문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끝까지 진실규명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09월 1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

#### 용산 진상조사단 성명

## 검찰은 조급하고 불공정한 수사와 언론플레이를 중단하라! 2009-01-30

화재의 발화시점과 발화원인은 아직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검찰이 조사한 바와 같이 망루 내에 시너로 보이는 액체가 다량으로 유출된 상황이었다면 경찰의 진압행위는 그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울 때까지 마땅히 중지되었어야 한다. 결국 사람의 안위를 무시한 채적을 공격하듯 농성자 진압에만 혈안이 되었던 경찰의 진압작전이야말로 대형참사의 주요원인이다. 경찰은 농성 진압에서의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위반함으로써 대형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검찰이놓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점이다.

#### 성 명

## 위헌적인 제3자 개입금지 도입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 2009-01-29

정부는 용산 참사와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재개발 현장에서의 제3자 개입금지조항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용산 참사의 원인을 세입지들을 돕기 위한 단체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는, 그야말로 경악할 만한 수준의 대책이 아닐 수 없다. 이미 10여년 전에 스스로 폐지한 조항을 재개발 현장에서 부활하고자 하는 정부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논 평

#### 정부와 검찰은 부끄러움을 모르는가 2009-01-09

미네르바가 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이유는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전망이 속속 현실화하면서 경각심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를 키운 것은 다름아닌 정부의 실정과

무능력이었다. 이제와서 '무직자', '비전공자'라는 이력을 들먹이며 깎아내리는데 급급한 모습은 추하기 짝이었다.

#### 논 평

#### 악법철회, 지금부터 시작이다 2009-01-07

문제의 본질은 '악법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직 권상정'을 막는 것은 본질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관 문이었을 뿐이다. 악법 철회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다. 민변은 앞으로도 쟁점 법안의 위헌성, 법적 혼란을 야기 할 위험성을 지적하고,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숨은 악법 조항을 알리고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이다.

#### 송년성명

# 우리는 악법저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09-01-02

지난 며칠 우리는 매일 백척간두에 선 절박함으로 밤을 지새웠다. 우리는 철야농성을 12월 31일 24시에 잠정적으로 중지하지만,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비상체제를 확고히 유지할 것이며, 직권상정과 강행처리의 움직임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농성을 이어갈 준비가 되어있다. 새해가 시작되고, 모든 이가 새로운 희망을 꿈꾼다. 그러나 새해를 맞는 우리의 심정은 비장하기만 하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기 위하여 끝까지 싸울것이다.

#### 논 평

# 이시우 작가에 대한 국가보안법 무죄선고를 환영한다 2008-12-30

우리는 [법과 원칙]을 일면 존중하면서도 특정 정치권력에 편승한 [법과 원칙]의 적용을 반대한다. 또한 국가가나서서 시민의 생각과 행동을 지시, 관찰, 처벌하려는 국가주의적 행태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우리는 진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예술,창작의 자유, 그리고 평화적 생존권에 기반한 평화감시활동을 국가보안법이라는 구시대적 잣대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고양함으로써 지켜지는 것임을 다시 확인하면서, 이번 법원의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 성 명

# 법무부는 국민을 보호하고 인권을 옹호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잊지 말라 2008-12-30

법무부의 2009년 업무계획은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 처벌 계획의 요약판이다. 지금이라도 정권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저항을 감시하고 처벌하려는 구시대적 발상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법무부는 국민을 보호하고 인권을 옹호해야할 본연의 임무를 잊지 말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아니라, 권력에 대한 제한 없는 감시, 권력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통하여 확립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 기자회견문

## MB악법저지를 위한 철야농성에 들어가며 2008-12-29

집회현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고, 집회참가자에게 형사처벌뿐 아니라 엄청난 손해배

상까지 물리겠다는 불법행위집단소송법,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 휴대폰 감청을 포함해 국정원을 과거의 중앙정보부, 안기부로 부활시키는 국정원법 등 개정안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상식과 인권을 말살하는 법이다. 그밖에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려는 법안들의 전근대성, 야만성은이루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이다.

#### 논 평

#### 헌재의 결정을 개탄함 2008-12-26

청구인들은 헌재의 오늘 결정으로 이 사건 고시에 대한 헌법적 쟁점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였다는 점에 주목 한다. 우리는 향후 미국산 쇠고기 고시에 대한 개정 및 고시 시행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 검 역주권의 회복 등 이 사건 고시의 위헌적 요소의 제거 를 위한 행동을 계속할 것임을 천명한다.

#### 성 명

# 한미 FTA 비준동의안 날치기 상정은 국민통합적 개방의 좌절이다 2008-12-19

한나라당이 어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회의실을 걸어 잠 근 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단독 상 정하였다. 이는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통합적 통상을 좌절케 하는 폭거이다. 정부는 불과 몇 달 전 국민의 분 노와 외침을 벌써 잊었는가. 한나라당은 안건상정을 당 장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여야 한다.

#### 성 명

## 일제고사 대체 프로그램 실시교사 중징계처분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2008-12-11

헌법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에는 학부모와 아동의 교육선택권이 포함되어 있고, 초. 중등 교육법 제18조 제4 항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게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교육청의 인권조약과 단체협약을 무시한 전국 단위의 학업성취도평가 일제실시와학부모와 아동의 의사에 따라 일제고사 대체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는 그 처분의 위법성을 면하기 힘들다고 할 것이다.

#### 성 명

#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키고자하는 병역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한다 2008-12-04

헌법적 보호를 받은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기회를 박탈하고 희생을 초래하며 위헌인 군 가산점제를 통한 지원이 아닌 병역의무자 전원에게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있는 교육훈련지원 등의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병역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 논 평

# KTX 여승무원들에 대한 철도공사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한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 2008-12-04

공기업 철도공사는 손쉬운 비용절감의 방편으로 무리하 게 업무외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인 KTX 여승무원들에게는 비정규직화를 강요하고 KTX 여승무원들이 이에 반대하자 자신의 사용자 지위를 망각한 채 탈법적으로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았던 대표적인 사례로서 정부는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않도록 대오각성하여 노동관계법과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 논 평

### 남북관계개선의 해법이 통일운동가를 처벌하는데 있지 않다 2008-12-03

지난 8년 여간 문제없이 통일운동을 해 왔던 남북공동 선언실천연대 활동가들에 대한 기소는 남북관계의 해법을 찾기 보다는 더욱 경색되게 만들 것이며, 특히나 공당의 정당인이자 변호사인 상임공동대표 김모씨와 6·15 TV 관계자인 윤모씨에 대한 기소는 인권옹호자로서의 역할과 언론의 역할까지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닌가의심케 한다. 이번 추가 기소는 사라져야할 국가보안법에 의한 잘못된 조치일 뿐이다. 이에 민변은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여 변호에 나설 것이다.

#### 성 명

### 정부는 수돗물 용기 판매 계획을 당장 폐기하라 2008-11-25

수돗물은 결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물은 모두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근본이다. 물 은 구입 능력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공급되어야 하며, 이는 우리가 믿고 있는 최소한의 삶의 조건이자 인권 가치이다. 이명박 정부는 수도법 개약안과 함께 모든 물 시장화 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 민변 신입회원 모집 안내

#### 민변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입회원을 모집합니다.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신장, 정의가 밝게 비추는 민주주의에 동의하는 변호사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내 조그마한 관심과 노력이 나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 누릴 행복에 주춧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변호사라면 누구나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관심과 연대, 서로 믿고 의지하려는 변호사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2009. 2. 현재 민변에 가입한 600여명의 회원은 각종 입법과 사법정의, 노동과 환경, 여성과 소수자들, 언론과 과거사청산, 교육과 청소년, 민생과 경제, 통일과 미군문제 등 여러 공공의 문제를 다루는 특별위원회나 상임 위원회에서, 그리고 지방회원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구성된 각 지부에서 전문가로서의 소양과 능력을 키워나가며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20년을 넘게 쉼 없이 이어온 그 물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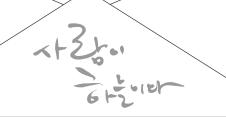
# 회원가입방법 안내

인터넷 홈페이지(www.minbyun.org)의 「민변소개」 내 "회원가입" 페이지에 들어간 후 입회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메일 info@minbyun.org로 가입신청하시고 입회원서를 받아 제출합니다.

전 화 02-522-7284로 가입신청(담당 : 정은경 간사)하시고 입회원서를 받아 제출합니다

- ♦ 회원 가입신청 후 가입승인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연락드립니다.
- ◆ 회비는 월 10만원(법조경력 3년차까지 월 5만원)이며, 대학교수 등의 회비는 월 2만원입니다.









# 정기구독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발행하는 격월간지입니다.

시사쟁점에 대한 민변의 분석, 입법과 사법현안에 대한 입장, 민변의 활동, 회원들의 감칠맛 나는 이야기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목소리를 담겠습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http://www.minbyun.org 에서 구독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료: 1년 6회 발행 30,000원

입금계좌번호: 국민은행 578601-01-06227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화 문의: 02-522-7284

메일 문의: info@minbyun.org

